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고혜영

2020년 8월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고 혜 영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고혜영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양 영 철



위 원

이 흥 재



위 원

김 주 경



위 원

최 대 식



위 원

황 경 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6월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rtist Welfare Policy System

Hye-Young Ko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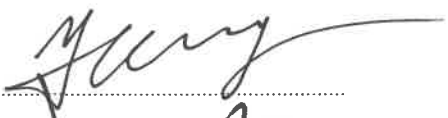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0.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Yang Young Chul 

Lee Hungjae 

Ju-Kyong Kim 

Dae-Sik Hur 

Kyung-Soo Hwang 

2020. 6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 II. 예술인 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6 |
| 1. 예술인에 대한 논의 | 6 |
| 1) 복지국가와 예술의 위상, 그리고 국가 지원의 정당성 | 6 |
| 2) 예술의 시장실패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 | 10 |
| 3) 예술인의 정의 | 15 |
| 4) 문화예술의 공공성 | 22 |
| 5) 소결 | 26 |
| 2.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 27 |
| 1) 문화정책의 유형 | 27 |
| 2)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및 보험 | 32 |
| 3) 근로자 관련 사회공동체 유형 | 43 |
| 4) 소결 | 57 |
| 3.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58 |
|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 58 |
| 2)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 61 |
| 3) 예술인 사회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 66 |
| 4) 합의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2 |

| | |
|------------------------------------|-----|
| III. 연구의 설계 및 분석의 틀 | 74 |
| 1. 연구 모형의 설정 | 74 |
| 2. 연구 방법 및 분석의 틀 | 75 |
| 1)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분석의 틀 | 75 |
| 2)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분석의 틀 | 76 |
| 3) 예술인 설문조사 분석의 틀 | 77 |
| 4)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의 틀 | 79 |
| IV. 예술인 복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실증분석 | 81 |
| 1.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 | 81 |
| 1)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제도 | 81 |
| 2) 독일의 예술인 복지 제도 | 91 |
| 3) 미국의 예술인 복지 제도 | 96 |
| 4) 네덜란드의 예술인 복지 제도 | 101 |
| 5) 함의 및 시사점 | 103 |
| 2.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 | 106 |
| 1)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과 개정사항 | 106 |
| 2) 예술인 보험제도의 내용 | 111 |
| 3)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의 내용 | 116 |
| 4) 문화예술분야 사회공동체 유형 | 126 |
| 5) 함의 및 성찰 | 140 |
| 3. 예술인 복지 제도에 관한 예술인 설문조사 분석 | 143 |
| 1) 조상대상 및 표본의 특성 | 143 |
| 2)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석 | 145 |

| | |
|----------------------------------|------------|
| 3)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 152 |
| 4)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 156 |
| 5) 합의 및 소결 | 163 |
| | |
| 4.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전문가 설문 AHP 분석 | 165 |
| 1) 표본의 특성 및 지표체계 | 165 |
| 2)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간 중요도 분석 | 169 |
| 3)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내 상대적 중요도 분석 | 170 |
| 4) 합의 및 소결 | 180 |
| | |
| V.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과 정책 제언 | 184 |
| 1.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 | 184 |
| 1) 국가 부문 | 184 |
| 2) 예술인 협업차원 | 188 |
| 3) 수혜자로서 예술인의 역할 | 190 |
| | |
| 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 193 |
| 1) 인식 개선 측면 | 194 |
| 2) 제도 개선 측면 | 195 |
| | |
| VI. 결 론 | 203 |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203 |
|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 206 |
| | |
| 참고문헌 | 208 |
| ABSTRACT | 219 |
| 부록 | 227 |

표 목 차

| | |
|--|----|
| <표 2-1>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의 예술인 직군 | 20 |
| <표 2-2>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의 예술교육자·관리자 직군 | 22 |
| <표 2-3> 문화정책 유형 | 30 |
| <표 2-4>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시기 및 내용 | 37 |
| <표 2-5>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시기 및 내용 | 41 |
| <표 2-6>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 42 |
| <표 2-7> 전국 연맹별·노조조직형태별 조직현황(2018년 기준) | 46 |
| <표 2-8>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 49 |
| <표 2-9> 업종별 협동조합의 설립현황 | 54 |
| <표 2-10> 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 | 56 |
| <표 2-1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별 현황 | 56 |
| <표 2-1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별 지정 현황 | 57 |
| <표 2-13>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 선행 연구 | 60 |
| <표 2-14>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 연구(보고서) | 62 |
| <표 2-15>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 연구(학술지 ·학위논문) | 64 |
| <표 2-16> 예술인 노동조합 관련 선행 연구 | 67 |
| <표 2-17> 예술인 협동조합 관련 선행 연구 | 68 |
| <표 2-18> 예술인 사회적기업 관련 선행 연구 | 70 |
| <표 2-19> 예술인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선행 연구 | 71 |
| <표 3-1>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과 정책 제언 연구 모형 | 74 |
| <표 3-2>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 제도 분석의 틀 | 76 |
| <표 3-3>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 분석의 틀 | 77 |
| <표 3-4> ‘예술인 복지’ 5가지 정책수단 분석의 틀 | 77 |
| <표 3-5> 예술인 설문조사 분석의 틀 | 78 |

| | |
|--|-----|
| <표 3-6>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의 틀 | 80 |
| <표 4-1> 프랑스 문화예술분야 중 공연예술 관련 공익협동조합 | 89 |
| <표 4-2> 독일의 문화예술 관련 직업분류 | 92 |
| <표 4-3>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 비교 | 106 |
| <표 4-4>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법」의 구조(법률 제15821호) | 107 |
| <표 4-5> 「예술인 복지법」 개정 사항(법률 제16687호) | 109 |
| <표 4-6>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실적(2019년 1월 기준) | 112 |
| <표 4-7>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보험급여 지급현황(2013-2017) | 113 |
| <표 4-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 121 |
| <표 4-9>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간의 상관관계 | 124 |
| <표 4-10>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으로 분류 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 126 |
| <표 4-11> 협동조합의 업종별 설립현황 | 132 |
| <표 4-12>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분야별 현황 | 137 |
| <표 4-13> 예술인 설문 응답자 표본의 특성 | 144 |
| <표 4-14> 최근 일 년간 느낀 걱정거리(불안요인) 분석 - 복수응답 | 145 |
| <표 4-15>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지여부 | 146 |
| <표 4-16> 사회보험 인지도 및 가입여부 | 147 |
| <표 4-17> 성별에 따른 사회보험 인지도 차이 | 147 |
| <표 4-18>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인지도 차이 | 148 |
| <표 4-19>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인지도 차이 | 149 |
| <표 4-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인지 및 참여여부 | 150 |
| <표 4-21> 사회공동체 인지도 및 가입 여부 | 152 |
| <표 4-22>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 | 153 |
| <표 4-23> 성별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 차이 | 153 |
| <표 4-24> 연령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 차이 | 154 |
| <표 4-25>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 차이 | 155 |
| <표 4-26>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선호도 | 157 |
| <표 4-27> 성별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 차이 | 158 |

| | |
|---|-----|
| <표 4-28> 연령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 차이 | 159 |
| <표 4-29>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 차이 | 161 |
| <표 4-30> 전문가 설문응답자 표본의 특성 | 166 |
| <표 4-31>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예술인 복지’ 전체 지표체계 | 168 |
| <표 4-32>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지표 및 세부 설명 | 169 |
| <표 4-33> 1단계 상위지표 5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170 |
| <표 4-34>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지원’ 의 지표 및 설명 | 171 |
| <표 4-35> ‘지원’ 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172 |
| <표 4-36>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육성’ 의 지표 및 설명 | 173 |
| <표 4-37> ‘육성’ 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174 |
| <표 4-38>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보호’ 의 지표 및 설명 | 175 |
| <표 4-39> ‘보호’ 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176 |
| <표 4-40>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조성’ 의 지표 및 설명 | 177 |
| <표 4-41> ‘조성’ 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178 |
| <표 4-42>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규제’ 의 지표 및 설명 | 179 |
| <표 4-43> ‘규제’ 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180 |
| <표 4-44> 1·2단계 통합분석 결과 | 183 |

그림 목 차

| | |
|-----------------------------|-----|
| <그림 5-1>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 193 |
|-----------------------------|-----|

국 문 초 록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가난에서 예술이 나온다’ 라는 대중들의 오해가 있다. 가난을 예술로,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젊은 예술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를 살펴보면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평균 1,281만원으로,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제 기준 연간 수입액이 약 1,88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예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소득을 얻으므로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바라보고 이에 알맞은 경제적 비용지급과 지위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을 ‘노동자’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이기 때문에 가난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술인도 국가의 한 국민으로 보호를 받고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만족감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예술인과 전문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제안하고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술은 다른 재화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즉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정보의 불균형, 높은 거래비용, 독과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이처럼 예술 노동시장의 비예측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적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프로젝트 형태의 제작방식은 예술인들을 과잉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예술인’ 을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예술인 복지

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직업적으로 단속적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적지원이 필수적 요소인 예술인 복지 지원의 경우,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예술의 공공성은 존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에서 인정을 받는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다양한 사회 형식들과의 접목으로 예술을 공공재, 공익적 성격이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외부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책 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위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단 ‘지원·육성·보호·조성·규제’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연구의 주제가 구체적이고 범위가 축소된 것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예술인 복지의 정책 체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의 내용이 아닌 예술인간의 협업과 수혜자인 예술인의 역할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및 세부 정책들을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에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예술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은 4개 나라가 모두 존재하지는 않았다. 단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과 고용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나라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공연예술인 계층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인 ‘앙페르미땅’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의 실업보험제도는 유연하고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로 규정해 실업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은 예술인들에게 포괄적인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정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보장의 혜택을 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가 공공부조 형태로 잘 정비되어있는 것이 특징인 네덜란드는 예술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인 ‘최저생활보장제도’로 예술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적지원뿐 아니라 예술인 사회공동체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프랑스의 예술인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해대변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예술인들의 산별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이해대변의 역할과 금고, 보험 운영을 통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직종별 구분이 없는 국민통합형 제도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예술인이 이 제도에 편입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예술인 계층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거나, 예술인을 노동자로 재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의 마련과 예술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술인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들이 빠져있어 분쟁 발생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이루어진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작성의무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가 마련이 되었으며 직업적 권리가 체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말에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확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결과로 2020년 5월 그동안 계류 중이

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관련 규정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우리나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복지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예산의 확보가 충분치 않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청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이 필수적이다. 사업의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예술인의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고 계약만으로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생활불안 해소 및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산별노동조합의 형태로 활동을 하거나 최근에는 프리랜서, 단속적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준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유니온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특징들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제 활동 조직으로써 적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활성화, 공동체 문화 형성, 사회적 공헌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문화예술분야의 고용관련 문제와 이에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예술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공재로서의 예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일 년간 가장 많은 불안요인은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술활동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형태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불안정하고 단속적인 고용과 불규칙적인 소득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인들의 예술인 복지 제도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법, 관련기관, 시행 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지 않으며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예술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신청이 이루어지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개의 복지 제도 항목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 활동 중단 시 실업급여 지원’ 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술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의 기회를 얻고, 경제적 소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론연구에서 도출하였던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 기 위해 25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분석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원’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호, 육성, 조성, 규제’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술가들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상위지표와 하위지표의 쌍대비교를 통해 추정된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화하여 하위지표 20개의 전반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창작 준비금 지원’ 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예술경영인력 육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제안하였다. 국가 부문으로 첫 번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인 복지 제도를 지방으로 이전시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 예술인 복지 지원의 재원을 확충하고 안정적 운용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으로 실질적인 예술인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예술인 협업차원으로는 예술인 노동조합, 유사조직인 유니온 조직의 결성 및 가입의 활성화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전환으로 예

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혜자로서 예술인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며, 수준 높은 창작 활동으로 예술인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이 공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 예술 창작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책을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인식 개선으로는 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 인식의 전환,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가의 노력,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의 강화이다. 제도 개선 측면으로는 ‘예술인’을 특별 직업군으로 새롭게 규정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 창작지원금의 다양화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건립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예술인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예술인공제사업 추진,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예술인 우대 조세 정책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에 이어 최근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예술과 예술인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지원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¹⁾, 지금의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지금의 사회 제도나 정책이 좋은 삶을 기준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결국에는 경제 및 시민의 관심사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대부분 복지와 자유에 관한 논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결국에는 ‘만족감의 결핍’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선(善), 좋은 삶에 맞추어야 한다는 논의를 굳이 예술에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국가의 정의는 국민총생산만이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복지이며, 예술가들에게도 경제적 안정과 자유, 생활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2011년 젊은 예술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이후 단편 영화 ‘격정 소나타’의 연출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 씨다. 故 최고은 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다가 며칠째 굶은 상태에서 치료도 못 받고 냉방에서 32세의 젊은 나이에 쓸쓸히 사망하였다. 이는 예술인의 생활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었다.

‘가난에서 예술이 나온다’라는 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가 있다. 가난을 예술로,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가난한 상황에서 초인적인 기지를 발휘해 감동적인 작품으로 승화하는 사례가 드물게 있다. 이러한 소수의

1) 김명철 (역) (2018).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와이즈베리, pp.381-382.

예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개인의 창작 활동이 아닌 공공재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알맞은 경제적 비용지급과 지위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난해야만 하는 예술인이 아닌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만족감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 수입이 연간 평균 1,281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해인 2018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한 연간 수입액이 약 1,88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인의 특별한 직업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 활동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자영업자, 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이들 중 프리랜서가 76%로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 활동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수의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불규칙한 소득, 낮은 경제적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 활동으로 인하여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동기를 갖는다.

첫째, 예술인을 기존의 일반 직업분류에서 국가가 특별관심을 가져야 할 직업 구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둘째, 예술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 문화예술전통의 계승, 국가의 이미지 제고, 다양한 후광효과 등 여러 분야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예술과 예술인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맥락을 갖는다.

셋째, 그 동안 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으나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못했고, 개별적 제도의 소개와 논의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다.

넷째, 예술인 복지는 국가의 독립적 의무라기보다는 예술인 단체, 예술인 개인이 맡아야 할 의무와 협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연구의 차원에서 외국의 예술인 복지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섯째, 예술인들은 이러한 예술인 복지 관련 인식, 만족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은 어떠한가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일곱째, 예술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예술인 복지에 실태적 접근을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여덟째, 예술인들에게 사회적 정의 맥락에서 경제적 측면은 물론, 선택의 권리인 자유와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찾고, 예술인과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인 의견을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제안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제도 및 사업의 내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제도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넷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고 지원 체계와 정책제언에 반영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부문, 예술인 협업차원, 수혜자로서 예술인의 역할로 나누어 제안한다.

여섯째, 예술인 복지 지원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을 제안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예술인의 가난, 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예술인 관련 사회보장 제도 및 사회보험, 예술인 관련 공동체 등에 대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사례분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 관련 법과 제도,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관련 법과 제도 등을 분석하며,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논문과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 정리하게 된다. 둘째, 비교방법을 사용하였다. 외국의 예술인 복지 관련 제도들을 비교하는 형태를 취했다. 셋째, 사례분석에서는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했다. 일반빈도,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AHP 분석 등을 사용하여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등을 조사한다.

연구의 범위는 이론연구의 경우 첫째, 예술인에 대한 논의로 복지국가와 예술의 위상, 그리고 국가 지원의 정당성, 예술의 시장실패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예술인 복지 지원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 예술인의 정의, 예술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예술인의 정의’는 법적 기준과 직업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서 예술인 복지 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인 복지의 사회적 합의를 얻음에 있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로서 문화정책의 유형,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및 보험, 문화예술분야의 사회공동체 유형을 연구한다. ‘문화정책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수단을 도출한다.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및 보험’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우리나라 도입 배경 및 개념, 내용,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범위를 알아보게 된다. ‘근로자 관련 사회공동체 유형’에서는 노동조합,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예술인에게 적용 가능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한다.

셋째, 사례분석으로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의 예술인 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을 위한 보험 제도의 내용,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문화예술분야 사회공동체 유형에 대해 분석한다.

넷째, 선행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이 예술인 복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진행하며, 예술인 사회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를 하게 된다.

다섯째, 설문조사에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 인지도, 선호도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중요도, 각 정책수단 내용들 내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AHP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섯째, 이러한 이론연구와 사례분석, 설문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예술인 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예술인에 대한 논의

1) 복지국가와 예술의 위상, 그리고 국가 지원의 정당성

예술에 대한 위치 규정은 국가기제 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주의 경제에서 문화예술은 개인부문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국가들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연방정부 문화예술관련 부처의 역할보다는 각 주별 혹은 지방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기금형식을 빌려서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거나 케인즈와 그들을 따르는 케인즈안들처럼 ‘보이는 손’에 의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예술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보몰(W. J. Baumol)과 보웬(W. G. Bowen)의 저서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A Study of Problems Common to Theater, Opera, Music, and Dance)’에서 예술 재화는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철현, 2015, 재인용). 또한 공연예술 자체의 가치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불공평,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등을 정부가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박혜자, 2018: 37).

복지국가란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의미한다.²⁾ 복지국가의 의지가 예술에도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연결시키고자 한다.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급여의 전달,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는 비영리 단체나 민간기업 등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인을 위한

2) 신정완 (2014), 「복지국가의 철학」, 인간과 복지, pp.277.

복지국가의 역할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도하되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적 국가의 진행과 이에 맞선 마르크스주의적 논의의 해결책으로써 대두된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의 기제라 할 수 있다. 두 개의 대립된 이념체계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이야기하는 ‘제3의 길(Third Way)’, ‘사회민주주의’, 비그포르스(Ernst Johannes Wigforss)의 ‘잠정적 유토피아’³⁾ 들이다. 이 개념들은 복지국가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는 사회주의적 모습처럼 계획적인 기획아래, 정해진 지원이라는 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예술인들을 경쟁의 장으로 몰아서 ‘독식하는 승자(winner's economy)’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난해지는 자본주의적 경제상황의 문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복지국가론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이흥재(2005: 218-213)가 이야기하는 국가의 지원 속에서 혹은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 상황에서도 ‘자율적 예술’의 보장이라는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팔길이의 원칙’과 같이 지원은 하되 이념적 간섭은 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비그포르스의 교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술과 예술인이 기여하는 점과 그에 대한 지원의 논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경제학자와 미학자, 행정과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첫째, 18세기 계몽주의 미학자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는 국가가 예술인에 대한 보답과 명예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비극시인들의 경우 덕성

3)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은 비그포르스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분리하고, 새로운 정치운동의 개념으로써 제시한 것이다. 혁명의 이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계량의 한계에 봉착하지도 않기를 바라고 있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절실한 쟁점을 포착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복지국가 모델로 구현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길잡이로서 ‘잠정적 유토피아’를 주창한 것이다. 진행과정 중에서는 기술 관료적인 관점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치공동체가 일정한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홍기빈, 2014: 11-17).

을 가르치고, 희극시인들은 국가적 유머를 만들어내어 국민들의 인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화가들은 국민을 교화하기도 하므로 적극적으로 국가가 예술인들을 조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음악과 시인들이 많았다. 이는 국가의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⁴⁾

둘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 제5편(주권자 또는 국가의 수입에 대하여)에서 값싼 정부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네 가지의 국가경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가 준비해서 지원해야 할 부문을 일컫는 것이다. 가. 국방을 위한 경비와 주권자의 존엄을 위한 경비, 나. 사법으로 상징되는 사회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다. 도로와 같이 사회의 산업 및 교통관련 경비, 라. 교육, 예술, 문화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의 인적 요소의 발달에 관련되는 경비이다⁵⁾. 시민의 전인격적 성격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한혜선(2015: 266-268)은 예술이 기여하는 공공성이 국가의 지원과 개입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예술의 공공성을 논리적으로 확보하게 될 때 예술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성’을 이남표(2007: 27)는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 공공기관의 행위, 다수의 사람들에게 관련된 공적인 것, 공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접근가능성과 공유성을 뜻하는 공공재(public goods)⁶⁾와의 밀접한 특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수(2013: 39)는 ‘공공성’을 공공 또는 다수에 관한 일로 공공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공권력, 정부의 활동과 관련 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배제가 불가능하며, 이타성이 있으며, 공익성이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이론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넷째, 예술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가치재로서의 역할이 국가의 지원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한혜선, 2015: 277). 가치재(價値財, merits goods)란

4) 시릴 모리나, 에릭 우댕 지음, 한의정 옮김 (2013), 「예술철학-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고양: 미술문화, pp.96-98.

5) 임상오 (2007). 문화경제학이 재정학 커뮤니티에 던지는 메시지, 「재정정책론집」 9(1), pp.132에서 재인용.

6) 행정학에서는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라 할 때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배제할 수 없고, 소비해도 경합적이지 않은, 즉 한 사람이 소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이 없는 특성을 가진 재화를 말한다.

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라는 의미이다. 한 개인의 정신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다섯째, 보몰과 보웬은 예술이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사회편익)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술은 국가의 위신을 제고하고, 주변지역의 비즈니스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심리적 행복감을 줄 수 있다. 지역사회에는 교육적 공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또한 이 두 학자는 예술과 재정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반 생산품의 원가는 점점 하락하는 반면, 공연예술과 같은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원가, 즉 제작비는 계속 상승하여 일반 상품과 공연예술의 생산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예술 지원의 정당성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여섯째, 프레이와 포머르네(Frey and Pommerehne)는 예술에는 다음과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가. 선택가치(option value) : 지금 당장 소비하지는 않지만 예술이 공급됨으로써 받게 될지도 모르는 가치, 나. 존재가치(existence value) : 역사적 건축물처럼 한번 파괴되어 버리면 상업 베이스로서는 복원 불가능한 것이 갖는 편익, 다. 유증가치(bequest value) : 다음 세대들에게 즐기게 할 수 있는 가치, 라. 위광가치(prestige value) :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는 가치, 마. 교육가치(education value) : 사회의 창조성과 문화적 평가능력을 고양시키고, 그 결과 사회의 구성원들이 받는 편익 등이다.⁹⁾

위와 같이 예술인 복지의 지원 정당성과 함께 예술인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에게 ‘낙인효과(stigma effect, scarring effect)’를 지워주는 결과를 주지 않도록 지원 및 보장의 수준을 이해가 되도록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낙인(stigma)’은

7) 임상오 (2007). 문화경제학이 재정학 커뮤니티에 던지는 메시지, 「재정정책론집」, 9(1), pp.133-137.

8) 최미세 (2012). 유토피아-예술의 미학적 가치와 경제적 윤리의 융합, 「독어독문학」, 53(1), pp.408.

9) 임상오 (2007). 문화경제학이 재정학 커뮤니티에 던지는 메시지, 「재정정책론집」, 9(1), pp.133-137.

‘바람직하지 않은 차이’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불명예스러운 특성’으로 구성된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일종의 사회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Goffman, 1963: 차유리·나은영, 2012: 181, 재인용). 이를 예술인 지원에 적용하면, 예술인 복지 지원을 받는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이 적은 혹은 작품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능력이 적은 예술인으로 낙인 될 수 있다. 즉 예술인 복지 지원이 예술인들 능력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예술의 시장실패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

신정완(2014)은 복지국가는 시장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해결하거나 보완해 줌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하고 있다. 또한 미시적 차원의 ‘시장실패’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나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과점, 공공재, 외부성, 정보의 불완전성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이는 정철현(2004: 130-132)이 예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논의로 제시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예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예술인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논의는 예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 바, 그 이유를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한다는 ‘시장실패’에 두고 있다. 그 논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의 발전은 예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술은 대량 생산이나 표준화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조영남 화가의 사례에서처럼 누가 도와주거나 기계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분야이다. 예술의 기예는 하루아침에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의 상품과 같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증대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오페라의 공연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더 많은 아리아를 부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으로 나가면 문화예술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은 만들고 싶다고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해

서 바로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며 매뉴얼화하기도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예술의 창작과 소비에 있어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예술의 창조자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재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들의 기술을 누구에게나 쉽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창작 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창작뿐만 아니라 예술의 소비자들에게도 원하는 예술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그러한 정보가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작에 있어 정보의 불균형은 새로운 예술의 개척을 어렵게 하고, 소비에 있어 정보의 불균형은 새로운 문화예술의 보급과 전파를 어렵게 한다. 즉, 사람들이 몰라서 소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술인이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 예술이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예술은 거래비용이 높다. 거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공연과 작품의 판매를 어렵게 한다. 법적으로 공연 허가가 까다로워 공연장을 구할 수 없거나, 문화상품의 판로를 알 수 없어 예술가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경우라면 거래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④ 예술부문의 경우에도 독과점이 존재한다. 소수의 생산기업, 즉 갤러리, 영화관 등이 시장의 수요·공급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가 개입해서 소규모 생산자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 영화의 수입으로 국산영화가 한 때 고사당했던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예술분야의 독과점이 존재하는 경우 문화정책은 규제를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⑤ 예술이라는 재화는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해야만 한다. 공연장(공공공연장), 박물관(공공박물관), 도서관(공공도서관), 공원, 체육관, 야외공연장 등 국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시설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수익이 크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의 봉사나 희생정신으로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려고 해도 무임승차(無賃乘車, free-rider)하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예술은 공공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철현(2004)이 언급한 예술의 ‘시장실패’ 논의와 마찬가지로 김학실(2001)도 문화예술시장의 독과점, 예술의 대량생산과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혜택의 어려움, 자체 수익의 확대가 인건비의 자연 상승분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문화경제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보몰과 보웬(William J. Baumol & William G. Boewn)은 예술가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소득의 작다(income gap, 소득차질)는 것에 있음을 주장했다. 예술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현상에 대해서 ‘보몰씨의 병(Baumol's disease)’ 이라고 명명하며,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최저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소득조차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뉴욕이 본거지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 중에 독신자가 많은 것도 바로 결혼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안정적 소득을 벌지 못한 탓이라고 하고 있다.¹⁰⁾

브로드웨이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제주의 화가인 이중섭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밖에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전해진다. 두 끼를 먹었을 때는 기뻐했다고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적기도 했다고 할 정도이다. 지금 그의 그림은 하나당 40억에 달한다. 작가 최고은 씨는 문밖에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라는 문구를 써 붙일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영양실조로 2011년 1월 29일 홀로 숨을 거두기도 하였다.

예술가의 열악한 생존조건은 예술문화의 발생과 원만한 성장이 정상적인 시장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예술분야의 사회적 효과가 지대함은 물론이고 ‘파문효과(ripple effect, spread effect)’ 같은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중요성이 지대한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시장의 비예측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가치’ 를 더욱 중요시 여기므로 문화예술 부문의 인력이 과잉공급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공급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Eikhof, 2007).

10)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관측」, 서울: 학고재, pp.100-102.

예를 들어 예술적 일에 전념하고 개인의 계발을 강조하는 ‘보헤미안 가치’ 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예술적 가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Eikhof, 2007; 강익희, 2011, 재인용).

트로스비(David Throsby, 1994)는 전통적 노동시장의 이론에서 임금이 오르면 일을 많이 하지만 적절한 임금 수준에 이르면 노동 대신에 여가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임금과 여가시간의 관계를 예술 활동에 적용하였다. 즉, 예술인들은 예술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비예술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인들은 경제적 가치보다도 예술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스 애빙(Hans Abbing, 2009) 또한 예술인들이 소득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술인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인지도나 명성과 같은 비금전적인 내적 보상¹¹⁾을 선호하므로 소득이 다른 직업군보다 낮다고 말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포기하는 것은 예술의 신성함, 예술에 대한 사회적 존경, 예술인 자신의 만족감 등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은 스스로 직장생활보다는 소득이 낮더라도 예술 활동을 통해서 더욱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능력과 행운을 신뢰하여,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예술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만심과 자기기만으로 예술인의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또한 경제적 가치, 금전적 보상보다도 예술적 가치, 비금전적 내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프로젝트 형태 제작방식으로 인한 유연한 조직 구성 역시 예술인을 과잉공급 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Menger, 2001).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조화된 팀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때 숙련되고 전문적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며, 이는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술노동시장 일자리 규모 증가속도에 비해 예술가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근무시간과 임금의 수준 또한

11) 비금전적인 내적 보상과 비금전적인 외적 보상을 통틀어 ‘심리적 소득(psychic income)’이라고도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심리적 소득이란 개념은 애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인 ‘비금전적 내적 보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스 애빙, 2009: 141)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Menger, 2001).

예술분야의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인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한스 애빙(2009)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와 필립 쿡(Philip Cook)이 설명한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개념은 극소수에 의해 전체 시장이 독점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인의 능력에 따라 독점현상이 나타나 소득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승자독식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슈퍼스타 효과(Superstar effect)’라고 하기도 한다. ‘슈퍼스타 효과’는 문화산업 내 경제적 보상의 극심한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보상을 독식하면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수의 예술인에게 산출물이 집중되고, 수입 분포에 쏠림현상이 있어 최고에게만 매우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강익희, 2011).

이 효과와 관련하여 로젠(Sherwin Rosen, 1981)은 재능에는 위계가 존재하며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그마한 재능의 차이가 시장지배력과 경제적 보상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재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은 재능이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과 명성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아들러(Moshe Adler, 1988)는 경제적 보상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닌 타인들과의 지식 공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 소비자가 지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예술인을 선정하는 경우 탐색비용과 학습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스 애빙(2009)은 ‘슈퍼스타 효과’ 이론과 관련하여 젊은 예술인들은 자신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술분야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인 시장의 과잉공급을 지속시키며, 평균소득은 계속 낮아지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슈퍼스타 효과’는 문화예술분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나 예술인의 극심한 저임금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강익희(2011)는 예술인의 저임금의 원인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노동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맥앤드류(McAndrew, 2002: 강익희, 2011, 재인용)도 예술인들의 문제는 ‘일자리의 빈곤(jobless)’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없음(incomeless)’의 경제적 빈곤의 문제로 보고 있다.

3) 예술인의 정의

(1) 법적 기준으로의 정의

‘예술인 복지’에 대해 논하기 전에 ‘예술인’의 정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을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예술인 복지법」),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예술 활동실적이 있거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있는(「저작권법」)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업적으로는 전업 작가·자유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단속적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하게 된 근거를 찾아보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를 채택하여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전제로 예술인의 고용조건, 창작환경, 생활환경 등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고문은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예술인의 주요한 지위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¹²⁾

우리나라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예술인 복지법」에서 각 법령의 제정목적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예술장르를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문화예

12) 박영정 (2006),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43-44.

술진흥법」상의 장르와는 관계없이 저작물에 발생하는 저작 권리를 기준으로 저작자와 실연자(實演者)를 구분한다.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기준으로 하여 창작, 실연 및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예술인을 정의하고 있다.¹³⁾ 각 법령에서 명시한 예술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2년 법률 제2337호로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내 최초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 제1장 제2조 제1항 ‘문화예술의 정의’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¹⁴⁾ 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13개 예술장르의 범주를 예술인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저작권법」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며, 재산권 형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창작저작물에 어떠한 형식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 예술인의 범주를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제1장 제2조에서 “②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④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¹⁵⁾ 라고 저작물을 기준으로 저작자와 실연자를 구분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예술인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네스코 권고문을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¹⁶⁾으로 2011년 법률 제11089호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13) 한만주 (2015), 「법과 제도에 나타난 예술인 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4 .

14)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정보(현행법령) www.mcst.go.kr 「문화예술진흥법」.

1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저작권법」.

1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예술인 복지법」 제1장 제1조.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상세한 예술인의 범위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①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②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③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을 해야 하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17)에 따라 운영된다.

한편,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한다는 것은 취미 또는 여가활동이 아닌 생업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 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하며, ‘근로’ 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뜻한다는 점에서 예술 활동 또한 직업 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업 작가·자유전문직 종사자 등 단속적 비정규직인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¹⁸⁾

(2) 직업분류 기준으로서의 정의

우리나라의 직업분류로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두 가지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노동정책과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며 사회전반에 노동과 직업에 관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되어진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자료로 일반인의 시각에 맞춘 중분류 중심의 직업분류

17) 제정 2014.12.1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4호, 개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18) 한만주 (2015), 「법과 제도에 나타난 예술인 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44.

체계이다. 고용 관련 행정 DB나 통계조사자료의 결과를 집계하고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의 취업알선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 직업정보 제공, 진로지도 등의 고용 실무 전반의 기본 분류 틀로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일반인의 시각에 맞는 한국만의 직업분류체계를 개발하여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와의 불일치에 따른 비교성 문제를 극복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세분류 단위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직업분류체계가 비슷하므로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¹⁹⁾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근거로 직업을 분류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고용 관련 통계 및 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활용되며 노동과 직업에 관한 지표로도 활용이 된다.

각 직업군의 직능과 직무²⁰⁾에 따른 전문화를 파악하여 직업구조를 표준화함으로써 각 직군의 전문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서 정의한 직능수준(skill level)은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인 직업훈련과 직업경험을 통하여서도 얻게 된다. 분류에서 사용되는 기본개념은 정규교육 수준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업무의 수행능력으로 보고 있으며²¹⁾, 제1직능 수준에서 제4직능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19)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를 근거로 1963년 제정, ISCO 개정(1968, 1988, 2008년)과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1966년, 1970년, 1974년, 1992년, 2000년, 2007년, 2017년 7차례 개정.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20) 직무(job)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tasks and duties)’으로, 직업(occupation)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직능은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 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경험으로도 결정된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통계청 (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총설에서 재구성.

21) 통계청 (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총설에서 재구성.

각 직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직능 수준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하며 최소한의 문자이해와 수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제2직능 수준은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정확한 계산능력, 상당한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며, 중등 이상의 교육과정이 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경험을 필요로 한다. 제3직능 수준은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중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제4직능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며, 4년 또는 그 이상의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수준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²²⁾

‘예술인’은 제3직능 수준 혹은 제4직능 수준이 필요한 직군인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중분류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에 분류되어 있다. ‘예술교육자’는 ‘중분류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Education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에 분류되어 있으며, ‘예술관리자’는 ‘1. 관리자(Managers)’,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Culture and Art Related Managers)’로 구분되어 있다.²³⁾

2017년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평론가’를 직무특성 및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고려하여 상위분류를 ‘작가’에서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로 이동하였으며, 소분류의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의 분류 명을 관련 직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 ‘시각 및 공연 예술가’로 변경하였다.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종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를 세분류로 신설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미디어 콘텐츠와 채널의 생산 및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시장구조를 반영한 것이며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분류한 예술인의 직군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통계청 (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총설에서 재구성.

23) 통계청 (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서울: 통계청.

<표 2-1>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의 예술인 직군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 2811 작가 | 방송 및 시나리오 작가(28111), 문학작가(28112), 그 외 작가(28113) |
| | 2812 출판물 전문가 | 출판물 기획자(28121), 출판물 편집자(28122) |
| | 2813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 가 | 기자(28131), 평론가(28132), 그 외 언론 관련 전문가(28133) |
| | 2814 번역가 및 통역가 | 번역가(28141), 통역가(28142) |
| 2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 2821 학예사 문화재 보존원 | 학예사(28211), 문화재 보존원(28212) |
| | 282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 사서(28221), 기록물 관리사(28222) |
| 283 연극·영 화 및 영상 전문가 | 2831 감독 및 기술 감독 | 감독 및 연출가(28311), 기술 감독 (28312), 그 외 감독 및 연출가(28319) |
| | 2832 배우 및 모델 | 배우(28321), 개그맨 및 코미디언 (28322), 성우(28323), 모델(28324), 그 외 배우 및 모델(28329) |
| |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 아나운서(28331), 리포터(28332), 쇼핑호스트(28333), 그 외 아나운서 및 리포터(28334) |
| | 2834 촬영기사 | 촬영기사(28340) |
| | 2835 음향 및 녹음기사 | 음향 및 녹음기사(28350) |
| | 28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28360) |
| | 2837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 조명기사(28371), 영상기사(28372) |
| | 2839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28391), 스크립터 (28392), 무대의상 관리원(28393), 소품 관리원(28394), 방송 및 영화연출 보조 원(28395), 보조 연기자(28396), 그 외 연극·영화 관련 종사원(28399) |

| | | |
|--|-------------------------|--|
| 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 2841 화가 및 조각가 | 화가(28411), 조각가(28412), 서예가(28413) |
| | 28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 사진작가(28421), 사진기자(28422), 사진가(28423) |
| |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 만화가(28431), 만화영화 작가(28432) |
| | 2844 국악 및 전통 예능인 | 국악인(28441), 국악 연주가(28442), 국 악 작곡 및 편곡가(28443), 전통 예능인(28444) |
| | 28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 지휘자(28451), 작곡가(28452), 연주가(28453) |
| | 2846 가수 및 성악가 | 가수(28461), 성악가(28462) |
| |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 무용가(28471), 안무가(28472) |
| | 2849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 가 |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28490) |
| 285 디자이너 | 2851 제품 디자이너 | 자동차 디자이너(28511), 가구 디자이너 (28512), 그 외 제품 디자이너(28519) |
| | 2852 패션 디자이너 | 직물 디자이너(28521), 의상 디자이너 (28522), 액세서리 디자이너(28523), 가 방 및 신발 디자이너(28524) |
| | 2853 실내장식 디자이너 | 인테리어 디자이너(28531), 디스플레이 디자이너(28532), 무대 및 세트 디자이 너(28533) |
| | 2854 시각 디자이너 | 광고 디자이너(28541), 포장 디자이너 (28542), 책 디자이너(28543), 삽화가 (28544), 색채 전문가(28545), 활자 디 자이너(28546), 그 외 시각 디자이너 (28549) |
| | 28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28551), 멀티미디어 디자이 너(28552),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28553), 사용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 자이너(28554), 그 외 미디어 콘텐츠 디 자이너(28559) |
| 288 문화·예 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 2881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 자 |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28810) |
| | 2882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 연예인 매니저(28821), 스포츠 매니저(28822) |

<표 2-2>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의 예술교육자·관리자 직군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251 대학교수 및 강사 | 2511 대학교수 | 예술 및 인문학 교수(25112) |
| | 2512 대학 시간강사 | 예술 및 인문학 시간강사(251122) |
| 252 학교 교사 | 2521 중·고등학교 교사 | 예체능 교사(25215) |
|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2543 기술 및 기능계 강사 | 다지인 강사(25431) |
| | 2544 예능 강사 | 음악 강사(25441), 미술 강사(25442), 무용 강사(25443), 그 외 예능 강사(25449) |
| | 25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25499 그 외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 1340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 공연·전시 예술 관련 관리자(13401), 디자인 관련 관리자(13402), 방송·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13403) |

4) 문화예술의 공공성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적지원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인 복지’에 대한 지원은 공적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공적지원의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의 공공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성(公共性)’은 사전적으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된다. 어떤 제도, 물건, 사물, 현상 등이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우를 말하며, 소유나 경영구조와 무관하게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있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성’의 개념은 기술적 또는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혹은 규범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적 또는 형식적 차원의 공공성은 공유성, 공개

성, 공중성,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행정·정책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범적 차원의 공공성은 공익성, 공평성이 포함된다(김정수, 2017: 38).

이남표(2007)는 ‘공공성’을 6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국가, 정부, 공공기관의 행위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행위 주체(agency)와의 관련성, 둘째,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공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수와의 관련성, 셋째, 사적이나 감정적으로 행위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경우로 국가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공식성과의 관련성, 넷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것으로 행위의 목적과의 관련성, 다섯째, 접근 가능성과 공유성, 여섯째,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는 것에서 나아가 ‘알 권리’ 및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의 계기로 작동하므로 개방성(opening) 및 공지성(publicity)과 관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성’은 국가, 정부,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적인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한혜선, 2015).

김세훈·서순복(2012)은 ‘공공성’은 크게 주체, 영역, 절차, 가치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공적주체에 의해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과 관련되며, 투명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공적 의사결정에 의해 추구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영역과 정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공영역은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정부영역은 공적 주체가 추구하여야 할 공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있다(이기호, 2009; 김세훈·서순복, 2012, 재인용).

우리나라에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친 학자 중에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있다. 하버마스는 공공성을 의사소통적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다. 공공영역을 공적부문(국가)과 사적부문(사적 소유자, 가정) 사이에 두고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전제로 사적 자율성을 강조하였다(김진엽, 2016: 143). 여기서 공공영역이란 정치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치적 행위가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²⁴⁾

24) 김웅천·김재범 (2014). 예술 공론장 개념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예

예술의 공공성은 존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김진엽(2016)은 설명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예술에 대한 본능적 욕구’로 원초적으로 인간은 미와 감동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예술의 사회성’으로 개인의 창작품을 타인에게 감상하는 즐거움을 줌으로써 관객과 상호작용의 관계라는 것이다. 셋째, ‘문화권’은 정신적 측면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문화예술로 행복을 추구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존재적 차원 외에 규범적 차원에서도 예술의 공공성은 인정받는다. 그 내용을 보면 보편화된 가치, 공동체 자체의 권익, 외부경제성 및 공공재,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다수의 이익,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그것이다.²⁵⁾

예술의 공공성을 논의하고자 하면 존 듀이(John Dewey)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이는 경험의 재구축을 통하여 예술을 ‘공공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의 저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예술을 커뮤니케이션의 양식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넘어서서,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적인 것’을 수립하는 작용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중의 참가에 의해 예술의 공공성을 수립하는 방안을 탐구하였으며, 예술의 기초에 사람들의 일상경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예술을 문화와 사회 가운데에서 성숙시키려 하였다. 즉, 서로의 경험세계를 함께 즐기는 커뮤니티에서 ‘공공적인 것’의 성립기반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민주식, 2013).

루만(Niklas Luhmann)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으로 바라본 예술은 예술작품들이 감동이나 감상을 넘어서, 그러한 효과를 산출한 예술적(시적, 이야기적, 시각적, 청각적 등) 수단들과 관련해서 고찰되고, 예술가들의 역할도 접목하면 예술의 공공성을 작동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²⁶⁾ 이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식, 미적인 것 외에도 교육적,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본다면 예술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예술의 공공성 영역이 예술 향유나 예술 향유 계층의 확대,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의 재생산, 도시의 문화공간의 디자인 등 삶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²⁷⁾

술경영학회」, 29, pp.11.

25) 김정수 (2009).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2), pp.11-14.

26) 노진철 (2013).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에서 본 공공성, 「한국사회」, 14(2), pp.121.

예술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한혜선(2015)은 예술 자체가 공공성을 가진 것인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파생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인 존재하는 것인지를 구체화하여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예술의 시장실패와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도 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예술영역에서 문화 민주화에 이은 문화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이 실행되어지고 있어 경제학적으로 예술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민간 경제주체가 공급하기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아서 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를 말하며 경제학적으로 ‘소비에서의 경합성’과 ‘소비에서의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신정완, 2014).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여, 배제성은 어떤 사람들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을 말한다. ‘공공재’가 모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특성만 충족해도 ‘공공재’로 규정하기도 한다.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는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라 하기도 하며 대표적인 예로 국방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은 순수 공공재라 할 수는 없지만 보물과 보웬은 사유재와 공공재가 섞여있는 ‘혼합재(mixed goods)’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김학실, 2001). 이는 교육이나 예방접종의 경우처럼 사유재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 외부성(외부효과)²⁸⁾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예술을 ‘혼합재’로 보는 것은 예술 자체의 개념보다는 예술에 의해 파급되는 사회적 영향력과 다양한 사회 형식들과의 접목에서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공익적 성격이 나오기 때문이다(김진엽, 2016).

문화예술은 위와 같은 성격으로 인하여 고용효과, 지역개발 촉진, 관광 진흥 등의 외부효과를 가지고 오며, 응용예술분야(패션, 건축, 디자인, 사진 등)의 발

27) 김진엽 (2016), 예술경영과 공공성, 「기초조형학연구」, 17(6), pp.147.

28) 외부성(externalities, 또는 외부 효과 external effect)은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소비의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른 개인에게 비용이나 이익 등의 파생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네처는 문화예술이 네 가지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술 장르들의 상호의존성으로 window 효과를 가지며, 둘째,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셋째, 예술의 실험적 특성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은 몇몇 도시들에서는 경제 활동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김학실, 2001).

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예술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시장실패 등을 이유로 영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강조한다면 문화예술의 ‘공공성’은 훼손될 뿐 아니라 대중예술에 몰입하게 되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불균형 성장의 간극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5) 소결

복지국가란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예술에도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예술은 다른 재화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즉,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정보의 불균형, 높은 거래비용, 독과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이러한 예술 노동시장의 비예측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프로젝트 형태의 제작방식은 예술인들을 과잉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논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학자, 미학자와 행정·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을 논하게 전에 ‘예술인’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직업적으로 단속적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직업분류로 본 ‘예술인’은 복잡한 과업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제3직능 수준 혹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제4직능 수준에 속해 있다. 이렇듯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직군이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술인이 많다는 점은 국가의 지원에 대한 제고의 이유라 할 수 있다.

공적지원이 필수적 요소인 예술인 복지 지원의 경우,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공공성은 존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에서 인정을 받는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다양한 사회 형식들과의 접목으로 예술을 공공재, 공익적 성격이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외부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1) 문화정책의 유형

‘문화정책’은 문화라는 목적을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엮어내는 공공활동으로 문화의 가치를 획득·유지·부가·증대시키기 위하여 정책주체가 의도하는 종합적인 생각·행동 대안이라고 이흥재(2014) 정의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관련가치나 문제에 대한 행동지침들을 만들고 목적과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하나의 정책은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또 수많은 프로젝트로 구조화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을 통하여 사회전체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축적되어 ‘사회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가 바람직한 사회 구축의 기반이자 중심으로서 활약하도록 정책이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흥재(2014)는 문화정책 목표에 따라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목표와 수단을 연계시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책은 사회 내의 차원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수단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문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정책수단을 갖춰야 하는데, 이때 동원하는 정책수단은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역할에 따라 지원, 조성, 육성 및 보호, 규제(규제완화)로 나누고 있다.

첫째, ‘지원’은 문화정책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직접지원과 세제방식을 이용하는 간접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민간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개인 또는 단체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성’은 정부가 시설제공자로서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이벤트나 캠페인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작권 정비와 같은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사항을 정비한다.

셋째, ‘육성 및 보호’는 정부가 미술관, 예술교육·훈련기관, 개인의 잠재적인 예술적 재능을 교육·육성하며,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예술인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즉, 문화예술의 불안정한 시장구조로 예술·인력 자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넷째, ‘규제 및 규제완화’는 문화정책에서 소수의 집단에게만 제한적으로 자원상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조치를 말하며,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인 규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규제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의 원활한 흐름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거나 보호·육성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정철현(2015)은 ‘정책’이 공공을 위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활동이라면, ‘문화정책’은 공공을 위해 문화관련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문화’를 보는 시각에 따라 문화정책의 내용이 달라진다. 즉 문화를 ‘한 시대 한 집단이 공유하는 생각’으로 정의하는 광의로 보면, 우리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이며, ‘예술’로 보는 협의일 경우 문화정책은 예술관련 특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정철현(2015)은 문화를 협의의 예술로 보며 공공을 위한 예술 관련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철현(2015)은 ‘문화정책’의 종류를 문화 인프라 정책, 지원정책, 규제정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문화 인프라 정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에 대한 내용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공연장, 문화회관 등 하드웨어적인 것과 문화 인프라 관련 인적 자

원과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다시 나뉜다.

둘째, ‘지원정책’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을 통해 정부가 직접 문화예술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간접지원은 정부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조금, 조세감면제도, 교육훈련제도 등이 있다.

세 번째,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과 조직의 활동에 제재, 통제, 제한을 가하는 정책으로 이흥재(2014)와 같이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이 있다고 본다. 경쟁적 규제정책으로는 카지노, 게임 산업, 사행 사업 등이 해당되며, 보호적 규제정책은 제한을 가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이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문화정책’ 연구는 현안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이상열·정종은(2017)은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의제와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 의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정하였다.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흥재(2014), 정철현(2015), 이상열·정종은(2017)의 문화정책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 복지를 위한 ‘문화정책’ 수단의 유형으로 ‘지원·육성·보호·조성·규제’ 다섯 가지를 정하였다. 불규칙적인 고용과 불안정한 수입구조를 갖는 예술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 수단을 단독의 정책수단으로 규정하였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첫째, ‘지원’은 개인 또는 단체의 예술 활동, 복지에 대한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비예술적 경제활동으로 전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육성’은 문화예술정책을 펼치는 생산자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로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교육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적·창의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보호’는 예술인이 무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근거를 마련하고, 자유와 독립에 바탕을 두고 주도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지위 수준에 걸맞게 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

넷째, ‘조성’은 정부가 제공자로서의 입장에서 문화관련 사회간접자본을 구축,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 문화예술 활동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관련 사항 정비 등의 정책을 말한다.

다섯 째, ‘규제’는 문화예술의 원활한 흐름과 발전, 활성화를 위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의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단’을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 복지 사업의 분석 및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지표로 사용한다.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 체계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표 2-3> 문화정책 유형

| | | |
|---------------|--------------|---|
| 이흥재 (2014) | 지 원 | ·직접지원 : 보조금의 형태 ·간접지원 : 세제방식을 이용 |
| | 조 성 | ·예술인·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이벤트나 캠페인을 통한 문화예술진흥 분위기 조성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정비 : 저작권 정비 등 |
| | 육성 및 보호 | ·개인과 기관의 잠재적인 예술 재능을 교육·인재 육성 ·불안정한 시장구조로 위험요소가 많은 예술인을 보호 |
| | 규제 및 규제완화 | ·소수의 집단에게 제한적으로 자원상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조치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문화예술의 원활한 흐름과 발전, 활성화, 보호·육성의 수단 |
| 정철현 (2015) | 문화 인프라 |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공연장, 문화회관 등 ·소프트웨어 : 인적 자원, 프로그램 등 |
| | 지 원 | ·직접지원 : 공공기관,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을 통해 문화예술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역할 ·간접지원 :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 - 보조금, 조세감면제도, 교육훈련제도 등 |

| | | |
|----------------|------------------------|--|
| | 규 제 | ·특정 개인과 조직의 활동을 제재, 통제, 제한 ·경쟁적 규제 : 카지노, 게임 산업, 사행 사업 등 ·보호적 규제 : 제한을 통한 국민 보호 |
| 이상열·정종은 (2017) | 문화민주주의, 문화인력의 안정성 제고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권 신장을 위한 기반 강화 ·문화재정의 확충과 안정적 운용 ·문화인력 안정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
| | 사회적 갈등 다양성으로 승화 | ·공존,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삶의 지표 설정 ·문화다양성의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대응력 강화 |
| | 문화자치, 지역재생 |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원 ·지역 문화, 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의 행정, 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의 연계 운영 ·사람과 활동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및 도시문화재생 ·역사, 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발굴, 보존 및 지역학 진흥 |
| |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생애주기, 취향을 고려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강화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확충 |
| |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있는 미래 정책 | ·미래사회의 인류를 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정립 ·기술 변화에 조응한 협업 기반 및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인간 고유의 창의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립 ·문화예술-과학기술 간 리더십 제고와 생태계 조성 |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수단 도출’

| | | |
|----------------|-----|--|
|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수단 | 지 원 | ·직접지원 : 예술 활동에 대한 보조금 형태 ·간접지원 : 세제혜택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창작활동 집중, 비예술로의 전업 방지 |
| | 육 성 | ·문화예술 인력 육성 및 교육 |
| | 보 호 | ·예술인의 지위 수준에 맞는 보호 |
| | 조 성 | ·문화관련 사회간접자본 구축 ·예술인 복지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문화예술 활동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정비 |
| | 규 제 | ·문화예술의 원활한 흐름과 발전, 활성화를 위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

※ 이흥재(2014), 정철현(2015), 이상열·정종은(2017)의 내용을 재구성

2)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및 보험

‘사회복지(social welfare)’ 혹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은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사회통합, 빈곤의 예방, 소득재분배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제도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박석돈(2010)은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관점에 따라 관계가 설정되는데 ‘사회복지’가 ‘사회보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이 이에 해당하며,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미국과 독일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사회보장’이란 말은 1934년 6월 8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뉴딜정책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1935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고 시행한 이후부터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목표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강자들의 일정 이상의 소득을 거두어들여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으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회보험제도’가 마련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삶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공무원·교원 및 군인을 위한 연금과 산재보험 및 생활보호사업이 시행되었다. 이후 경제개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빈곤, 가족해체 등의 사회문제 심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로 1980년대 중반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 시대로 발전하였다. 1995년 고용보험의 실시와 함께 4대 보험의 기본 틀을

29) 정갑영 외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7.

30) 이규석 외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문화관광부, pp.28-29.

갖추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모, 2006: 이규석 외, 2007, 재인용: 96).

1995년 개정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사회보장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제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제도 중 ‘사회보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보험

복지국가는 독과점, 공공재, 외부성, 정부의 불완전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거나 보완해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시장실패의 형태들 중에서 특히 ‘정보의 불완전성’은 사회보험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보의 불완전성’이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대상인 재화와 관련된 정보, 즉 재화의 질이나 생산비용에 대한 정보를 불완전하게 갖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쪽은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상황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본다. 이 경우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다른 쪽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끌고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간 보험시장에서는

질병이나 화재 등의 사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보험서비스 소비자인 보험 가입자가 보험서비스 공급자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출을 늘리게 되고 다시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민간 보험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가능성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가입 원리에 입각한 정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은 보험 가입자 수를 극대화함으로써 보험 가입자들이 질병이나 화재 등의 사건에 직면할 평균적 확률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 적정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신정완, 2014).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제 수단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시행된다. 보험 형식으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있을 때 자신의 소득 일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여 문제발생시 혹은 수급요건에 맞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며,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³¹⁾

사회보장체제는 핵심적 제도로서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수직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포함한 장애, 사망, 노령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산재보험’, 주로 실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5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가족수당제도’는 도입되고 있지 않다.

최근 독일과 일본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보험(介護保險)’으로 부르고 있다. 간호보험 혹은 수발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³²⁾

31) 박완태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이규석 외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관광부, pp.29.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토대로 한 비약적인 생산 증대 여건 하에서 도입·성장하였으나, 규제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횡포를 조정·관리·통제하기에 미흡하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4대 보험의 확대적용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적용대상 확대방침에 따라 고용보험(1998년 10월 기준)과 산재보험(2000년 7월 기준)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1인 사업장과 월 80시간 이상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확대되도록 개정되었으며(2003년 7월 기준), 고용보험(2004년 기준)이 60세 이상 고령자와 월 60시간 이상의 단시간노동자에게 확대되었다.³³⁾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직종별 구분이 없는 국민통합형 제도로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있어 비정규 일용직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소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임금근로자의 신분을 얻어 지역 가입자의 성격으로 기존 사회보험제도체계에 편입 가능한 예술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단속적 비정규직의 예술인들은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격에 부합되지 않아 제도에 편입될 수 없거나, 자영업자 신분인 다수의 예술인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담보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용자 주체인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업의 경제적 영세성으로 인해 사회보험 분담금 지불 능력의 부재로 사회보험 가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 예술인들의 사회보험제도 편입 가능성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³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할 수 없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험 및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즉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서 탈락하거나 사회보험으로도 최저생계에 미달할 경우를 위해 일정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조세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및

33) 이규석 외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관광부, pp.125-126.

34) 이규석 외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관광부, pp.129.

사용자 등의 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해 전액 재정을 지원한다. 부양자 기준 및 자산조사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층들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실업에 의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했을 때, ‘실업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업급여의 지급기한이 종료되거나, 실업급여 지급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업부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업부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2) 고용보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³⁵⁾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개인 혜택으로는 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등이 있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70인 이상)에 적용되었다.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1998년 3월 1일 기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가 진행되었다. 1998년 10월 1일 기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 12월 30일 기준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그 적용

3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el.go.kr/index.do>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³⁶⁾ 및 시간제근로자(월간 60시간·주당 15시간 이상)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시에는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에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특례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표 2-4>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시기 및 내용

| 시기 | 적용범위 확대 내용 |
|---------------|--------------------------------|
| 1995년 7월 1일 | ‘고용보험’ 도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
| 1998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
| 1998년 3월 1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 1998년 10월 1일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전 사업장 |
| 2002년 12월 30일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의 업종 확대 |
| 2004년 1월 1일 |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확대 |
| 2005년 1월 1일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정 |

※ 본 연구자가 재구성

‘실업보험’은 원래 실업자의 생계보장, 즉 가장의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의 생계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으로 고용이 아니라 실업에 초점을

36)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이규석 외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관광부, pp.119, 재인용.

둔 제도였었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기존의 실업대비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시킨 고용보험체제,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실업자 소득보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일차적으로 ‘실업보험’으로 해결하고, 실업보험의 급여기간을 넘겨 수급자격을 상실한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차적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복지국가에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실업부조’를 실시하지 않고 고실업시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연장급여제도를 실시하는 유형으로 미국, 일본, 한국이 해당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아닌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실업보험은 없고 실업부조만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원석조, 2007: 이규석 외, 2007: 116, 재인용).

실직자의 상실된 소득에 대한 보상으로 ‘실업보험’을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 수혜를 받는 노동자 이외에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실직자 등을 위한 ‘실업부조’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여러 가지 실업에 대한 보상조치를 수혜하고서도 취업에 이르지 못한 실직자들에 대해서 제공되는 ‘공공부조’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의 문제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직종별 구분이 없는 국민통합형 제도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예술인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해 수혜 혜택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또한,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예술가들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근로경력)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미흡하다.³⁷⁾

2009년에 발의된 「예술인복지법안」에서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규정되었다. 법제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조항과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37) 이규석 외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관광부, pp.133.

삭제되고 ‘산재보험’ 관련 조항만 남게 되었다.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 대상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4대 보험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제외됨으로써 예술계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³⁸⁾

2019년 말부터 발병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20년 5월 2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³⁹⁾ 시행에 관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8년에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이르면 2020년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⁴⁰⁾

당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 내에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을 추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9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산재보험

38) 박영정 (2012. 07). 예술인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예술인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월간 노동리뷰」, pp.13.

3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에 직업훈련과 월 50만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한국일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정안 통과... 특수고용직은 다음 국회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01508099202> (2020.05.20.)

40) 뉴스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무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01508099202> (2020.05.21.)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즉,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세기 외국의 문호가 개방된 이후 광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안이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법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던 것을 2000년부터는 농·임·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범제화되었던 1964년에는 적용업종이 광업과 제조업에 국한되었지만, 이후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1965), 건설업·서비스업·수도위생시설업·통신업(1969), 임업 중 벌목업(1982), 농수산물 위탁 판매업(1982)이 추가되었다.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1991년 기준 농업·임업·어업·수렵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교육 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연구 및 개발업(1996), 금융·보험업(1998),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까지 확대하였다. 2000년 기준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까지 확대되었다(200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근거가 2004년에 마련되었다. 2008년에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부터는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2018년 7월 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

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기사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얻게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⁴¹⁾ 이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건설기계기사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얻은 법안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예술인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데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표 2-5>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시기 및 내용

| 시기 | 적용범위 확대 내용 |
|-------------|--|
| 1964년 7월 1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 1965년 |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 |
| 1969년 | 건설업·서비스업·수도위생시설업·통신업 |
| 1982년 | 임업 중 벌목업, 수산물 위탁 판매업 |
| 1989년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1991년 | 농업·임업·어업·수렵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 1996년 | 교육 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연구 및 개발업 |
| 1998년 | 금융·보험업 |
| 2000년 |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 2001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
| 2008년 |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제도 도입 |
| 2012년 | 택배 및 쿠팡서비스기사, 예술인 |
| 2018년 7월 2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개정 |

※ 본 연구자가 재구성

41) 고용노동부 (2018), 「2017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서울: 열림기획(주).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각 급여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6>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 | |
|--------|---|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 |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 |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 |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 |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 |

※ 출처: 이규석 외(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의 내용을 편집

2011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제7조⁴²⁾에 따라 2012년 11월 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42)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8일부터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나 스티트맨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규정의 한 내용으로써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⁴³⁾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할 때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근로자 관련 사회공동체 유형

문화예술분야는 예술인들의 단속적 고용 및 직업 지위와 관련된 특성, 법적·제도적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의 부재, 산업 내 오래된 불공정 관행에 의한 불안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존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적 효과가 낮아 여전히 예술인들의 저임금, 일자리의 질과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국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예술인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사회공동체의 유형을 살펴보고 문화예술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인들의

43) 박은정 외 (2018),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인용.

복지 증진, 생활불안 해소 및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으로 ‘노동조합’을, 문화예술분야 경제 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노동조합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19세기 말, 임금노동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노사관계 차원이 아닌 민족감정의 대결양상으로 이후 항일투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반식민지 투쟁으로 출발하였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대립적, 투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⁴⁴⁾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근로3권의 기본권 중 단결권에 의하여 보장되며 근로자 단체의 실질적·적극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구성주체가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라고 함은, 근로자로서 조직되고 제3자, 특히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는 물론 행정관청, 정당, 또는 교회 등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노조법」은 제2조 제4호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단서로 정하고 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

44) 김영미 (2015), “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 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재인용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⁴⁵⁾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법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설립요건으로 설립된 근로자 단체로 법에서 정한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 가입범위, 가입자격, 가입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직업별 노동조합, 사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으로 나뉘며, 구성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근로자 개인인가 노동조합인가에 따라 단위노조와 연합노조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1980년대 독재정권과 신군부의 억압으로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노동자 연대운동에 소극적이었으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7년 총파업과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제조업 비중의 저하, 서비스업의 증가, 대기업의 고용 감소,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 체계의 변화를 겪는다. 이에 따른 교섭 구조의 변화는 노동조합의 전략과 행동, 노사관계 체계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조효래, 2010).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이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특히 조직화가 어려운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데 용이한 틀이며, 개별 근로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산별노조에 가입한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특징을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조합원 수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통계를 보면 2018년의 조합원수가 2,331,632명으로 전년 대비 243,092명(11.6%)이 증가하였으며, 노조수는 5,858개로 전년 대비 371개(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연맹으로는 1946년 발족하여 1960년에 개칭된 한국노동조합총연

45)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맹(한국노총)과 1995년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16년 창립한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 2015년에 설립된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총)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수의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노총 40.0%, 공공노총 1.5%, 전국노총 0.9% 순이며 기타 미가맹 노조 소속이 16.1%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형태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2018년 말 기준 초기업노조⁴⁶⁾ 소속 조합원은 57.9%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맹에 따라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 민주노총은 86.8%, 공공노총이 75.5%, 전국노총이 92.8%로 초기업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노총은 기업별노조 소속 조합원이 56.5%, 미가맹 노조의 경우 85.0%를 차지하여 서로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2-7> 전국 연맹별·노조조직형태별 조직현황(2018년 기준)

| 총연맹별 | 조직형태 | 노조 수(개소, %) | 조합원 수(명, %) |
|------|-----------|-------------|---------------|
| 민주노총 | 기업별노조 | 286(77.9) | 127,781(13.3) |
| | 지역별·업종별노조 | 34(9.3) | 20,136(2.1) |
| | 산별노조 | 36(9.8) | 820,118(84.7) |
| | 산별연맹 | 10(2.7) | 0(0.0) |
| | 총연맹 | 1(0.3) | 0(0.0) |
| | 소계 | | 367(100) |
| 한국노총 | 기업별노조 | 2,090(90.6) | 526,730(56.5) |
| | 지역별·업종별노조 | 141(6.1) | 114,380(12.3) |
| | 산별노조 | 54(2.3) | 291,881(31.3) |
| | 산별연맹 | 21(0.9) | 0(0.0) |
| | 총연맹 | 1(0.0) | 0(0.0) |
| | 소계 | | 2,307(100) |
| 공공노총 | 기업별노조 | 47(77.0) | 8,608(24.5) |
| | 지역별·업종별노조 | 5(8.2) | 5,505(7.1) |

46) 초기업노조는 산별노조, 지역별·업종별 노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 | | |
|------|-----------|-------------|-----------------|
| | 산별노조 | 5(8.2) | 24,089(68.4) |
| | 산별연맹 | 3(4.9) | 0(0.0) |
| | 총연맹 | 1(1.6) | 0(0.0) |
| | 소개 | 61(100) | 35,202(100) |
| 전국노총 | 기업별노조 | 7(58.3) | 1,560(7.2) |
| | 지역별·업종별노조 | 0(0.0) | 0(0.0) |
| | 산별노조 | 2(16.7) | 20,000(92.8) |
| | 산별연맹 | 2(16.7) | 0(0.0) |
| | 총연맹 | 1(8.3) | 0(0.0) |
| | 소개 | 12(100) | 21,560(100) |
| 미가맹 | 기업별노조 | 2,896(92.8) | 317,582(85.0) |
| | 지역별·업종별노조 | 138(4.4) | 14,495(3.9) |
| | 산별노조 | 61(2.0) | 41,767(11.2) |
| | 산별연맹 | 26(0.8) | 0(0.0) |
| | 총연맹 | 0(0.0) | 0(0.0) |
| | 소개 | 3,121(100) | 373,844(100) |
| 전 체 | 기업별노조 | 5,326(90.8) | 982,261(42.1) |
| | 지역별·업종별노조 | 318(5.4) | 151,516(6.5) |
| | 산별노조 | 158(2.7) | 1,197,855(51.4) |
| | 산별연맹 | 62(1.1) | 0(0.0) |
| | 총연맹 | 4(0.1) | 0(0.0) |
| | 소개 | 5,868(100) | 2,331,632(100) |

※ 출처: 고용노동부(2019). 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p.22. 재구성.

(2)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1830년 프랑스의 자유주의자 샤를르 뒤누아예(Charles Dunoyer)가 ‘새로운 사회적 경제 개론’을 발표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유럽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삶이 피폐해진 노동자들이 이

에 대한 자구책으로 공동구매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20세기 전반까지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차원의 결사체들로 확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축소되었다. 1970년 후반 시장실패로 인한 재정악화로 복지 서비스에 위기가 오자 사회적경제는 다시 부활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정의⁴⁷⁾를 살펴보면 드푸르니(Jacques Defourny)는 법적·제도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의 이중적인 접근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차원으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라는 법적 지위를 포함한다. 규범적 차원으로는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수익배분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에서는 사회 및 연대의 경제(solidarity economy)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부, 시장 및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가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생태환경을 의미한다.

폴라니(Karl Polanyi)는 상호배려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한 경제로 본다. 구성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회적 목적, 자본에 의한 이윤 배분이 제한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사결정,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중요한 3가지 요소로 본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⁴⁸⁾ OECD에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EU에서는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구성원·공동체의 필요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

47) 연수현 (2018).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pp.14-15.

4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pp. 14.

여재산 타법인 양도를 6대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이라고 정의한다.

이렇듯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국가·시대별로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8>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 | |
|----------------------------|---|
| 드푸르니 (Jacques Defourny) | 법적·제도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의 이중적인 접근을 통한 규정 |
| 국제노동기구(ILO) | 사회 및 연대의 경제(solidarity economy) |
| 폴라니 (Karl Polanyi) | 상호배려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한 경제 |
| OECD |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
| EU |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 캐나다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 활동 |
| 우리나라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 본 연구자가 재구성

‘사회적경제’의 긍정적인 기능⁴⁹⁾으로 첫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의 역할을 한다.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유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 및

49)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pp.4.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며,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하되,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과 사회 그리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기업이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비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⁵⁰⁾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중 자립 지향적이며 비영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①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ICA)⁵¹⁾이 1995년 맨체스터에서 개정한 협동조합 선언문에서 정의한 내용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201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5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pp. 17.

51)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협동조합사업을 국제적으로 보급하고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일 하는 국제적 협동조합 연합체이다.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이라고 되어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가치를 실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제1의 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로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이며 성(性)·사회·인종·정치·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로 조합원이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등한 의결권과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제3의 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로 조합원이 자본조달에 있어서 공평한 부담을 맡고 자본에 대한 관리를 민주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본금의 일부를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하며,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는 조합발전, 조합원의 편익제공, 내부 유보 및 기타 활동 지원 목적으로 배분을 해야 한다. 제4의 원칙은 자율과 독립으로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자조적 조직으로서 조합원에 의한 자율,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며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의 원칙은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으로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일반대중,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의 원칙은 협동조합 간 협력으로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며,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제7의 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은 19세기에 출현하였다. 산업혁명이 지속되면서 자본가는 거대해지고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중·소 상공인들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폐해져 갔으며, 빈부의 격차는 1837년 대공황에 이르러 극심해졌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병폐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한 형태가 '협동조합' 이다. 즉 대자본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유럽대

륙의 여러 나라에서도 협동조합운동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을 협동조합운동의 효시로 본다. 이 조합은 1844년 10월 동맹파업에 실패한 28명의 면직물 공장의 직공들이 모여 자율적이고 공정한 규율을 정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을 사고파는 협동조합을 직접 운영한 것이다(박준오, 2015).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서유럽보다 80년 이상 늦게 조직이 되었다. 1927년 상주군 함창면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지식인들이 귀국하여 함창면을 거점으로 하여 농민 계몽을 목표로 만든 ‘함창 협동조합’을 효시로 보고 있다. 일본 유학생들은 함창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관련 순회강연을 하며 전파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1930년에는 김천, 군위, 안동, 충청남도, 경상남도에까지 퍼져 조합수가 1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 총독부의 억압으로 모든 조합이 사라졌으며 그 기록 또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광복 이후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면서 지금과 같은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형태의 농협중앙회가 생겨났다(박준오, 2015). 수산단체들도 「수협법」이 1962년 제정되면서 조합이 생겨났으며, 1965년부터 수협중앙회가 어민들과 관련된 자금 일체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81년에는 양축가의 협동조직인 축산업협동조합이 발족하여 축산물 유통과 사료가공사업 등을 담당하였으나, 2000년 농협중앙회로 통합되었다(박준오, 2015).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서 1차 산업 및 금융·소비 분야 외에 협동조합 설립이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의 세 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20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나타나기 전까지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만든 ‘소비자협동조합’, 노동 소외와 불안정한 고용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협동조합’, 특정 분야의 생산자들이 협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하는 ‘생산자협동조합’,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드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즉, 동일한 욕구를 가진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경제적 결사체를 조직하여 공동의 이익 추구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협동조합들이다.

1970년대에 시장 및 정부 실패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개념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적경제 모델 중 하나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등장하였다. 조합원 ‘공동’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형성되는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사람,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각종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협동조합이다. 즉 시민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가 처한 문제들에 대응해나가는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Cooperativa Sociale)’에 대한 법이 제정된 이후 캐나다에서는 ‘사회적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공익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ve, SCIC)’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개의 형태로 총 14,52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일반협동조합은 13,267개(91.3%)로 가장 많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 1,185개(8.2%), 연

합회는 74개(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업종별 협동조합의 설립현황

|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합계 |
|--------|------------|-------------|-------------------|--------------------|--------|
| 조합수(개) | 13,267 | 1,185 | 63 | 11 | 14,526 |
| 비중(%) | 91.3 | 8.2 | 0.4 | 0.1 | 100 |

※ 출처: 기획재정부 (2020).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재구성. (2018년 말 기준)

② 사회적기업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복지국가 대부분이 1970년대부터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제시되었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제도 등의 체계적인 기반이 수립되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987년 이후 도시지역에서 시작된 생산자협동조합이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실업·빈곤문제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점차 그 범위가 환경,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점차 지자체로 확대되어 관리되고 있다.⁵²⁾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별로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 둘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셋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사회공헌형, 넷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다섯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인 기타(창의·혁신)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나 이후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을 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뉜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⁵³⁾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과 동시에 소비자, 지역공동체, 생산자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므로 주주나 소유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투자확충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되어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킨다.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로써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으로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한다.⁵⁴⁾

넷째, 사회적기업을 통해 많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발산되고, 이러한 에너지는

52) 김은정·한정미·김현희·장원규·이춘원 (2017).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8.

53) 김중수 (2010), 문화영역 사회적기업의 역할,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1(1), pp.100-101.

5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인증된 사회적 기업 수는 55개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774개소, 2015년에는 1,506개소, 2019년 12월 기준 2,435개소로 증가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47,322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28,628명으로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1개 기업당 평균 19.4명을 고용하여 일반 사업체 1개 기업당 평균 5.4명을 고용하는데 비해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1,629개소(66.9%)로 가장 많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이 307개소(12.6%), 혼합형 194개소(8.0%), 지역사회공헌형 155개소(6.4%),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50개소(6.1%)로 나타났다(2019년 12월 기준).

예비사회적기업은 2019년 12월 기준 총 2,413개소가 활동 중이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429개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984개소이다.

<표 2-10> 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

(개소, %)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합계 |
|-------------|-----------|----------|----------|------------|-------|
| 1,629(66.9) | 150(6.1) | 155(6.4) | 194(8.0) | 307(12.6) | 2,435 |

※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재구성.
(2019년 12월 기준)

<표 2-1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별 현황

(개소)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
| 지점수 | 225 | 78 | 62 | 58 | 22 | 66 | 42 | 268 | 106 |
| 구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합계 |
| 지점수 | 67 | 50 | 73 | 68 | 99 | 61 | 71 | 13 | 1,429 |

※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재구성.
(2019년 12월 기준)

<표 2-1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별 지정 현황

(개소)

| 구분 | 교육부 | 농림축산 식품부 | 문화재청 | 보건 복지부 | 산림청 | 여성 가족부 |
|-----|-----|-------------|-----------|-----------|-------------|-----------|
| 지점수 | 0 | 38 | 10 | 54 | 117 | 47 |
| 구분 | 통일부 | 환경부 | 국토 교통부 | 고용 노동부 | 문화체육 관광부 | 합계 |
| 지점수 | 8 | 28 | 102 | 524 | 56 | 984 |

※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재구성.
(2019년 12월 기준)

4) 소결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책 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위해 문화정책에 대한 이론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흥재(2014), 정철현(2015), 이상열·정종은(2017)의 문화정책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단 ‘지원·육성·보호·조성·규제’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의 연구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수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에 대해 살펴보고 그 수단 중 ‘사회보험’을 살펴보았다. 사회보장제도체계에는 핵심적 제도인 4대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이 중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산재보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확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결과로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사회공동체의 유형을 살펴보고 문화예술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생활불안 해소 및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회적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특징들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제 활동 조직으로써 적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두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활성화, 공동체 문화 형성, 사회적 공헌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문화예술분야의 고용관련 문제와 이에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예술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공재로서의 예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는 예술인들의 오랜 노력 하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 복지 사업을 시행한지 약 7여년이 지났다.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하지만,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의 범위와 규정이 모호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더욱 많았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012년)되면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예술인 사회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 연구들은 ‘예술인 복지 제도’, ‘예술인 공제회 설립’,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술인 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 전 필요한 기초 조사와 시사점 도출을 위한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었다. 정갑영(2003), 이규석 외(2007), 강익희(2011) 등의 연구에서 예술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실현가능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등이 제시되었다. 2008년에는 ‘예술인 개념 정의를 위한 토론회’가 경기문화재단의 주최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나은(2012)은 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통해 예술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고무시키고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의 마련이라고 연구자는 밝히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과제의 하나로 ‘예술인 공제회’ 설립이 제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연구보다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박영정·공혜영(2008), 문화체육관광부(2008) 등의 연구들이 그것이며 2008년에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 인식 및 복지 수요 조사’, 2009년에 ‘예술인 복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태완 외(2009)은 2008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예술인 공제회 운영을 위한 세부설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예술인 공제회’ 설립이 무산되고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추진이 국회와 정부에서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김세훈·박영정·정정숙·허은영(2007), 고재욱(2011), 김휘정(2011)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문화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예술인 복지 제도화와 법 제정의 필요성, 예술인의 정의 및 기준,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법안, 복지 지원의 쟁점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의 연구들은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예술인 복지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규정과 범위가 뚜렷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3>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 선행 연구

| 연번 | 연구자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 복지제도 | 1 정갑영(2003)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실현가능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제시 | ·외국사례검토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
| | 2 이규석 외 (2007) | ·예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국내외 예술인복지 프로그램 분석 ·정책과제, 추진전략 제시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공제회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국내외사례검토 ·예술인 심층 인터뷰 |
| | 3 강익희(2011) | ·국내 예술인의 실태, 문화예술분야의 고용의 특성 제시 ·해외의 예술인 복지제도 소개 ·국내 예술인 복지개선을 위한 과제 제시 | ·분야별 실태조사 활용 ·외국사례검토 |
| | 4 나은(2012) | ·예술인의 법적지위, 예술인의 정책 제도의 실현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문헌연구 ·외국사례검토 |
| 공제회 | 5 박영정·공혜영 (2008) | ·‘문화예술공제회’설립을 위한 정책 환경의 분석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 |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
| | 6 문화체육관광부 (2008) | ·주요 공제제도 검토 ·예술인공제회 기본설계를 통한 공제회 설립·운영방안 도출 | ·기존사례검토 |
| | 7 김태완 외 (2009) | ·예술인공제회 운영을 위한 세부설계 방안 마련 | ·문헌연구 ·공제사업 및 상품 분석 |
| 법제정 | 8 김세훈·박영정·정정숙·허은영 (2007) | ·문화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법정책적 차원에서 정비 방향과 기준 제시 | ·문헌연구 ·전문가자문회의 ·법령사례분석 |
| | 9 고재욱(2011) | ·사회적 소수자로 예술인을 분류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법제정과 복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외국사례분석 ·법안비교분석 |
| | 10 김휘정(2011) |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쟁점 분석 ·해결해야할 입법, 정책 과제들의 제시 | ·국내외사례분석 |

2)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들을 발표형태에 따라 보고서, 학술지, 학위논문으로 1차 분류를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사회보장제도’, ‘법 제정’ 등 제도 마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의 연구들은 구체적인 주제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복지법의 한계점 혹은 개정, 고용보험의 도입, 장르·지역·연령·성별로 예술인을 분류하여 각각의 복지 혜택에 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보고서의 경우는 학술지나 학위논문보다는 포괄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박조원 외(2013)의 연구는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 사업에서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법」의 한계점을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안주엽·황준욱(2014), 서우석 외(2016), 양혜원 외(2018)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한상현·임재현(2015)의 연구와 김대완 외(2016)의 연구가 있다. 한상현·임재현(2015)은 대부분 정책을 전국단위로 정하므로 수도권의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들어, 대전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화 활동의 지속성과 수준 향상,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김대완 외(2016)는 복지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및 복지전달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철 외(2017)는 예술인의 낮은 수입과 단속적인 활동으로 경제적 지위가 열악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여 인정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고 발전적인 ‘예술인 복지 금고’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박은정 외(2019)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심층면접 인터뷰를 통해 증장기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4>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복지 관련 선행 연구(보고서)

| 연번 | 연구자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 보 고 서 | 1 | 박조원 외 (2013) ·해외 예술인복지정책 분석(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 사회적 기업 및 조합의 활성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확대 제시 | ·문헌분석 |
| | 2 | 안주엽·황준욱 (201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제시 ·프랑스의 엔페르미땅 분석 | ·기초조사분석 ·사례분석 |
| | 3 | 한상현·임재현 (2015)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정책방안 제시 | ·문헌조사 ·전문가심층인터뷰 |
| | 4 | 김태완 외 (2016) ·원로 및 여성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맞춤형 복지지원 및 복지전달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실태조사 ·사례연구 |
| | 5 | 서우석 외 (2016)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방안 제시 및 사회적 이해도 제고 | ·문헌조사 ·심층면접, FGI ·기존설문조사활용 |
| | 6 | 정철 외(2017)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한 국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방안 제시 | ·문헌조사 ·심층면접, FGI ·사례, 현황분석 |
| | 7 | 양혜원 외 (2018) ·영화·뮤지컬·연극 분야를 우선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의 실태 파악 ·향후 타 장르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와 설정기준을 제시 | ·문헌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사례분석 ·관계자인터뷰(FGI) |
| | 8 | 박은정·박귀천· 장우찬·신수정 (2019) ·예술인 산재보험제도의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인터뷰조사 ·예술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도론 적으로 단기적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 제시 | ·실태조사 ·심층면접인터뷰 |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경우 보고서에 비해 주제의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다.

첫째,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위주의 연구이다. 학술지에서는 유가원(2013), 김종국(2014), 김현숙(2016), 박지우·오세곤(2018)의 연구가 학위논문에서는 강옥진(2016), 강기호(2019)의 연구가 해당된다. 복지 혜택 대상자를 예술인 전체가 아닌 구체적으로 무용인, 영상제작 종사자, 무대예술 실연자(배우), 음악인, 연극예술인 등으로 한정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 경우이다. 정지영·정호진(2018)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다. 박계배(2016)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사업에 대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참여동기와 이미지, 참여만족, 행동의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인 정책사업의 설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이다. 김경한(2014)의 연구는 고용보험에 대한 기초연구라고 볼 수 있다. 김경한(2014)은 예술인도 예술 노동자로 보아 여타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기본조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서우석·이경원(2019)의 연구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특고(특수고용직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포함한 국정운영계획을 발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이 준비되어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함께 이루어진 연구이다. 서우석·이경원(2019)은 제도 도입 이후의 정착과 과제 해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박아연(2016)은 우리나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외국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적용 가능 범위를 도출하고 제시하고 있다.

넷째, 「예술인 복지법」 개정과 관련된 연구이다. 박시영(2018)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윤경·김선형(2018)은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과정을 분석해봄으로써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의사결정의 흐름들이 법의 효과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이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형성을 위해 의사결정의 과정 및 역할을 고찰하며 결정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만주(2015)는 법과 제도 안에서의 예술인 위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제도 안에서 가용한 실천적 연계방안과 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분석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헌조사, 심층면접,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김현숙(2016)은 Q방법론, 정지영·정호진(2018)은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을 이용하였으며, 김윤경·김선형(2018)은 Kingdon 모형을 적용해 보는 분석방법을 취하였다. 이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5>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 연구(학술지·학위논문)

| 연번 | 연구자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 학 술 지 | 1 | 유가원(2013)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무용가를 위한 복지 제도의 방향성 제시 | ·비교분석 |
| | 2 | 김경한(2014)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복지’와 ‘근로’ 영역으로 나누어 실태와 근거를 검토 ·예술인을 예술 노동자로 보고 여타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문헌연구 |
| | 3 | 김종국(2014) ·영상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제기 및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 방향 제안 | ·심층면접 |
| | 4 | 김현숙(2016) ·무용인들의 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구분, 유형별 특성, 유형 간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 ·실효성 있는 복지 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 ·Q방법론 |
| | 5 | 박시영(2018)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법의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사례연구 |
| | 6 | 정지영·정호진(2018)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분석 및 발전적 개선방안 제시 | ·Gilbert와 Terrell 분석 |

| | | | | |
|------------------|----|-------------------|--|---------------------------|
| | 7 | 김윤경·김선형 (2018) |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나타난 의사결정 과정 분석,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의사결정의 흐름들이 법의 효과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형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 및 역할 고찰 및 결정자들의 역할 중요성 강조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
| | 8 | 박지우·오세곤 (2018) | ·무대예술(연극) 실연자(배우)를 중심으로 계약실태와 불공정 사례를 분석, 서면계약서 활용 환경 개선과 불공정행위 대처방안 및 예술인 복지법 조항의 보완 제안 | ·설문조사분석 ·기사분석 ·법률분석 |
| | 9 | 서우석·이경원 (2019) |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의 정책적·학술적 시사점 ·제도 시행 전 다루어야 할 쟁점과 이슈 제시 | ·문헌연구 ·인터뷰 |
| 학 위 논 문 | 10 | 한만주(2015) |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예술인의 위상제고 ·전업예술인을 위한 법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 제시 ·예술인 위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세계의 흐름과 국내의 복지지원 부합 정도 | ·문헌연구 ·사례연구 ·분석연구 |
| | 11 | 박아연(2016) | ·국내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정착의 어려움과 해결 쟁점 ·외국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 범위 도출 및 제시 | ·문헌연구 |
| | 12 | 박계배(2016) | ·3년간 실행해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사업의 효과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향후 발전적인 정책사업 설계 방향성 제시 | ·사례분석 ·요인분석 |
| | 13 | 강욱진(2016) | ·음악분야에 종사하는 음악인들이 실질적으로 인지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시 | ·문헌연구 ·빈도분석 ·교차분석 |
| | 14 | 강기호(2019) | ·한국연극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 범위와 역할 안에서 연극인에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및 방향성에 제시 | ·문헌연구 ·빈도분석 ·교차분석 |

3) 예술인 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예술인 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이론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형성과정이 다르므로 분류하였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되는 기업의 형태이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각각을 따로 연구한 경우들이 다수였다.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큰 테두리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분리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노동조합

예술인 복지에 대한 연구가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반해 문화예술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근무환경 개선 또는 처우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아직 원론에 그쳐 있거나 미비한 상태이다(김혜리, 2011). 예술인 복지를 위해 이러한 주제의 심층적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혜원·권순원(2016)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불안정하고 단속적인 고용, 저임금과 낮은 복지, 약한 제도적 장치, 이해대변의 공백을 배경으로 예술인들의 자기 조직화 과정에 주목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대변의 원리의 의미와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태동하고 있는 유니온 운동을 조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유니온 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혜리(2011)와 김영미(2015)의 연구는 배우조합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배우라는 구체적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점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연구 주제의 범위가 좁고 구체적인 경향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최인이(2019)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의 이해 대변 활동을 분석하고 전략을 고찰하였다.

<표 2-16> 예술인 노동조합 관련 선행 연구

| 연번 | 연구자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 학 술 지 | 1 권혜원·권순원 (2016) | ·문화예술인 노동조합과 유니온의 새로운 이해대변 기제 및 차별화 분석 ·장르별 유니온의 의미와 전망 | ·문헌연구 ·면접조사 |
| 학 위 논 문 | 2 김혜리(2011) |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예술인복지를 위해 ‘배우 조합’을 제안, ‘배우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문헌연구 ·빈도분석 |
| | 3 김영미(2015) | ·한국 실정에 맞는 배우조합의 가능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심층면접 |
| | 4 최인이(2019) | ·문화예술인 이해 대변 활동을 검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선택하는 과정 분석을 통한 이해대변 전략 고찰 | ·심층면접 ·자료분석 |

(2)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상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경제 안정에 기여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국제연합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자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Année internationale des coopératives)’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허은영(2012)은 문화예술분야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및 「협동조합기본법」이 문화예술분야에 미칠 영향,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슬기 외(2016)의 연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변화한 정책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 정책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외에 노시훈(2015)은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있는 프랑스의 문화예술협동

조합의 발달과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시 고려할 점들을 제안하고 있다. 박준오(2015)와 이서(2019)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협동조합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 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서(2019)의 연구는 완도문화예술 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문화브랜드 가치를 통해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인재(2013)는 협동조합이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협동조합의 문화예술 생산적 측면과 문화산업 생태계측면으로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즉, 문화예술 협동조합은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이 향상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조에서 생산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상우(2017)는 문화예술 협동조합이 커뮤니티 아트라는 예술적 목표와 재정 자립이라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재원조성 방식으로 ‘클라우드 펀딩’의 제안은 주목해 볼만하다. ‘클라우드 펀딩’은 기하급수시대의 대안적 파이낸싱(alternative financing)으로 ‘인터넷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형태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7> 예술인 협동조합 관련 선행 연구

| 연번 | 연구자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 보고서 | 1 허은영(2012) |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협동조합기본법’이 문화예술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 ·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의견 |
| | 2 최슬기 외 (2016)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변화한 정책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의 원칙, 방향, 정책안을 제시 | ·문헌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
| 학술지 | 3 노시훈(2015) | ·프랑스의 문화예술 협동조합 발달유형 분석 및 성공 사례 고찰 ·우리나라 문화예술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시사점 제시 | ·문헌연구 |

| | | | | |
|------------------|---|-----------|---|-------------------------|
| | 4 | 박준오(2015) | ·2013년에 발족한 협동조합 ‘크라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술문화 협동조합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 | ·사례연구 |
| 학 위 논 문 | 5 | 안인재(2013) | ·문화예술 협동조합의 문화예술 생산적 측면, 문화산업 생태계측면으로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문헌연구 ·사례연구 |
| | 6 | 이상우(2017) | ·커뮤니티 아트라는 예술적 목표와 재정 자립이라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양적연구 |
| | 7 | 이서(2019) | ·완도문화예술 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

(3) 사회적기업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세계에서 법률이 제정되어 정책을 펼치는 몇 개국 되지 않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이동수, 2010). 역사적으로 국가의 지원이나 후원자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행정절차상의 어려움, 조직력, 사회적기업의 정보와 관련지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전환이 어려우며, 사회적기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많았다. 류정아(2001), 이동수(2010), 김성연(2017), 나윤아(2018)의 연구가 이러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은정·한정미·김현희·장원규·이춘원(2017)은 사회적기업 법인격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비영리법인으로써 투자자의 이익 배당 보장의 문제를 담보하는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특수 법인격의 인정이 필요하며, 운영에 있어 세부적이 개선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종수(2010)는 문화영역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역문화 복지와 지속가능한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김종수(2010)는 예술인들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만이 가진 창의성, 관계성, 공공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용현·장지호(2013)는 사회적기업이 형성되어온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연구를 하였다. 장효안(2017)은 사회적기업 내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이 일반기업에서의 노동조합 결성보다 당위적이며 용이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표 2-18> 예술인 사회적기업 관련 선행 연구

| 연번 | 연구자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 보고서 | 1 류정아 (2011) | ·국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차별성 파악 및 시사점 도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문헌연구 ·현장·설문조사 ·전문가인터뷰 |
| | 2 김은정·한정미·김현희·장원규·이춘원 (2017) |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정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체계와 운영원리 정립 ·경영상 의사결정에 있어 자본투자자 외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허용 및 이윤분배에 관한 절차 마련 | ·입법론적 연구 ·문헌연구 ·비교연구 ·실태조사연구 |
| | 3 김종수(2010) | ·문화영역 사회적기업이 지역문화 복지, 지속가능한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작용한 특성 분석 | ·질적연구 ·사례연구 |
| 학술지 | 4 조용현·장지호 (2013) | ·사회적기업이 형성되어온 다양한 환경적 요소,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수행방식 검토 | ·질적연구 ·문헌연구 |
| | 5 장효안(2017) |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 강조 | ·사례연구 ·인터뷰조사 |
| 학위논문 | 6 이동수(2010) |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와 올바른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진흥방안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

| | | | | |
|--|---|-----------|--|------------------------|
| | 7 | 김성연(2017) | ·문화예술분야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출을 돕는 방안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인터뷰 |
| | 8 | 나윤아(2018)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운영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 지속적 성장 방안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인터뷰 |

(4) 사회적경제조직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위기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도입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으며(배채운, 2012: 42),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생존과 존립의 또 다른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배채운(2012)은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 가능한 문화예술공동체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구보·동다예술·이해준(2017)은 무용, 연극, 국악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능 중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보이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을 위해 조직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고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수현(2018)의 연구도 있다.

<표 2-19> 예술인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선행 연구

| 연번 | 연구자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 보고서 | 1 연수현(2018)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문헌연구 ·설문조사 ·현장조사 ·심층면접 ·전문가회의 |

| | | | | |
|-------------|---|----------------------------|--|------------------------|
| 학 술 지 | 2 | 배채윤(2012) |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공동체의 활성화 조건·제반환경 고찰, 발전방안 제시 | ·사례연구 |
| | 3 | 장구보·동다예 술·이해준 (2017) | ·예술인들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일 자리 창출 가능성, 방안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인터뷰 |

4) 함의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예술인을 위한 복지 체계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에 관한 연구들이 시대 상황과 흐름에 맞추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전 연구들은 ‘예술인 복지 제도’, 「예술인 복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조사, 시사점 도출을 위한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또한 2008년 즈음에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 연구들은 주제의 범위가 좁고 구체적인 경향이 나타났는데, 주로 「예술인 복지법」의 한계점 혹은 개정,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 복지 혜택 대상자에 따른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의 개선방안 등이다. 보고서인 경우에는 학술지나 학위논문보다는 주제의 범위가 포괄적인 연구들이 많았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던 예술인 단체들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예술인들이 주도적이고 자생적인 공동체가 많아지고 있어 예술인 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도 살펴보았다. 이론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격과 형성과정이 다르므로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구에 비해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의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는 예술인들의 불안정하고 단속적인 고용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근무환경 개선 또는 처우 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보다

일자리 창출, 경제적 보상의 향상 연구에 집중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예술인의 이해 대변을 위한 ‘예술인 노동조합’의 심층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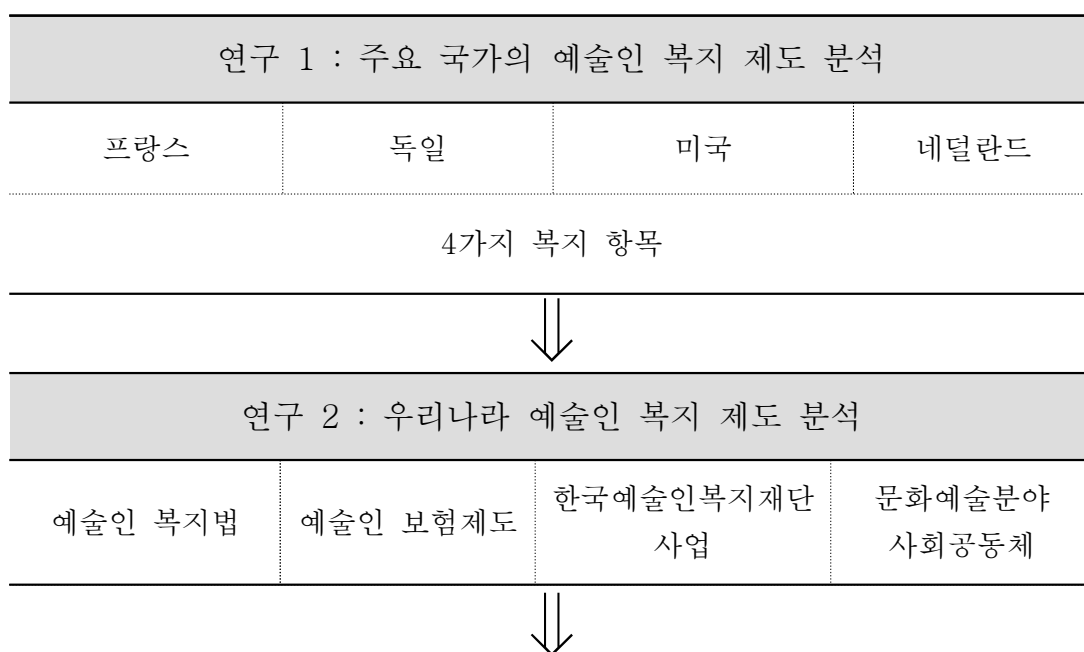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연구의 주제가 구체적이고 범위가 축소된 것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에 대해 연구한다. 총 4가지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의 내용이 아닌 예술인간의 협업과 수혜자로서 예술인의 역할을 함께 제안하게 된다. 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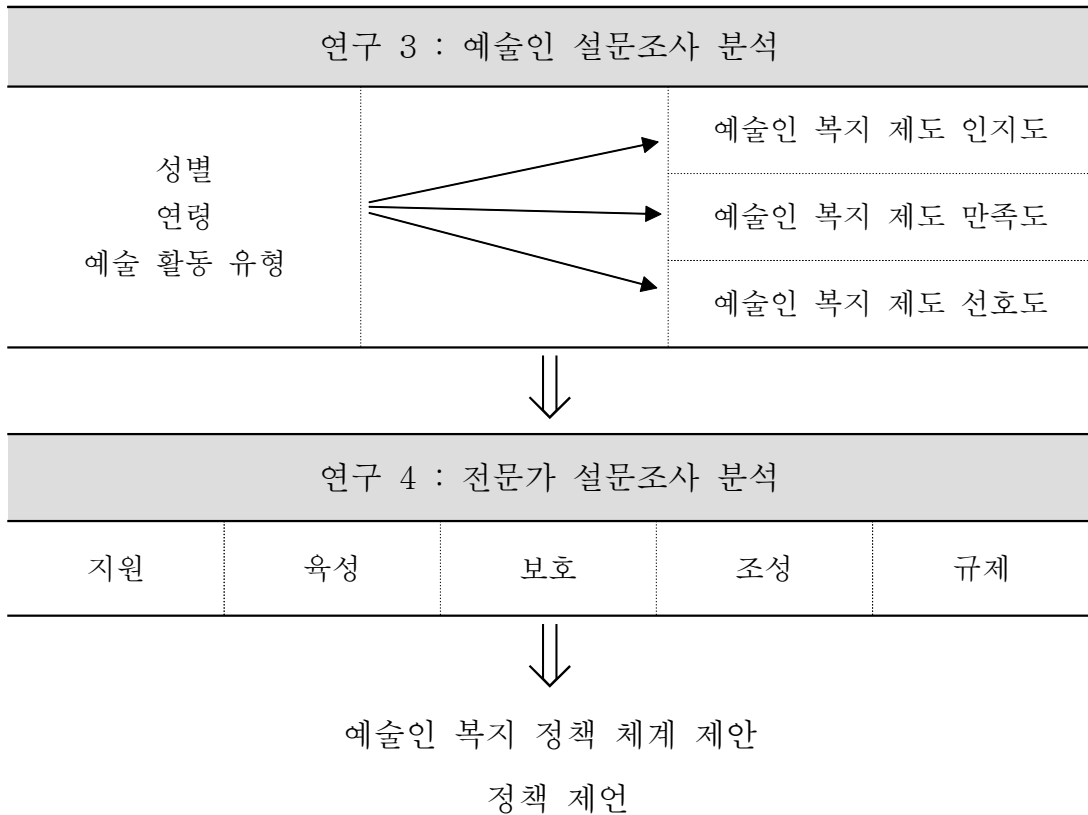
Ⅲ. 연구의 설계 및 분석의 틀

1. 연구 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총 4가지의 연구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의 예술인 복지 제도를 4가지 복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를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보험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문화예술분야 사회공동체 유형의 틀로 분석한다. 세 번째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를 분석한다. 더불어 성별, 연령, 예술 활동 분야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네 번째는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을 지표체계로 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 및 정책 제언을 한다.

<표 3-1>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과 정책 제언 연구 모형





2. 연구 방법 및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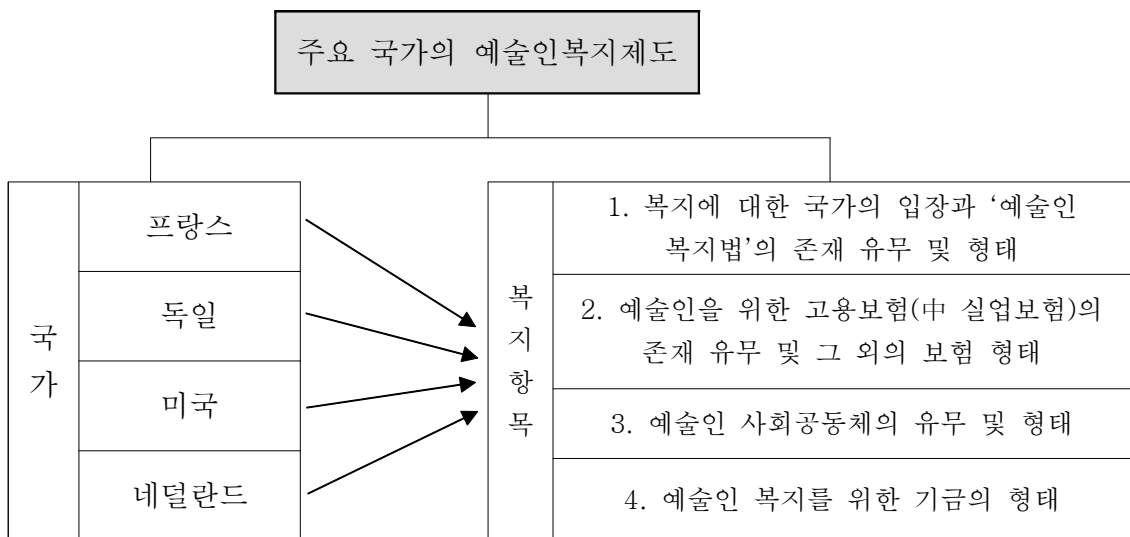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총 4개의 연구로 진행이 되며, 각 연구의 방법과 분석의 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분석의 틀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 연구는 상대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비교한다. 분석에 사용할 복지 항목으로는 첫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입장과 ‘예술인 복지법’의 존재 유무 및 형태, 둘째,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중 실업보험의 존재 유무 및 그 외의 보험 형태, 셋째,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유무 및 형태, 넷째,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금의 형태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2>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 제도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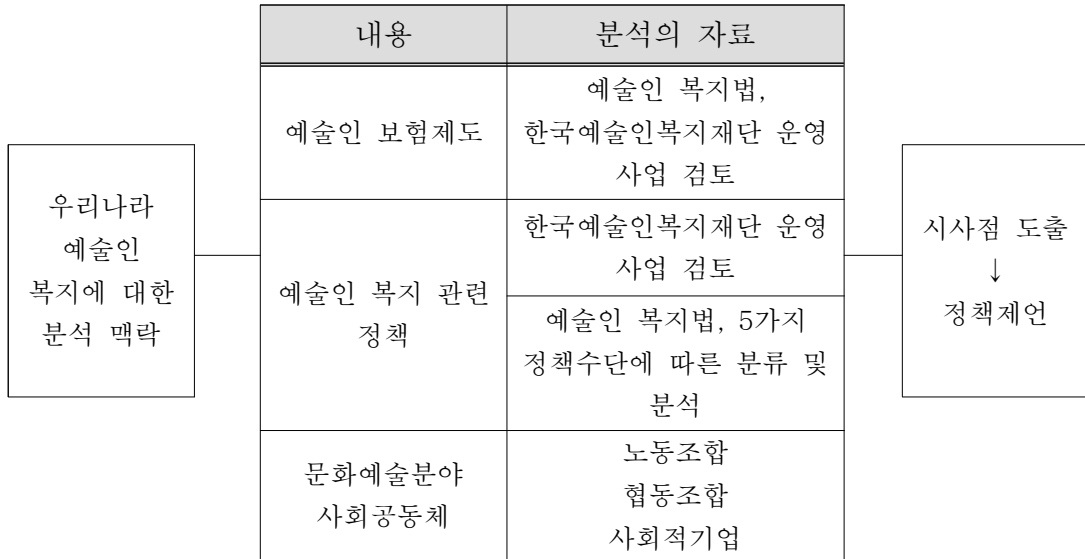


2)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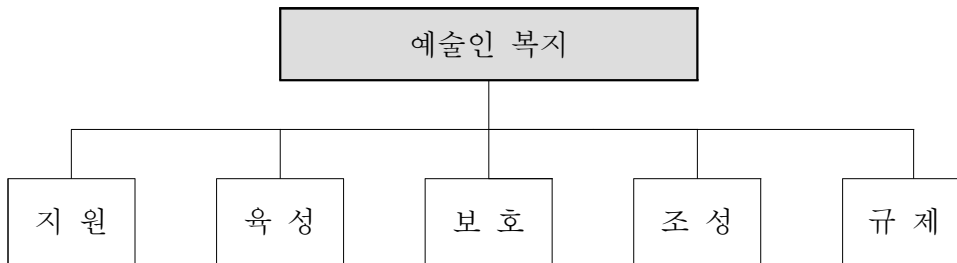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맥락을 3가지 내용에 의해 분석을 한다. 분석에 앞서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 이후 예술인을 위한 보험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 문화예술분야의 사회공동체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각각의 분석의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보험제도는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의 내용으로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예술인 복지법」과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지원, 육성, 보호, 조성, 규제’의 5가지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을 분석의 틀로 하여 분류하고 분석한다. 셋째, 문화예술분야 사회공동체로 문화예술인을 중

심으로 한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결성 가능성과 사례를 알아본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 분석의 틀



<표 3-4>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분석의 틀



3) 설문조사 분석의 틀

(1) 예술인 설문조사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예술인 복지’의 위치를 알아보고,

그 분석결과를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 및 정책 제언에 반영한다.

설문조사는 예술인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외 타 지역’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예술 활동 분야는 「문예진흥법」에서 제시한 총 13개의 분야를 연구자가 임의로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 ‘문학, 미술·공예·사진, 만화, 건축, 음악·대중음악·국악, 무용, 연극·영화·방송’의 총 7개의 분야로 축소하였다. 활동 유형은 「예술인 복지법」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충청도(충청북도·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도(경상북도·경상남도), 전라도(전라북도·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총 6개 지역으로 정하였다. 설문조사에 제시한 항목들을 분석의 틀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예술인 설문조사 분석의 틀

설문대상 : 예술인
 예상 설문부수 : 약 200부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외 타지역
 내용 : 예술인 복지 제도



| 구분 | 내용 | | 비고 |
|---|--|--------------------------|------|
| 최근 일 년간 느낀 걱정거리 | 일자리, 자녀교육, 건강, 주거비, 노후생활, 부채상환, 부모부양, 자녀보육(양육), 예술 활동의 어려움 | 실태분석 | 빈도분석 |
| 예술인 복지 제도 인지도 | 예술인 복지법 인지도 | 실태분석 | 빈도분석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지도 | |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인지도, 참여여부 | 실태분석 정책제언 | |
| | 노동조합, 협동조합 인지도, 가업유무 | | |
| 우리나라 4대 보험 인지도, 가입여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 실태분석 정책제언 | 기술통계분석 T 검정 일원분산분석 | |

| | | | |
|------------------|---|--------------|--------------------------|
| 예술인 복지 제도 만족도 | 전반적인 예술인복지 수준 만족도 | 실태분석 정책제언 | 기술통계분석 T 검정 일원분산분석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 |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의 적절성 | | |
| |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 | | |
| 예술인 복지 제도 선호도 | 4대 보험료 지원제도, 예술인 산재보험, 국민기초보장제도(생계·주거), 질병·상해시 의료비 지원(의료급여포함), 질병·상해시 생활비 보상 지원제도,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주거 안정 지원제도(주택자금대출, 임대주택, 주거관련 서비스 등), 일반 생활자금 대출서비스, 직업상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제도, 예술 활동 중단시 실업급여 지원제도,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 | 정책제언 | 기술통계분석 T 검정 일원분산분석 |

(2) 전문가 설문조사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는 예술가와 더불어 전문가가 생각하는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정책제언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 조사는 AHP 방법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되었던 5가지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을 설문 지표 체계로 정하였다. 1단계 분석은 ‘5가지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2단계로 각 정책수단별 ‘4가지의 주요 정책내용’을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 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6>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의

설문대상 : 전문가
 예상 설문부수 : 25~30부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외 타지역
 내용 :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 정책수단 | | 주요 정책내용 | 비고 |
|-----------|----|--|-----------|
| 1단계 분석 | | 2단계 분석 | |
| 예술인 복지 | 지원 | 창작지원금 지원 예술인 우대 조세감면 실업급여 지원 생계, 자립, 교육 등을 위한 대출, 육자 지원 | AHP 분석 |
| | 육성 |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예술경영인력 육성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 |
| | 보호 |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필요 예술인의 4대보험 의무 가입화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 | |
| | 조성 |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 |
| | 규제 |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IV. 예술인 복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실증분석

1.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구축이 잘 되어졌다고 평가받는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할 복지 항목으로는 첫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입장과 ‘예술인 복지법’의 존재 유무 및 형태, 둘째,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중 실업보험의 존재 유무 및 그 외의 보험 형태, 셋째,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유무 및 형태, 넷째,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금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 한다.

1)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제도

(1)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입장과 ‘예술인 복지법’의 존재 유무 및 형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무 또는 임의가입 형태의 제도(Régime)가 섞인 모자이크 구조로 되어있으며, 업종, 직종, 직업에 따라 상이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그 대상에 따라서 주로 피고용자와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 공무원, 광부, 선원 및 기타 철도, 전기, 가스 등의 국영기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제도(régime spéciaux)’, 농업을 제외한 자유업 종사자들 및 자영상공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자영상공인제도(régime des non-salaries non-agricoles)’, 농업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농업종사자제도(régime agricoles)’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의 전반적인 운영규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규석,

2007).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는 예술인을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개 장르 예술작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이규석 외, 2007).

프랑스는 1975년 10월, 예술저작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통합하고 간소화시키며 예술인의 창조적 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는 예술인의 종사 지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 대상의 사회보험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고용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첫째,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법률상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임금근로자의 일반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조세법상으로는 비영리 개인 사업자의 지위로서 예술창작활동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사회보험제도 중 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족수당의 가입은 가능하나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들의 사회보장행정은 정부공인 비영리단체인 ‘작가사회보장협회(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 la Sécurité des Auteurs, AGESSA)’와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 MDA)’에서 담당한다. 이 단체들은 예술가, 작가들의 사회보장 가입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사회보장기금지사로 전달하는 사회보험가입 업무, 가입된 예술인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납부금과 기여금을 징수, 사회보험제도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을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료는 저작권료 지불 시 기업에서 자동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작가사회보장협회’의 가입대상은 주로 문학, 음악 관련 예술인으로 작가분과, 음악분과, 영화방송분과, 사진분과의 4개 분과 예술인들이 포함된다. ‘예술인의 집’은 저작권료를 받는 시각 및 조형 예술인들을 위한 단체로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권익대변 조직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둘째, 고용된 예술인으로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두 가지 유형으

로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된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예술인들은 일반제도에 자동적으로 편입된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예술인들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 등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의 일반제도의 기준을 따르게 되지만, 실업보험의 경우 별도의 조건을 따르게 된다. 단속적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예술인들의 실업보험제도는 유연하고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다.

계약을 통해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행정은 ‘사회보장·국민연금 연맹(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cotisation de Securite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에서 담당해서 관리되어진다.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재원은 노사양자간 분담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획사, 갤러리, 음반회사 등 예술가의 예술 활동 및 작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주체로서 목록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프랑스는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세계 및 사회보장 차원에서 다른 직업인들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하며, 예술인들을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닌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사회 내에서 예술인들에게 존재감과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사회 내 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中 실업보험)의 존재 유무 및 그 외 보험 형태

프랑스 실업보험의 시행대상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정들은 「노동법(Code du Travail)」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액수에 관한 사항은 노사의 단체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특징이다(김휘정, 2011). 즉,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기여를 통해 운영되는 보험체계로 실업보험 운영의 모든 사항은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보험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도 존재하며, 보험 체계의 운영 및 손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공연·영상 분야 비정규직 예술인의 실업 시 지원제도로 예술인을 위

한 실업보험인 ‘앵떼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⁵⁵⁾ 을 운영하고 있다. 공연예술인력 중 유한기간 계약자를 지칭하는 ‘앵떼르미땅(intermittent)’ 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프랑스 실업보험 체계 속에 포함되지만 공연분야의 노동 특성을 반영한다. 보험가입, 수급조건 등에서 일반 원칙보다 완화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법」 「제7편(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es professions et activités) 공연예술인에 대한 규정(Article L7121-3)’⁵⁶⁾ 에서는 ‘근로계약 추정’ 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예술인(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무대장치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이 추정은 보수 지급 방식이나 액수 및 계약 당사자들이 부여한 계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노동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 분야 노동 추정원칙으로 예술 활동 결과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민법상의 용역 계약을 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예술인의 활동을 노동 계약으로 추정하고 실업보험에 적용시키고 있다. 예술 활동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는 독립 노동자(프리랜서)인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부칙 8장과 10장에 규정된 예술인이 ‘기간을 정한 계약(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⁵⁷⁾ 을 통한 경우에 해당된다.⁵⁸⁾ 부칙 8장에서는 프랑스 직종 분류체계 중 일반 노동자와 기술직(Ouvriers et techniciens)을 대상으로 하며 8장에 규정된 앵떼르미땅 실업보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고용주의 활동 영역 조건이다. 시청각물 제작(Production audiovisuelle), 영화 제작(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음향 분야(Edition phonographique), 제작 및 행사 진행을 위한 기술지원(Prestations

55) ‘앵떼르미땅’은 불규칙적, 단속적이라는 뜻으로, 비정규직을 의미한다.

56) “자연인이 보수를 대가로 공연예술인의 협력을 확보하는 모든 계약은 공연예술인이 상업영역에 속하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으로 추정된다.”

57) 프랑스는 임금노동자의 형태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CDI)을 맺어 노동을 하는 사람과 기간을 정한 노동 계약(CDD)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두 형태 중 고용안정성 측면으로 보면 기간을 정한 계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여 이 계약의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앵떼르미땅의 주요 활동 분야는 프로젝트 방식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58) 실업보험관련 노사협정(2014.5.14.)은 총 11장의 부칙을 가지고 있으며 부칙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기자, 어부, 선원, 조종사 등 다양하다.

techniques au service de la création et de l'évènement), 라디오방송(Radiodiffusion), 사설 공연 및 보조혜택을 받는 공연(Spectacle vivant privé et spectacle vivant subventionné), 텔레비전방송(Télédiffusion),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Production de films d'animation), 총 9개의 영역이 해당된다. 두 번째 조건은 노동자의 직종으로 9개의 목록에 명시된 활동을 해야 한다. 부칙 1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앵페르미땅 실업보험은 그들의 고용주가 민간인지, 공공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직종에 관계없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형태에 관계없는 법인일 때도 적용된다.

프랑스의 공연예술부문에서 활동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조사기관, 조사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전체의 2/3 에서 3/4 수준으로 그 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강익희, 2011). 하지만 이들의 근로형태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를 하고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근로를 쉬는 단속적 근로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수급자격, 수급기한, 수급금액 등에 있어 일반 실업보험 체계와 다른 특별한 실업보험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실업보험 수급을 위해서는 304일 동안 최소한 507시간 이상 기간을 정한 고용 계약을 통해 근로를 하고 실업보험에 가입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업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365일 동안 607시간 가입되어있어야 한다.⁵⁹⁾

수급기간은 243일 혹은 8개월로 퇴직시기(퇴직연금 개시시기)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60.5세에 급여를 받는 상태여야 한다. 둘째, 부칙 8장 혹은 10장 규정에 맞는 노동시간이 총 9,000 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중 최근 3년간 1,521 시간을 노동하였거나 임금 노동자로서 다른 실업보험 체계에 최소 15년간 가입되었어야 한다. 셋째, 노령 연금에 100분기 납입 인정이 필요하다.

앵페르미땅 실업보험 급여액은 해당자가 받은 임금, 일한 시간, 정해진 계수 등 3가지를 종합하여 결정하며 급여 수급자가 퇴직하여 100%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앵페르미땅 급여 수급은 중단된다. 앵페르미땅은 연금 및 건강보험의 형태

59) 부칙 8장에 규정된 예술인과 부칙 10장에 규정된 예술인들은 다른 규칙을 적용받는다. 위의 내용은 부칙8장에 규정된 예술인의 경우이며, 부칙 10장에 규정된 예술인들은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19일 동안 507시간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재가입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365일 동안 579시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로 전달되는데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며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상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⁶⁰⁾

앵페르미땅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노동계약을 통한 임금 노동 혹은 비임금 노동을 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유예기간(jour de décalage)’ 이라고 불리며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앵페르미땅은 실업보험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수급자격과 기간에 대한 새로운 협약이 2003년에 이루어져 수급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수급자격도 강화되었다(강익희, 2011).

프랑스의 앵페르미땅들은 실업보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교육훈련, 유급휴가, 재해보장보험 등 수급자의 형편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2009년 1월 1일 새로운 노사협정에서 공연예술, 시청각예술(영화, 영상제작, 방송 및 라디오) 음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관리자, 비관리자, 예술인, 기술직 모두에게 ‘재해보장보험(prévoyance)’ 과 건강 비용에 대한 보험체계를 규정하였다. 보험 내용으로는 사망재해보상, 고아자녀지원보상, 자녀교육보상, 장애보상 등이며 내용과 보장한도는 옵션으로 보험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3)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유무 및 형태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시민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공연 예술인들이 본인을 노동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첫 번째 공연예술분야 노동조합은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전국노조연합인 ‘FNSAC’⁶¹⁾ 이다. 1871년 파리 코뮌 당시 음악가들이 파리 오페라에서 연주자들에게 가해진 불합리한 의무사항에 대해 반발하면서 공연예술가와 음악가를 포괄하는 조합을 결성한 것이 기원이 되었다. 이후 기존에 설립되었던 노동조합을 CGT(노동자총연맹,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산하에 가입시켰다. 계약을 통해 임금을 받는 공연예술인들의 노동조합 연맹으로, 정책적·정치적 활동

60) 박조원 외 (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61) FNSAC CGT Spectacle, Fede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u Spectacle de l’Audio visuel et de l’Action Culturelle - Confederation du travail.

을 하는 기구이다. 현재는 직종별 예술계 노동조합들의 연합(연맹)으로 총 9개의 예술인 노동조합, 약 8,00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계약 관계를 통해 피고용 형태를 띤 예술인들의 단체들로 음악인노조, 영화기술자노조, 공연예술배우노조 등이 가입되어 있다.

이 노조연합은 국가상공업협회, 사용자단체, 공연예술고용자연합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공연예술인의 실업급여 분담요율 및 급여금액 등을 협상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예술인 관련 복지 제도 정책수립은 정부 기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르별 예술인들의 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노조연합은 예술인들 권리 주장의 창구를 조직화하고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아비뇽 축제(Le Festival d’Avignon) 취소 사태’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극제 중 하나로, 이와 더불어 액상 프로방스 오페라 페스티벌(Le Festival de Aix-en-Provence Opera), 몽펠리에 라디오 프랑스 페스티벌(Le Festival de Radio France Montpellier) 등이 취소되었으며, 오페라 바스티유, 오페라 가르디에 등의 예술극장들은 공연을 취소했다. 이와 같은 단체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실업보험제도(앵페르미땅)를 둘러싼 노사협정에 반발, 문화예술분문 종사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기 때문이다.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지역 상권은 30%의 수익 감소가 이루어지는 등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⁶²⁾

최근에는 2019년 9월에 개정된 노동관련법⁶³⁾에 대해 공연예술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근로자들과 연대하여 ‘유류세 인상 및 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운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조합원이 기업가인 기업협동조합,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자인 이용자 협동조

62) ‘기획_예술인복지 해외사례_2(프랑스) 프랑스 앵페르미땅 제도 : 공연예술비정규직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웹진아르코 예술의 숲 145호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3) 프랑스는 2019년 9월 노동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정부가 전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고 실제 지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조정함으로써 채워나가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예술인들은 정부와 고용주 2개의 협상 대상자와 논의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합, 예금자나 차용자 같은 고객인 신용협동조합, 유일하게 임금노동자인 협동참여조합 또는 생산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다.

위의 부류 중 기업협동조합에서는 수공업협동조합과 상업협동조합에서 문화예술협동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용자협동조합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로 문화예술협동조합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수가 제한적이다. 신용협동조합에는 문화예술협동조합은 없다. 이와는 달리 협동참여조합은 생산협동조합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에서 공익협동조합에서 문화예술협동조합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생산협동조합은 곧 노동자협동조합으로 특히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용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협동조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콜론오케스트라(Orchestre Colonne)’, ‘솔레이유 극단(Théâtre du Soleil)’, ‘씨떼 크레아씨옹(Cité Création)’ 등이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콜론오케스트라’는 1873년 설립자 에두아르 콜론(Édouard Colonne)의 이름을 따서 만든 관현악단으로 1983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으며 82명의 음악가가 임금노동자이자 조합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음악가들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직원으로서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경영에 참여한다.

1964년에 극단으로서는 처음으로 협동조합으로 설립한 ‘솔레이유 극단’은 75명의 임금노동자이자 조합원이 일하고 있으며, 공동창작과 임금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씨떼 크레아씨옹’은 1978년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설립된 전문 벽화창작 노동자협동조합이다. 전문성과 예술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벽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본금 없이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법률에 따라 매년 수익에서 적립되어 누적된 금액과 조합원 출자금을 합쳐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들은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창작과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예술인의 고용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은 샤를 지드(Charles Gide)의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SS)’ 개념 속에서 발달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이익의 추구보다는 인간을 우선시하면서 경제 활동과 사회적 효용을 양립시키려는 기업”을 포함하는 분야로 정의하였으며,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비영리단체, 재단이 포함된다(노시훈, 2015). 공익협동조합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시훈(2015)은 공익협동조합이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과 구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주체들(임금노동자, 생산자, 수혜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공공단체, 기업, 조합, 개인 등)이 동일한 사업에 함께 참여하며, 둘째,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한 지역의 공동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넷째, 공익과 사회적 효용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을 제외하고 모두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특징을 포함한 문화예술분야 공연예술 관련 공익협동조합의 사례로는 ‘아크와바카 극단(Akwaba-Ka-Théâtre)’, ‘집단 샵(Collectif CHAP)’, ‘크리스탈 프로덕션(Cristal Production)’, ‘죄드빌랭(Jeux de vilains)’, ‘필우베르사(Pile ou Versa)’, ‘메종드라당스(Maison de la Danse)’ 등이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공익협동조합은 ‘예술의 공공성’의 특징을 포함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공연예술의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 프랑스 문화예술분야 중 공연예술 관련 공익협동조합

| 협동조합명 | 지방(도) | 설립연도 (전환연도) | 활동 |
|---------------------------------|-------------------------------|----------------|--|
| 아크와바카 극단 (Akwaba-Ka-Théâtre) | 프로방스 알프코트 다쥐르 (보물뤼즈) | 2001 (2005) | 공연 배급·판매, 창작지원(주거, 관리), 비전문가 실습 지원(작업실, 리허설) |
| 집단 샵 (Collectif CHAP) | 일드 프랑스 (발드마른) | 2010 (2012) | 공연 창작·배급, 연극 교육 |

| | | | |
|-----------------------------------|-------------------------------|----------------|--|
| 크리스탈 프로덕션 (Cristal Production) | 푸아투 샤랑트 (샤랑트 마리팀) | 1992 (2012) | 공연 지원 (창작, 제작, 교육, 보급) |
| 죄드빌랭 (Jeux de vilains) | 상트르 (루아레) | 2005 (2013) | 공연 창작, 문화예술교육, 예술가 주거 제공, 축제 개최 및 프로그램 편성 |
| 필우베르사 (Pile ou Versa) | 프로방스 알프코트 다쥐르 (오트알프) | 1996 (2009) | 무대·거리 연극 집단 창작·배급, 농촌 주민의 공연예술 접근 촉진, 순회연극 축제 개최 |
| 메종드라당스 (Maison de la Danse) | 론알프 (론) | 1978 (2013) | 무용 창작·교육·활성화 |

※ 출처: 노시훈 (2015). 프랑스의 문화예술협동조합 연구, 재구성

프랑스의 협동조합 중 고용협동조합(Cooperative d'Activité et d'Emploi, CAE)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생산협동조합과 공익협동조합 모두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창업계획을 가진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협동조합의 노동자 지위를 갖고, 시장에서 시도하도록 도우며 회계 및 행정,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에 머무는 동안 예비창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협동조합의 명의로 청구되고,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임금의 형태로 지급이 된다. 이 협동조합은 수입의 10%를 떼어 공동운영 경비로 충당하며, 유럽연합, 지방정부의 각종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다.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4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아르텡헤엘(Artenrél)', 2007년 설립된 '클라라(Clara)', 오를레앙의 '아르테팩트(Artefacts)' 등이 있다.

(4)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금의 형태

프랑스는 실업보험 수급이 종료된 공연 분야 앵데르미땅에 대해서는 '전문화 연대기금(le Fonds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 을 두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앵페르미땅 실업보험이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기여를 통해 운영되는 것에 반해, 전문화연대기금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다. 전문화연대기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 한 측면은 ‘급여적 지원’으로 전문화연대급여(allocation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 APS)와 권리종료후급여(allocation de fin de droites, AFD)를 지급한다. 실업급여가 종료되고 재가입이 불가능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지원센터(Pôle emploi)’에 위탁하여 지급한다.

다른 측면은 ‘사회적 혹은 직업적 지원’으로 ‘오디앙스(Audiens)’가 담당한다. 오디앙스는 프랑스 문화예술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그룹으로 문화예술분야 종사 노동자들과 관련 사용자들의 노사합의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구이다. 이들의 사회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의 대행을 담당하며, 앵페르미땅 퇴직보충보험과 질병·장애·사망보험을 운영한다.

수급자격 요건은 부칙 8장과 10장의 실업급여 조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추가로 수행한 노동시간의 인정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계약 밖에서 3개월 이상 혹은 91일 이상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은 질병 기간, 법령에 사전에 규정된 질병으로 사회보험에 의해 100% 환급된 질병 기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일당 5시간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전문화연대급여의 수급기간은 실업보험 급여기간인 243일과 동일하다. 전문화연대급여의 총 급여액과 동일하지만, 순 급여액은 총 급여액에서 사회보장기여 중 일반사회기여와 사회부채기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2) 독일의 예술인 복지 제도

(1)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입장과 ‘예술인 복지법’의 존재 유무 및 형태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은 사회부조체계, 사회부양체계, 사회보험체계 등 3분류 체계로 되어있다. 이는 임금과 보험료 지향요소, 임금보전, 사회적 평등 및 자율 경영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 나이, 사고, 간병, 실업, 재해 등의 지원이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다(이규석, 2007).

독일은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5개 직업부문, 15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5개의 직업부문은 ① 디자인과 조형예술, ② 음악과 연기예술, ③ 문학 및 언론출판, ④ 건축, ⑤ 도서관·박물관 이다. 15개의 세부 직업군은 아래의 표와 같다. 독일이 인정하는 예술인은 통상적인 예술인 외에도 언론출판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박조원 외, 2013).

<표 4-2> 독일의 문화예술 관련 직업분류

| 직업부문 | 세부 직업군 |
|-----------|---|
| 디자인과 조형예술 | 디자이너, 조형예술가(응용미술), 조형예술가(순수미술), 사진작가, 카메라맨, 공간 및 시각광고 구성가 |
| 음악과 연기예술 | 음악가, 음악 전문분야 교사, 연기예술가, 가수, 곡예사, 예술적 보조직업, 무대기술, 영상기술 음향기술 부문 예술가와 관련 직업들 |
| 문학, 언론출판 | 작가, 저널리스트, 출판인, 통역가, 번역가 |
| 건축 | 건축가, 공간 플래너, 기념물관리자 |
| 도서관·박물관 | 도서관사서, 문서보관소 기록계, 박물관 학예사 |

※ 출처: 이규석 외(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 재구성

독일은 1975년 문화예술 관련 직업들의 불안정한 경제적·사회적 실태가 연방 의회에 보고된 것이 계기가 되어, 5년간의 입법 과정을 거쳐 1981년에 예술인을 위한 기본적 사회보장을 위한 독립 단행 법률인 「자영 예술인과 언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을 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적재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사회보험제도(Kunstlersozialversicherung: KS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빌헬름스하펜에 위치한 노동복지부 산하 ‘예술인사회보험금고(KSK)’에서 관리한다.

독일은 예술인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를 “문화예술 활동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예술인 및 언론출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술인’은 음악, 공연예술 및 미술을 창작 및 영위하거나, 또는 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하며, 여가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다. ‘언론출판인’은 작가, 언론인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출판업에 종사하거나 언론출판학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즉,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인들이 가입대상이며, 이들 외에 종사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예술인들은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킨다.

예술인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자영업형태의 예술과 출판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2007년 기준 3,900유로 이상)하고 둘째, 해당 예술 활동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업활동이어야 한다. 셋째, 활동이 일시적이지 않아야 한다(강익희, 2011). 이러한 가입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며,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호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업보험, 가족수당, 교육보험, 산재보험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신진예술인들의 경우 예술계 입문 후 3년 동안은 예술 활동을 통한 연간 총 소득규모가 3,900유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술인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사회보험제도의 운영재원은 노사정 3자간 분담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는 예술인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고용자가 30%, 연방정부 보조금 20%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자의 개념규정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목록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7년 「자영 예술인과 언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예술인사회보장 기금의 적용대상 확대와 더불어 수혜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8년 9월 몇몇 주정부에서 「자영 예술인과 언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을 철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정당과 예술인 단체의 반대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였다(강익희, 2011).

독일의 「자영 예술인과 언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로 그 내용이 사회보험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 이를 통한 복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과는 성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中 실업보험)의 존재 유무 및 그 외 보험 형태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직군마다 직업단체를 결성하고 이들 단체가 고유한 직역별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수공업자, 농업종사자, 자영업예술인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사회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직군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특수직역의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예술인의 경우 「자영업 예술인과 언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보호를 받게 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각각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률은 사회보험상의 위험에 노출된 예술인 그룹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안주엽·황준욱, 2014: 4-5).

독일 정부는 「사회법Ⅲ」 제364조에 의거하여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국’에 의해 실업자에 대한 법적지원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실업수당Ⅰ’, ‘실업수당Ⅱ’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지원대상자가 다르다.

‘실업수당Ⅰ’은 고정수입이 있으나, 3개월 내에 실직이 예상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가 해당되며 일반 임금근로자들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실업수당Ⅱ’는 전공분야를 졸업하여 활동할 능력은 있으나, 과거와 현재에 직장이 없는 지원대상자, 전공분야에서 경력은 인정되나 수입이 없는 경우, 불규칙한 수입 및 저소득 프리랜서의 경우가 해당된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이에 속하게 되면서 일부 예술인도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프로젝트의 종료와 시작 사이에 소득이 없는 중간기간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독일 정부는 이 기간을 실직으로 인정하고 ‘실업수당Ⅱ’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한 것이다(박아연, 2016). 그러나 실업보험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실업보험 ‘가입자’이므로 자영업자유 예술인의 경우 실업보험의 보장에서 제외되는 한계점이 있다.

독일의 실업보험은 피고용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고용자에게는 실업급여를 포함해 고용알선, 직업교육, 재교육 등을 제공하며, 고용자에게는 고용지원, 대체근무지원, 작업단축지원금, 건설업고용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독일은 예술인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공적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보장하며, 지급하는 연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자영 예술인들은 예술인사회보험에 신고하는 소득이 일반 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해 납부하는 보험료의 수준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001년 ‘리스트어 연금(Riester-Forderung) 제도’를 도입하였다.⁶⁴⁾ 리스트어 연금은 노후대책보험으로 연금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보험이다. 기본수당(Grundzulage)과 자녀수당(Kinderzulage)이 있으며 모두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주어진다. 리스트어 연금은 저소득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 자영 예술가와 출판 언론인은 이를 통해 추가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

리스트어 연금 외에도 ‘뤼롭(Rurup) 연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충분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뤼롭 연금은 2005년 1월 1일 「노인소득법」에 의거 실시되었으며 일차적으로는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노후보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영 예술가와 출판 언론인들에게 리스트어 연금과 더불어 국가에서 장려하는 노후보장 연금을 들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영 예술가와 출판 언론인들은 고정된 약정액이 없는 뤼롭 연금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 연금은 자영 예술가와 출판 언론인들의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각각의 소득 상황에 맞게 자유로이 액수를 정할 수 있다. 그 해 12월에 실질적 수입이 얼마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 특별 납부도 연말에 가능하다(박조원, 2013).

독일은 예술인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연금, 건강보험의 보장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리스트어 연금과 뤼롭 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의 예술인 복지가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4) 박조원 외 (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미국의 예술인 복지 제도

(1)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입장과 ‘예술인 복지법’의 존재 유무 및 형태

미국은 사회복지와 관련해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미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달 과정의 결과물로 OECD 국가 중 부유한 국가군에 속하나 사회복지지출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이외의 통로를 통한 사적복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⁶⁵⁾

1930년대 대공황기의 뉴딜 정책을 시작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경제 사정 악화로 연방 정부의 복지 권한을 주정부에 이양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사회보장체계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었다. 이로써 미국의 복지정책은 자유주의 기조 및 시장 원리에 충실한 편으로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예술인 복지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부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은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이 관장하며,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험, 연금 등은 예술인들과 고용주들 사이의 사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문화, 혹은 예술진흥 정책에 대한 시스템이 포괄적이며, 문화예술정책에서도 자유주의 국가의 정책 기조인 최소한도의 정부 개입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권력의 분할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⁶⁶⁾

미국은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예술인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다만 사적 지원의 형태인 개별 노동조합 등에서 가입기준 및 조건으로 예술인을 분류해 볼 수 있다. 2007년 OECD에서 제공한 미국 문화예술 산업 분류표에서 유추하여 보면 출판, 영화 및 비디오, 음반, 방송, 건축, 응용 디자인, 광고, 공연예술, 전시예술,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가의 복지제도-미국편」, 경기: 나남 의 내용을 정리.

66) 박조원 외 (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中 실업보험)의 존재 유무 및 그 외 보험 형태

미국의 예술인들을 위한 보험과 연금은 고용주와의 사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 체결은 길드나 조합에서 대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합에서 직접 기금을 운영하여 의료 및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예술인들은 길드 및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으로써 건강보험 및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종별 특징에 따라 각종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음악인총동맹(AFMA)’에서는 악기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개인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비용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 활동을 하며 예술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건강보험 및 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유무 및 형태

미국의 각 분야별 직군의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들을 만들어 제작사들과 협력·경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100여 년이 넘는 미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이었던 길드(Guild) 형태로 산별노동조합을 구성하였다(박조원, 2013). 이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이었다.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공적 지원은 미국연방예술기금에서 관장하지만, 보험 및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와 고용주 사이의 사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공연예술산업 인력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은 ‘산별노동조합’ 형태의 단체로 활동되어지고 있다.

주요 공연예술관련 노동조합으로는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AFL-CIO)’ 산하에 ‘미국배우 및 예술가연합(Associated Actors and Artistes of America, 4As)’ 이 있다. 이 연합에는 ‘연극배우조합(Actors' Equity Association, AEA),

미국음악예술인조합(The American Guild of Musical Artists, AGMA), 미국쇼출연자조합(American Guild of Variety Artists, AGVA), 미국 배우-TV 및 라디오 연기자 조합(Screen Actors Guild-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SAG-AFTRA), 이탈리아계 미국인 배우조합(The Guild of Italian American Actors, GIAA)를 포함한 5개의 자매조합으로 조직되었다. 이외에도 미국작가조합(Writers of America, WGA), 미국음악인총동맹(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 AFM), 연극작가조합(Dramatist Guild of America, DGA)' 등이 존재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왕성하던 1930년대에 설립된 '미국 배우-TV 및 라디오 연기자 조합(SAG-AFTRA)'은 미국 배우 조합(SAG)과 TV 및 라디오 연기자 조합(AFTRA)의 합병으로 구성되었으며, TV,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의 다양한 분야에 출연하는 실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SAG-AFTRA는 160,000여명 이상의 미디어 예술인들을 대표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안정과 고용 안정, 근로 조건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뉴욕, 보스톤, 시애틀 등 미국 내 25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1961년 제작사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배우조합-제작사 연금 및 보험제도(Screen Actors Guild-Producer Pension and Health Plans)'가 수립되어 건강보험과 연금 혜택을 주고 있다. 두 개의 단체 SAG와 AFTRA의 보험 계획 중 수입에 기초하여 하나의 자격을 갖추면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음악인총동맹(AFM)'은 미국과 캐나다 전문 뮤지션들의 노동조합으로 전문 음악인들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공정 계약 협상, 음반 저작권 보호, 건강보험과 연금 혜택, 입법 로비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전문 음악인들의 산업적 지위의 향상에 헌신하고 있다. AFM은 상호협동조합으로 시작하였으나 후에 노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AFM은 음악 서비스로 임금을 받는 음악인을 전문 음악인으로 간주하며, 북미를 넘어서 캐나다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AFM의 연금(AFM and Employers' Pension Fund)'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기금 중 하나이며, 매년 100만 달러 가량이 연금에 가입한 음악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직업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악기와 음악 장비에 의존하는 전문 음악인을 위한 악기 관련 전문 장비 보험을 제공하며, 공연 중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음악인 책임 보험에 의해 보호한다.

‘미국음악예술인조합(AGMA)⁶⁷⁾’은 1930년대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오페라, 콘서트, 무용분야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무용수, 안무가, 무대 기술자, 무대감독 등이 가입하고 있다. AGMA는 집단협상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급여수준 보장, 연습시간과 초과 활동시간에 대한 급여, 연습 등 활동시간 통제, 휴가 및 병가,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 고용주와의 갈등 해결, 법적 및 계약에 따른 권리 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합원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72개의 최상위급의 오페라단과 발레단 등 대규모 공연예술단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 단체의 공연예술 인력들이 뮤지컬이나 연극 활동을 통해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습 수당, 비급여 혜택 등의 이익을 누리기가 힘든 실정이다.

1913년에 설립되어 45,000여명의 연극배우와 무대 매니저가 조합원인 ‘연극배우조합(AEA)’이 운영되고 있다. 이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혜택을 마련해 준다. 첫째, 고용주와 근로협약을 하는데, 기본적인 급여, 작업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둘째, 조합원이 최소 급여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며, 일정한 작업규칙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표준 양식에 따라 고용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고용주들은 공연에 앞서 AEA에 일정한 금액(bond)을 예탁해야하는데 이 금액은 공연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연금 및 의료기금(Pension and Health Trust Funds)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여 의료보험(health plan)과 연금(pension plan)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장애나 실업의 상황에 처하는 조합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일곱째, 조합원이 별도의 오디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작가조합(WGA)’은 미국 내에서 영화, 방송, 뉴미디어 등에 종사하는 작가군을 대표하는 조합으로 주로 작가료 협상을 진행한다. 작가료는 이야기 구상, 초고, 대본 교정, 문체 수정 등에 관한 보수이며, 재방송료와 저작권 사용료도 포함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작가들이 창작한 장편영화, 텔레비전, 뉴미디어 프로그램들의 신용보증, 영화나 텔레비전, 뉴미디어 프로그램의 재방송료 지급 관련 모니터링, 수집, 분배 작업 등을 한다. 더불어 연중 세미나, 패널 토론, 특정 이벤

67) 미국음악예술인조합 홈페이지 <https://www.musicalartists.org/>

트 행사 등의 개최, 해외 협약, 홍보 등의 활동도 진행한다. ‘제작자-작가 길드 연금 및 건강 보험(Producer-Writer Guild Pension and Health Plans, PWGP)’ 를 운영하여 가입자에게 연금 및 시한부 질환급여를 지급한다.

(4)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금의 형태

미국은 직접적인 지원방식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뉴딜 정책 이전에는 뚜렷한 문화정책이 없었으나 1965년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를 창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 ‘미국연방예술기금(NEA), 국립인문학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등이 존재하며 주정부별로 문화예술 예산을 책정한다.⁶⁸⁾ 미국연방예술기금은 미국 문화의 진흥을 위한 공적 기금으로서, 미국 내 예술가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지원하고 미국인들의 예술적 창조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미국연방예술기금은 52개의 미국 행정부 독립기관 중 하나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비정치적인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정부의 문화정책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보다는 다른 부처의 관련 예산 기획 집행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예술진흥을 추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기금은 미국 내에서 예술 관련 기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예술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급을 한다. 이는 강력한 중복 투자 효과를 가져와 지역 사회의 비영리 예술단체에 부가적인 투자 역할을 하게한다. 기금의 40% 가량을 56개의 주와 사법상 예술기관, 6개의 지역 예술기관에게 이관되는데 이는 전국의 수천 개의 커뮤니티에서의 예술 프로젝트를 돕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영향을 확대하여, 국가적 리더십을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의 직접 기금 외에도 연방정부, 주정부, 공공 및 사립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문학 펠로십, 평생 영예 수상, 국립 예술 훈장 등 매년 미국 예술에 기여한 사람들을 뽑아 상금과

68) 본 연구는 미국연방예술기금(NEA)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활동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4) 네덜란드의 예술인 복지 제도

(1)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입장과 ‘예술인 복지법’의 존재 유무 및 형태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체제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과 공공부조의 형태로, 급여의 수급조건이 관대하고 높은 수준으로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혼재된 형태이다. 과다한 복지지출로 인해 2000년대 이후에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형태로 변모하여 복지지출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1999년 예술인들의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예술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가 노동과 수입제정법(Artists’s Work and Income Scheme Act)」인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4년 개정 이후 2005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나, 2012년 1월 1일에 폐기되었다.

이 법은 ‘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Wet Werk en Inkomen Kunstenaars, WWIK)’에 적용된다. 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로서 예술인 계층이 생계유지의 위험 때문에 예술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술인의 고용과 수입제공에 관련된 제도로 예술인에게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수입을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예술인 복지 제도는 문화예술인의 빈곤문제, 생계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가되며(강익희, 2011), 예술인과 관련한 복지법은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으나 2012년에 폐기되어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2)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中 실업보험)의 존재 유무 및 그 외 보험 형태

네덜란드의 고용정책은 유연안정성 정책을 펴는 대표적인 국가로, 고용보험 대상자는 고용보험 틀 내에서 소득과 취업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보험 비대상자인 청년,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이민자, 장기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은 주로 실업부

조(사회부조)의 영역으로 편입시킨다.

또한 전 국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며,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활동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사회부조제도로서 ‘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급 가능 대상으로는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신참 예술인(예술학교 졸업 후 1년 미만)과 일시적으로 수입의 감소를 겪는 기존의 예술인(미술가, 작가, 공연예술가 등)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70%를 지원하며, 10년 동안 최대 4년간(48개월) 지급한다. 이는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배려로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고등예술교육을 수료했거나 전문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예술 활동을 통한 연차별 소득증가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업무는 법적 기관인 ‘Artist & Cultural Entrepreneurship’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예술인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최저임금의 125%까지 벌 수 있다. 구직 의무를 갖지 않고 예술과 문화 기업의 훈련과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원을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경제적 위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예술가적 경력으로 이탈하지 않고 예술인으로서의 경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2012년 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다. 이는 다른 직종의 구직자들도 구직 활동을 위해 1년 정도는 수입이 없이 지내는 반면 예술인최저생활보장의 경우 예술학교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있어 예술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이었다. 이에 따라 ‘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는 폐지하게 되었으며, 예술인들에게 부여되었던 특별한 지위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통한 충분한 수입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른 직종으로의 구직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네덜란드의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일반적 법률의 경우 예술인들은 자영기업가와 같이 적용되지만 「실업보험법」은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에 실업기간에 따른 수용기준은 매우 관대하게 되어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의 경우는 다층 노후보장제도로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이며, 사적연금은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준강제가입 제도로 전체 피용자의 95%가 적용될 정도로 보편화되어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재인용).

(3)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금의 형태

네덜란드의 교육문화과학부에서는 ‘정부문화예술기금(cultuursubsidie)’을 제공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공연예술기금(NFPK), 네덜란드 문학 작품 및 번역(NLPVF) 등에 대해 기관 단위별 4년 단위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정부문화예술기금은 특정 문화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리에 의해 승인되며, 정부의 문화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공연예술 및 박물관’, ‘시각 예술, 영화 및 문학’, ‘건축, 디자인, 뉴미디어’, ‘예술 교육, 아마추어, 도서관’ 등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또한 공연예술기금, 문화기금, 문학기금, 몬드리안기금, 스티플레이션 창작 산업, 네덜란드 영화 기금 등의 각각의 기금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지원 방법 및 안내 사항 등을 공지한다(박조원 외, 2013).

5) 합의 및 시사점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및 세부 정책들을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예술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은 4개 나라가 모두 존재하지는 않았다. 단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예술인을 위한 특별법’이 2012년 폐기된 상태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법을 바탕으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과 고용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나라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공연예술인 계층을 위한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의 실업보험제도는 유연하고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로 규정해 실업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오랜 역사적 기반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은 국가의 분위기와 통치자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그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어왔다(한승준, 2011). 이러한 배경으로 예술인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한 구조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능형태별 특징에 따른 상이한 제도로 발전한 전반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특징이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특히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보험인 ‘엥페르미땅’이 그 대표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능형태별 특징에 따른 제도 운영은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제도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은 예술인들에게 포괄적인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 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정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보장의 혜택을 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가 공공부조 형태로 잘 정비되어있는 것이 특징인 네덜란드는 예술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인 ‘최저생활보장제도’로 예술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예술인을 위한 기금의 형태는 독일을 제외하고 모두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원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는 실업보험 수급이 종료된 경우 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기금은 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프랑스는 공적지원뿐 아니라 예술인 사회공동체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활동도 활발하다. 프랑스의 예술인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해대변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럽의 협동조합은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프

랑스는 다섯 가지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예술인들의 산별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이해대변의 역할과 금고, 보험 운영을 통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반면 프랑스와 미국과 달리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형태는 살펴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미국은 공적 지원보다는 사적 지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산별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다. 노동조합에서 보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들은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유럽의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노동조합이 대신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술인들의 이해 대변뿐만 아니라 건강 및 연금보험 운영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구조도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예술인 노동조합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노동조합에서 보험 운영의 역할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예술인을 위한 적극적인 이해대변, 근로조건 협상, 최저임금의 확보, 연금제도, 부조 등의 운영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산업 및 직업계층별로 종사지위·고용형태, 소득 유형·규모에 따라 정형화된 정책수단과 제도를 통해 분류하여 편입시킨다. 예술인의 경우 단일한 직업 계층으로 분류하기가 힘들며 우리나라는 예술인을 직업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예술인 계층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거나, 예술인을 노동자로 재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의 마련과 예술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표 4-3>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 비교

| | 프랑스 | 독일 | 미국 | 네덜란드 |
|----------------------|-------------------------|---------------------------------|-----------------|-----------------------|
| ‘예술인 복지법’의 존재 유무와 형태 | △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 (자영 예술인과 언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 × | △ (예술인을 위한 특별법-폐기) |
| 예술인을 실업보험의 존재 유무 | ○ (엥페르미땅) | × | × | × |
| 그 외 보험 형태 | ○ (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족수당) | ○ (공적연금, 건강보험, 리스터연금, 뤼롭 연금) | ○ (건강보험, 연금) | △ (사회보조-최저생활보장제도) |
|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유무 및 형태 | ○ (노동조합, 협동조합) | - | ○ (산별노동조합) | - |
|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금의 형태 | ○ (전문화연대기금) | - | ○ (미국연방예술기금) | ○ (정부문화예술기금) |

※ 일반사회보장제도는 제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만을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

2.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

1)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과 개정사항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2011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살펴봄으로서 그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개별 복지법의 제정은 캐나다 「예술가지위법」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술가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술인들이 법률에 근거해 국가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⁶⁹⁾

2011년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법률 제15821호로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 6장 18조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3장은 사회보장, 제4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제5장은 보칙, 제6장은 벌칙으로 되어있다. 각 장에 포함되는 법률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4>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법」의 구조(법률 제15821호)

| 장 |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의2 실태조사 제4조의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제6조의 2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6조의3 재정지원의 중단 등 |
| 제3장 사회보장 |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9조 정관 제10조 재단의 사업 제10조의2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 접수 제10조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 임원 |

69) 환만주 (2015). 법과 제도에 나타난 예술인 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54.

| | |
|--------|---|
| | 제13조 이사회 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제15조 감독 등 제15조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5조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15조4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 제5장 보칙 | 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
| 제6장 벌칙 | 제17조 벌칙 제18조 과태료 |

「예술인 복지법」은 법률 제16687호로 최근 2019년 1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20년 6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조 정의’에 내용이 추가되었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종전의 제4조3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 제6조의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화예술용역’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2조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둘째, ‘제4조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제4조2 실태조사’는 ‘제4조3’이 된다. 이 법률은 예술인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다.

셋째,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경우 기존의 제1항에 명시되었던 “문화예술용역”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제4항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용역의 계약서 작성 및 위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제5조의2 계약서의 보존’의 법률은 제4조4 제2항에서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하였다. 이 법률의 신

설을 통하여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관리의 강화 및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제6조2 불공정행위의 금지’의 법률에서 제1항에 명시하고 있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제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6조의4 보고 및 검사’ 법률로 독립시켜 법률을 신설함으로써 불공정행위의 위반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강화하고자 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제6조의3 재정지원의 중단 등’의 법률에서는 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정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의 내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로 수정되었다. 다른 수정된 법률은 2020년 6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조항만은 8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18조 과태료’에는 추가하거나 신설된 법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서 보존 및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5>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 사항(법률 제16687호)

| 법률 | 개정 내용 |
|--------------------------|---|
| 제2조 (정의) | (추가)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
| 제4조의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 (신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

| | |
|----------------------------|---|
| | <p>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p> <p>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p> <p>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p> <p>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제4조의3 (실태조사) | <p>(이동)</p> <p>제4조의2에서 제4조의3으로 이동</p> |
|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p>(이동)</p> <p>제4조의3에서 제4조의4로 이동</p> <p>(수정)</p> <p>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
| 제5조의2 (계약서의 보존) | <p>(신설)</p> <p>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
| 제6조의2 (불공정행위의 금지) | <p>(수정)</p> <p>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제)</p> <p>④ 삭제</p> |
| 제6조의3 (재정지원의 중단 등) | <p>(개정)</p> <p>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 2020. 8. 12. 시행.</p> |

| | |
|----------------------------|---|
| <p>제6조의4 (보고 및 검사)</p> | <p>(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
| <p>제18조 (과태로)</p> | <p>(추가)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술인 복지법」, 재구성

2) 예술인 보험제도의 내용

「예술인 복지법」 제4장의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근거하여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지원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인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가입상담 및 가입대행, 정보 변경 등의 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료는 등급별로 50%를 지원하며, 신규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2개의 등급이 있으며 이중 가입자가 원하는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1등급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6개월간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주요혜택은 일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와 같

다7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표한 2019년 1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실적을 살펴보면, 총 1,560여건의 가입실적이 있으며, 이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612건이다. 정상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예술인을 살펴보면 연예와 연극분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다. 반면 정상적으로 가입된 상태가 아닌 성립취소, 소멸, 해지 등을 비교해보면 무용과 연극분야의 경우에 가입률이 높기도 하지만 해지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실적(2019년 1월 기준)

(단위 : 건)

| 예술분야 | 성립취소 | 소멸 | 정상 | 해지 | 합계 |
|------|------|-----|-----|-----|------|
| 국악 | - | 10 | 15 | 10 | 35 |
| 만화 | - | - | 3 | - | 3 |
| 무용 | 33 | 91 | 92 | 295 | 511 |
| 문학 | - | 2 | 18 | 1 | 21 |
| 미술 | - | 5 | 52 | 10 | 67 |
| 사진 | - | - | 5 | - | 5 |
| 연극 | 11 | 77 | 121 | 193 | 402 |
| 연예 | 6 | 18 | 191 | 91 | 306 |
| 영화 | 4 | 16 | 92 | 48 | 160 |
| 음악 | - | 6 | 23 | 21 | 50 |
| 합계 | 54 | 225 | 612 | 670 | 1560 |

※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p.14. 재구성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비중이 높았으나,

70) 산재보험 주요 혜택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이 있다.

점차 장애 및 간병급여 등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 지급 승인자 수와 지급총액 모두 연예 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분야는 승인자 수가 연극분야나 무용분야보다 적지만 지급총액이 약 2배가량 높아 1인당 수급 금액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극분야는 연예분야에 이어 승인자 수가 두 번째로 많으며 다음으로는 무용분야의 수가 많고, 음악, 미술분야 순이다. 음악분야의 승인자 수가 미술분야의 승인자 수보다 1명이 더 많지만 미술분야의 지급액이 음악분야의 지급액의 약 1.5배가 많아 1인당 지급 금액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예, 영화, 연극, 무용, 미술 분야의 종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예술 활동상 위험률이 다른 예술 활동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7>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보험급여 지급현황(2013-2017)

(단위 : 명, 천원)

| 연도 | 예술 분야 | 승인자 수(명)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소계 |
|-------------------|-------|----------|---------|---------|------------------------|---------|
| 2013 ~ 2017 | 국악 | - | - | - | - | - |
| | 무용 | 14 | 6,147 | 21,032 | 7,969 | 35,149 |
| | 문학 | 1 | 488 | 3,877 | - | 4,366 |
| | 미술 | 5 | 3,287 | 9,097 | - | 12,386 |
| | 연극 | 19 | 8,447 | 27,564 | 7,739 | 43,751 |
| | 연예 | 50 | 112,919 | 540,500 | 223,282 | 876,703 |
| | 영화 | 9 | 25,201 | 34,006 | 20,441 | 79,648 |
| | 음악 | 6 | 1,874 | 6,044 | - | 7,919 |
| 소계 | 104 | 158,363 | 642,120 | 259,431 | 1,059,922 | |

※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p.17. 재구성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했던 예술인들 가운데 2012년 예술인 산재보험제도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총 1,009명이 보험을 해지하였다. 이 중 57%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보험료 체납의 사유로 보험관계를 해지하였고, 그밖에 폐업(14%), 행불(2%) 등의 사유로 보험을 해지하였다.⁷¹⁾ 57%의 예술인이 보험료 체납의 이유로 보험관계를 해지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속적인 고용과 비정기적인 수입으로 인한 체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인을 중소기업사업주 적용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적으로 예술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현행 가입방식으로 인해 특정 예술 활동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²⁾

2019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한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 신청서류면제약을 필요로 하는 조건의 완화, 둘째, 산재보험료 납부 정지신고제도의 도입, 셋째,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신청 창구 일원화, 넷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다섯째, 예술인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규정이 아닌, 별도의 특례규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여섯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 당연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여 중장기적인 복지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에 표준계약서 체결 및 교육이수 조건을 넣음으로서 예술인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 활동 계약

71) 박은정 외 (2018),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인용.

72) 박은정 외 (2018),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pp. 20.

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표준계약을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 활동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단체 및 회사가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술인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예술 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예술인인 경우 ‘표준계약 교육’ 을 이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인 예술인 및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에게만 이루어진다. 프리랜서 예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진다.

2019년 말부터 발병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되어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은 2009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약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의 창작권 보장” 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과제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5월 「문화비전 2030」 을 통해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을 발표하고,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고용보험법 개정안’ 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 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

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과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⁷³⁾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내용은 기존의 임금근로자의 기준과 대부분 같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에서 24개월 중 9개월 이상으로 유연해졌다. 또한 지급 수준이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간의 보수총액으로 기준이 다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기준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맞는지의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프랑스의 실업보험 체계에서처럼 예술 활동 종사지위에 따른 수급조건 및 지급기준의 차별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한 이후에 기금의 형태, 공공부조의 형태, 공제회를 통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네덜란드의 제도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프로젝트 형식으로 예술 활동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급기간에 일정금액까지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인의 현실에 적용하기 합당한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3) 뉴스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무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01508099202> (2020.05.21.)

3)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의 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알아보고 「예술인 복지법」과 이론연구에서 도출한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고 성찰해 보고자 한다.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창작역량강화, 불공정관행개선, 직업역량강화, 사회안전망구축,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조성 등 총 5개의 영역으로 14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⁷⁴⁾

첫째, 창작역량강화 영역에는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 활동을 준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재원이 확대되어 12,000명에게 지원 될 예정이다.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은 자격 요건 충족시 우선 선정되며 참여가 제한되는 예술인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2019년도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2020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재단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 받은 예술인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임금근로자인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불공정관행개선 영역에는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예술인 성폭력 예방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 신문고’ 사업은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⁷⁵⁾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구제,

7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한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참고

75)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시행령 제3조의2를 기준으로 불공정 행위를 유형화 하였다.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상담, 신고, 피해구제 등의 지원을 한다. 신고·상담센터 내 법률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예술 분야별 특화 상담을 제공한다.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공동개최한다. 또한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9개 분야 57종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비롯하여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예술 창작 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예술인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창작의욕 고취 및 예술 활동 증진을 도모한다. 심리검사, 개인 심리상담, 집단 심리상담, 예방 및 위기 개입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총 37개소이다.

‘예술계 성폭력 신고 상담’은 예술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 지원, 관련 기관 연계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성폭력 예방 지원’은 예술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평등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사업내용으로는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 교육, 현업종사자, 예비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이 있다.

-
- 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②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셋째, 직업역량강화 영역에는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는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회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예술로 협업사업, 예술로 기획사업, 예술로 지역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예술로 협업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참여기업·기관·마을을 발굴하고 예술인과 매칭하여 예술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술로 기획사업’은 예술을 통한 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룹으로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함께 활동했던 팀이거나, 새로운 예술협업방식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규팀은 지원가능하다. ‘예술로 지역사업’은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리더예술인’은 예술적 역량·경험과 참여기업·기관·마을을 매개하여 예술협업활동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예술인’은 리더예술인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을 한다. ‘참여기업·기관·마을’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의 예술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은 예술인에게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 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돌봄으로 긍정적 사회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24개월 유아부터 10세 아동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반디돌봄센터와 예술인자녀돌봄센터 두 곳이 운영 중이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 영역에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이 포함된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인을 위한 보험제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 활동의 복귀와 지속을 도우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으로 1인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섯째,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 영역에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이 포함된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영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 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대상자이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⁷⁶⁾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이 주어진다.

‘예술인 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에게 지원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학자금, 긴급생활자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500만원 이내이며(단,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300만원 이내) 이율은 2.2%, 상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8,000만원이며 임차보증의 80%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용자는 이율이 1.7%,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동일주택인 경우 3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76) <http://www.kawfartist.kr>

<표 4-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 사업 영역 | 시행 사업 |
|----------------|---|
| 창작역량강화 |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
| 불공정관행개선 | 예술인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예술인 성폭력 예방지원 |
|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 사회안전망구축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국민보험, 고용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
|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 출처 :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참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공공기관으로 이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동법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각각의 사업들이 「예술인 복지법」의 각 어떠한 조항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의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총 14개의 사업이 잘 설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4조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관련하여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사업으로 9개 분야 57종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과 관련해서는 ‘예술인활동증명’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예술인활동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조의 2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명시된 ‘불공정 유형’ 과 관련하여 예술 활동시 발생하게 되는 불법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예술계 성폭력 예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제10조는 한국예술인복제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항에 총 12개의 호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11개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호에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의 경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험 편입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호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은 ‘예술인 과전지원-예술로’ 사업으로 예술인의 적극적 개입으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은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호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을 우선 선정하여 낮은 예술 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며 가구원 소득 인정액 120%이내인 예술인에게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4호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은 ‘창작 준비금 지원’ 으로 2020년에는 예산의 증액으로 12,000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의 예술 활동 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예술인의 중장기적인 복지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5호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3

실태조사⁷⁷⁾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현재까지 2015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 공표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외 자체적으로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6호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은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에게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제7호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의 경우 ‘예술인 공제회’가 설립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제8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은 ‘예술인 신문고’ 사업으로 불공정행위 관련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신고, 상담, 법률 지원, 피해구제 등의 제원이 제공된다.

제9호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으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을 구분하여 대상별 지원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교육을 기존 50회에서 70회로 확대하여 실시된다.⁷⁸⁾

제10호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은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지원’, ‘예술인 성폭력 예방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술인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법률지원, 심리상담, 의료 지원 등을 담당하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제11호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예술인 패스’ 사업이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다.

제12호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는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으로 예술인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여 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77) 이 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어 왔으나 2013년에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2015년 조사의 명칭과 조사규모 및 조사방법 등이 전면 개편되었다. 조사범위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7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 「2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표 4-9>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간의 상관관계

| 법률 | 시행 사업 | |
|--|--|---|
| 제4조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
| 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 ·예술인활동증명 | |
| 제6조의2 (불공정행위의 금지) |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예술인 성폭력 예방지원 | |
|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예술인 산재보험 | |
| 제10조 (재단의 사업) |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 |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 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 | 3. 원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
| |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 |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제4조3 실태조사 | ·예술인 실태조사 2회 실시 (2015, 2018) ·자체연구실시 |
| |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 |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없음 |
| |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예술인 신문고 |
| |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

| | | |
|--|--|---------------------------------------|
| |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지원 ·예술인 성폭력 예방 지원 |
| |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예술인 패스 |
| |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예술인 심리상담 |

※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한 것임.

이론연구에서 다섯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수단을 도출한 바 있다.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므로 다섯 가지 정책수단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첫째,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의료비 지원’, ‘예술인 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 해당된다. 이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창작금 혹은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여 창작 환경과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과도한 의료비의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직접 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술인과견지원-예술로’,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이 해당된다. ‘예술인과견지원-예술로’ 사업으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며,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으로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하여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보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법률상담’, ‘심리상담’, ‘성폭력피해 신고 상담’, ‘성폭력 예방지원’, ‘예술인 산재보험’이 해당한다.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법률상담’, ‘심리상담’, ‘성폭력피해 신고 상담’, ‘성폭력 예방지원’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관행처럼 발생해 왔던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과 지위를 신장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넷째, ‘조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예술활동증명’이 해당된다. 이는 예술인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예술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규제’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사업은 없지만 「예술인 복지법」 제6장에 벌칙과 과태료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표준계약서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보호적 규제라 할 수 있다.

<표 4-10> 예술인복지 정책수단으로 분류 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 정책 수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
|-------|--|
| 지 원 | ·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패스 |
| 육 성 | · 예술인과견지원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
| 보 호 | · 예술인 신문고 ·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 예술인 산재보험 · 계약 및 저작권 교육 · 예술이 심리상담 · 성폭력 예방 지원 |
| 조 성 | · 예술활동증명 |
| 규 제 | ·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규제 · 사업 신청에 제한 |

※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한 것임.

4) 문화예술분야 사회공동체 유형

(1)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

공연예술 관련 분야 노동조합의 시초는 1999년 예술단체들이 ‘예술가도 노동자다’라는 구호 하에 예술가 중심으로 결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이 시초이다.⁷⁹⁾ 세종문화회관이 1999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9개의 소속 예술단체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개별 법인화 시킨다는 조건으로 위탁 경영되며 체제가 변동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임금감소를 우려한 소속 예술인들은 극장 및 서울시와 대립하게 된다. 이후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체 총무들을 중심으로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올바른 공연문화의 정착, 전국 공연예술인들이 하나 되는 예술노동조합 건설을 기치로 1999년 9월 6일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것이 모태가 되어 전국적으로 국공립 민간예술단체·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확산되었고, 2003년 16개의 예술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⁸⁰⁾

2003년 12월 17일 출범한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은 이후 프리랜서 예술노동자 개별가입과 분야확장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해나갔고, 2006년 11월 상급단체였던 공공연맹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통합본부 내에 문화예술분과로 편제되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조합들을 연맹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2011년 6월,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합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란 이름의 산별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조합은 공기업, 화물, 버스, 택시 등의 운수, 의료, 보육, 간병, 요양, 사회복지, 청소, 시설관리, 문화예술, 전문기술 분야 등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문화예술분과(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문화예술협의회'가 되었으며⁸¹⁾ 13개의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은 개별 또는 지부의 형태로 조합 산하에 속해 있다. 문화예술 관련 산하 노조로는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과 지역별 도립, 시립 예술단 노동조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⁸²⁾

구체적 활동으로는 산별 집단 교섭, 외부단체와 연대하여 예술인 사회보장에

79) 1989년 설립된 예술의 전당 노동조합은 공연장, 사무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있었으나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

80) 김영미 (2015). 「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 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8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kptu.net/>) (방문일자 2019.11.15.)

82) 김영미 (2015). 「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 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재인용.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관련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지부별 문제 발생 시 해결을 돕고 투쟁을 하기도 하며, 예술인들의 고용안정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 시 조합 분과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⁸³⁾

‘예술의 전당 노동조합’은 1989년 1월 19일 설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에 가입해 있다가 2009년 탈퇴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가 복지 정책 등의 분야 전반에 대한 거시적 활동보다는 예술의 전당 내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연장 중심, 사무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다.⁸⁴⁾ 조합원의 범위는 ① 부장급 이상 직원(팀장, 직무대리 포함), ② 인사, 노무, 회계, 감사, 전산 담당 4급 이상의 직원, ③ 임원의 비서 및 운전기사 등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노동조합의 사용자단체는 예술의 전당 측으로 매년 단체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은 조합 활동, 인사, 문화예술사업 공정운영, 근로조건, 임금, 복지후생, 교육훈련,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퇴직, 단체교섭, 쟁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단체협약 시에는 공연장 및 전시장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연, 전시장의 수시 점검기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휴관일의 경우 오페라극장은 2주 이상 셋업 시에는 월요일로, 음악당과 서예관은 매주 월요일, 미술관(디자인미술관)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였다.⁸⁵⁾

1988년에 산별노조로 설립된 ‘서울방송연예인노동조합’은 1991년 ‘한국방송연예인노동조합’으로, 2000년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성우지부와 희극인지부, 텔런트지부, 가수지부, 무술연기자지부, 분장지부, 연극인지부를 포함해 총 7개의 지부로 2006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1년 5월 텔런트지부, 코미디언지부, 성우지부, 무술지부, 연극인지부로 재정비하면서 ‘한

83) 김영미 (2015). 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 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84) 주연경 (2006). 「한국 문화예술노동조합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4.

85) 2018년 단체협약 개정 비교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예술의 전당, <http://www.alio.go.kr/popReport.do?seq=2016122301337485&disclosureNo=2016122301337485>

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으로 다시 변경하여 현재 활동 중이다.

이 노동조합은 텔런트, 코미디언의 경우 매년 평균 임금 인상에 따른 출연료 인상, 야외 및 야간 수당, 지방 촬영의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 성우는 녹음료 인상, 연습비, 프리랜서와 전속의 비율 관련 협상 등을 진행하며, 방송 3사가 아닌 외주 제작사의 드라마 제작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협상도 진행한다. 재방송료에 해당하는 출연료에 대하여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지불하도록 합의하였으며, 그 범위를 종편 채널까지 넓혔다. 또한 노동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단체협상 이외에도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야유회, 수련회, 체육대회 등과 세미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있다. 복리후생 규정을 두어 각종 경조사(결혼, 자녀 출생, 부모님 칠순, 부고 등)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을 둔 조합원에게 입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은 일부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열악한 작업조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던 모임인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cafe) '비둘기 둥지' 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01년 조감독, 촬영, 조명, 미술 협의회가 발족하였으며, 2002년에는 한국영화조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조수협회가 설립되었다. 2003년에는 한국영화조명조수협회, 4부조수연합(한국영화조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부협회, 촬영조수협의회, 조명조수협의회)이 설립, 2004년에는 이 노동조합의 전신인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가 설립되었다. 이후 2006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에 가입하였다. 영화 스태프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직종별 협의회와 협회로의 확장을 거쳐 산별노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영화인 신문고' 는 영화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측과의 꾸준한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사)한국독립영화협회(독협)' 과도 협약을 맺고 사용자단체로 함께하게 되었다.⁸⁶⁾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86) 김영미 (2015), 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 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가 모여 ‘영화산업협력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2011년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영화산업 스태프의 고용과 복지 등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준노동조합(quasi-union)인 ‘유니온’ 조직이 생겨나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등을 제기하며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헉셔와 카레(Heckscher and Carré, 2006)는 ‘자신들의 작업과정 및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공식적 노동조합을 통한 이해대변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이 노동권 확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한 광범위한 조직들’을 ‘준 노동조합’이라 하고 있다. 이 조직의 특징으로 ① 노동집단 중에서 저임금 불안정 주변부집단 중심의 조직, ② 자영업자, 프리랜서, 단속적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 하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출현, ③ 매우 느슨하고 유동적인 멤버십에 기초한 자발적 결사체, ④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정체성, 지리 등이 멤버십 가입의 기초, ⑤ 집단행동의 일차적 기능과 레버리지가 멤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거나 정치 행동을 통한 애드보커시(advocacy) 지향이라고 정의하였다.⁸⁷⁾

권혜원(2016)은 예술인들의 유니온들이 헉셔와 카레가 정의한 ‘준 노동조합’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첫째, 예술인들의 직종이 공식적·제도적 이해대변 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저임금, 고용이 불안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를 기초로 자발적인 결사체를 조직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확충을 위한 애드보커시 지향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2011년 12월 3일, 예술인들은 최고의 작가 사망 1주기를 되새기면서 “밥 먹고 예술 합시다!”라는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분야별 작업 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범-장르 예술인 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들을 주체로 하여 2012년 3월 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15년 4월 29일 공식 출범하였다.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개인들과 조직들이 수평 결합하여 상호 포괄하는 동맹의 형태이다. 개별적 이익단체로 귀결되지 않는 일종의 공유지와 같은 네트워크

87) 권혜원·권순원 (2016).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적 이해대변 가능성 탐색: 작업장 노동조합주의를 넘어서, 「한국사회」, 17(2), pp. 100, 재인용.

를 구성하여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도모' 하고자 한다.(나도원, 2013).⁸⁸⁾

‘뮤지션 유니온’은 음악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2013년 9월 8일 창립되었다. 전국의 음악가(창작자, 연주가, 음악 관련 종사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며 음악의 사회적 가치회복을 위한 활동, 창작 권리 보호, 복지와 사회적 지원 확대, 음악노동자의 지위 확보 등을 실현하고, 공공재인 음악의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⁸⁹⁾ 이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삼성 밀크 뮤직이 ‘너희는 아직도 돈 내고 음악 듣니?’라는 카피의 광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에 대해 삼성본사 앞에서 “Music is Work”라는 항의 캠페인 버스킹을 벌인 바 있으며 이외 토론회, 정책간담회, 세월호 추모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니온 조직은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개별 사업장 중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해왔다. 유니온은 정규직이 아닌 그동안 제기 할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의 보장을 가시화하여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니온 주체들은 노동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예술인 복지의 확대를 위한 입법화 전략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 작업에 투여된 노동의 가치를 미적 가치로 치부하여 예술인들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예술 작업 전 과정에 투여된 노동력에 정당한 경제적 가치가 존중되어 공정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

문화예술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임의 단체가 많으며 주식회사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법인화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가 갖는 영리적 이미지,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문화예술 시장의 실패 경향 때문이다.⁹⁰⁾

88) 예술인 소셜유니온 블로그 방문 https://blog.naver.com/artist_union (2019년 11월 22일)

89) 뮤지션 유니온 블로그 방문 <https://blog.naver.com/musicianunion> (2019년 11월 22일)

협동조합은 민주적 결속체로서 자율·자족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공동체 성격 또한 예술인 개인의 자율을 중시하는 성격이 비슷해 협동조합이 문화예술분야의 법인 성격으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외에 법인화 하려는 문화예술단체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여 설립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공공적인 이미지까지 줄 수 있어 협동조합으로의 설립을 선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총 14,54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3,211개(22.1%)로 가장 많으며, 교육 서비스업이 2,182개(15.0%), 농림어업이 1,363개(9.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1,311개(9.0%), 제조업 1,291개(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황 조사에서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협동조합의 수가 합쳐져 조사된 것이지만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의 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표 4-11> 협동조합의 업종별 설립현황

| 협동조합 업종 | 조합수(개, %) |
|---------------------------|-------------|
| 농업, 어업 및 임업 | 1,363(9.0) |
| 제조업 | 1,291(8.9)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64(1.1)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176(1.2) |
| 건설업 | 362(2.5) |
| 도매 및 소매업 | 3,211(22.1) |
| 운수업 | 342(2.4) |
| 숙박 및 음식점업 | 530(3.6) |

90) 허은영 (2012).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pp. 102-103.

| |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62(3.9)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88(1.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20(3.6)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493(3.4) |
| 교육 서비스업 | 2,182(15.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90(5.4)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311(9.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2(6.5) |
| 기타 | 99(0.7) |
| 합계 | 14,526(100) |

※ 출처: 기획재정부 (2020).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재구성.(2018년말 기준)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 구성원에 따라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직원협동조합’은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협동조합으로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예술(창작)인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업자협동조합’은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예술매개자 협동조합’으로 결성할 수 있다. 생산자와 문화예술 향유자를 잇는 매개자로서, 문화예술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을 수행한다.

세 번째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예술소비자(향유자) 협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하다. 예술장르별 동호회와 지역주민, 학부모, 직장인 등과 같은 개별 집단이 다양한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네 번째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위의 3대의 유형이 혼합된 협동조합으로 상호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종합하여 만든 협동

조합이다. 예술인과 예술매개자의 결합, 예술인과 향유자의 결합, 향유자와 예술매개자의 결합, 예술인, 예술매개자, 향유자 모두 결합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섯 번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조합 구성원에 따른 활동 내용은 비슷하지만 비영리법인으로 목적과 정체성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공공재인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술인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크라트 예술인 협동조합’은 2013년에 발족하였으며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 전원 참여 혹은 소모임을 결성하여 사업 참여를 하는 형식의 협동조합이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의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진화중인 협동조합이다(박준오, 2015). 이들은 문화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위치한 신당동 중앙시장의 활성화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문화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협동조합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박준오, 2015).

제주 돌담문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돌빛나예술학교 협동조합’은 5명의 돌담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에 설립되었다. 사라져가는 제주 돌담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돌담문화의 계승발전과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돌문화 교육을 통해 기술전수와 더불어 돌문화 속에 녹아있는 제주인의 삶과 지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돌문화 교실’, 돌빛나예술학교 협동조합을 찾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돌문화 체험 교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담아카데미(이론반과 실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신비의 축제를 개최한다⁹¹⁾.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⁹²⁾은 문화예술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성장, 취업시키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다. 문화예술 인력의 사회 안정망을 확보해주고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들 간의 협동으로 만들어지는

91)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2017 협동조합 사례집」, pp. 57-70.

92)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홈페이지 http://panculture.net/?page_id=51

창의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축제운영, 축제제작, 행사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2016년 무한청춘 페스티벌 청년문화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 도토리 학교, 2018 청년축제학교 ‘축제가 사람을 만든다’, 2018 업종별 네트워크 스터디투어 ‘뭐하고 살아?’, 2019 청년문화기획단 ‘성장관’ 등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축제로는 춘천 북페스티벌 ‘책길만걸자!’, ‘2017 들깨 페스티벌’, ‘2018 춘천마임축제’,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등을 제작·운영하였다. 이외에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설립한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⁹³⁾은 부산의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공동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네트워크와 성과를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현장의 요구를 담은 문화정책의 연구와 컨설팅,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교육,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콘텐츠의 개발, 창의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예술인 및 문화단체,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이사회를 필두로 하여 미래가치본부와 문화사업본부로 나뉜다. 미래가치본부는 연구, 교육, 컨설팅을 담당하며, 문화사업본부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2015년 ‘수영성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영도 깡깡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례를 만들었다. ‘영도 깡깡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영국 셰필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국제교류의 시도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외에 부산 및 경남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생산과 확산, 이주민 정책, 예술인 복지 정책연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자바르떼’는 문화소외계층의 창조적인 문화 활동과 문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공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다. 예술인, 기획자, 지역문화활동가, 자원활동가, 후원인들이 모인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이다. 2005년

93)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planbcoop.com/>

문화관광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2007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로 법인 전환하였다.

다섯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예술인들이 제공하는 문화예술 교육·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의 공연예술 프로그램, 축제·공연 기획, 지역문화사업,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⁹⁴⁾

(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예술단체의 목적 및 성격이 다르다. 일반 예술단체는 전반적으로 예술적 성과와 성취를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로 인하여 재정적 측면, 운영과 경영방침, 규정이나 법규까지 다르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으로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종으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⁹⁵⁾ 지정제도를 2019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문화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⁹⁶⁾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 분야 56개 기업을 첫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다.

2019년 12월까지 인증 받아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총 2,435개소의 서비스 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분야가 265개소(10.9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94) 자바르떼 홈페이지 <http://arteplay.net/xe/>

95)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 지침)

9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보도자료 및 지정 모집 공고 <https://www.mcst.go.kr/kor/main.jsp>

났다. 이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2>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분야별 현황

(개소, %)

| 문화, 예술 | 청소 | 교육 | 사회복지 | 환경 | 간병, 가사지원 | 관광, 운동 |
|---------------|---------------|---------------|---------------|---------------|-------------------|----------------|
| 265 (1.90) | 226 (9.30) | 213 (8.70) | 120 (4.90) | 117 (4.80) | 99 (4.10) | 60 (2.50) |
| 보건 | 보육 | 산림보전 및 관리 | 문화재 | 고용 | 기타 ⁹⁷⁾ | 합계 |
| 18 (0.70) | 14 (0.60) | 10 (0.40) | 10 (0.40) | 10 (0.40) | 1,273 (52.30) | 2,435 (100)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2020」, 재구성

이중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포함된 혼합형으로 인증 받은 주요 기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예술경영우수사례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은 “드림 위드양상블”은 문화분야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활동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드림 위드양상블”은 2015년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로 사회적경제 창업공모사업으로 창업되어 같은 해에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발달장애인을 전문연주자로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회참여에 앞장서고 구성원과 가족 및 지역사회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다. 발달장애인의 연주 및 강의, 교육 등 음악을 통하여 사회를 아름답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장애인식 개선 등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이다.

2018년 기준으로 14명의 정규직, 6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5회의 연주회, 15회의 사회공헌, 329백만 원의 매출액이 있다. 2018년에는 평창패

97) 식품제조·판매(식품, 음료, 도시락, 반찬 등) 331개, 생활용품 제조·판매(화장품, 비누 등) 202개 등

럴림픽 전야제 초청공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청와대 초청간담회 공연, 세계장애인의 날, 유엔(UN) 주제 한국대표부 공연을 진행하였다.⁹⁸⁾

‘(주)에이컴퍼니’는 아트 큐레이팅 및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미술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엮어 나감으로써 접근이 수월하고 지속 가능한 미술 시장을 만들어 개인 및 기업에게 최적화된 미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를 믿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미술 작가들의 경제적, 정서적, 제도적 창작 환경에 주목한다. 이에 공개모집을 통해 신진예술가와 함께 매년 <브리즈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학로-이화동에 미술작품 및 아트 콘텐츠를 판매하는 <그림가게, 미나리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트 컨설팅을 통한 공간 및 전시기획,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등의 공공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주)에이컴퍼니는 2011년 창업하여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12년 서울시 혁신형사회적기업으로 선정,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2014년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창조관광벤처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 5회의 <브리즈아트페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⁹⁹⁾

문화예술분야 첫 사회적기업인 ‘노리단’은 2004년 하자센터(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센터)내에서 기획자, 예술가, 청소년 등 11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직접 만든 악기들로 공연을 하고, 보디 퍼커션, 악기 등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또한 악기를 제작해 팔거나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였다. ‘신나고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자’라는 창의적·사회적 문화 예술벤처를 지향했던 이들은 2007년 노동부로부터 문화예술분야의 첫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2008 마카오 아츠 페스티벌’의 초청작인 ‘핑퐁’이 있다. 이 작품은 2007년부터 공연되고 있으며 2008년 포스코 TV 광고와 SBS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다. 이들 공연 팀의 특징

98) 드림위드양상블 홈페이지 <http://www.dreamwith.or.kr/>

99) (주)에이컴퍼니 홈페이지 <https://www.acompany.asia/>

은 친환경적으로 새로 개발한 악기들과 기발한 퍼포먼스에 있다. 악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한다. 이렇듯 거듭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사물을 대하는 생태주의적 태도를 길러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임에도 내다버리는 도시의 끝없는 소비주의를 성찰하게 한다.¹⁰⁰⁾

노리단의 공공디자인 철학은 ‘삶을 디자인 한다’는 것으로 공공 디자인팀이 담당한다. 기업적인 측면으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조형물 제작 및 공간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창출해낸다.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마을 가꾸기를 시행하며 리노베이션 및 경관 가로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커뮤니티 디자인 등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설날에는 한국-서울을 대표로 ‘2010 홍콩 설 축제’에 참가했으며, 2009년 일가치 창출 유공자 포상 노동부장관상, 서울시 환경상 자원재활용분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2년 30여 명의 음악적 역량을 갖춘 젊은 전문 음악인들이 함께 창단하였다. 이후 정통 클래식에 뿌리를 두고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 기획연주회 등 260여 회의 활발한 연주 활동을 거듭하며 ‘교향곡 전문 오케스트라’로 평가 받았다. 꾸준한 음악 활동으로 2007년 경기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사단법인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재정 자립의 기틀을 갖추었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실력있는 젊은 단원을 보강하여 전원 상임화를 이루어내었다.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에서 민족주의 음악 연주를 통해 ‘민족주의 음악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오케스트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는 17,8세기 중부 유럽이 주도했던 음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국 민족적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민족주의 작곡가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고자 했던 오케스트라의 의지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민족과 음악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우리나라 음악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하는 새로운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광명 아

100) 경남일보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 국내 1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노리단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09> (2015.07.26.)

방리 농요' 를 오케스트라의 양식에 담아 국악과 서양음악의 음악적 교류를 시도하는 등 한(韓)브랜드 공연 콘텐츠 개발에 노력 중이다. 더불어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뮤지컬, 대중음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2006년부터 “관현악 배움터”, “신나는 음악교실” 을 개설하여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시작하였으며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도덕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창단 및 교육’ 등 정규 교육만으로 부족한 청소년의 음악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명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노력중이다.¹⁰¹⁾

5) 합의 및 성찰

예술인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들이 빠져있어 분쟁 발생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이루어진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작성의무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가 마련이 되었으며 직업적 권리가 체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방식이 전적으로 예술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특정 예술 활동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접근방법과 함께 실태적으로 예술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09년부터 시작된 논의가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관련 규정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복지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은 마련되었으나

101)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www.gsymphony.org/>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며, 예산의 확보가 충분치 않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의 접수방법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예술인의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들은 ‘신청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하는 방법이 까다롭고, 행정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처리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청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아직 없는 관계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고 계약만으로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본 연구의 이론연구에서 도출한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분류해 보았을 때 다섯 가지 정책 수단에 적절히 잘 분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 불규칙한 임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 활동의 지속이 힘든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사업들이 보강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예술인공제회와 예술인금고의 설립 및 운영, 문화예술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 예술인의 실적물 관리를 위한 플랫폼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과 지역별 도립, 시립 예술단 노동조합 등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예술인의 이해를 대변한다. 예술의 전당 노동조합은 공공공연장 자체의 노동조합으로 공공공연장의 서비스 향상과 노동자의 이해 대변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예술인 노동조합은 산별노동조합의 형태로 결성되어 장르별 예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단속적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준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유니온 조직들이 결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예

술인들이 자신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자율·자족의 성격을 지니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있어 문화예술분야가 갖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법인격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공적 목적을 포함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형태 모두 문화예술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문화예술분야의 법인화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보다 설립의 용이함과 공공적인 이미지 때문에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의 까다로움으로 그 수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설립 절차의 간소화와 예술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성격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풍부한 문화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확산되고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문화 참여 욕구 증대에 발맞춰 주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기획·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에도 기여한다. 2019년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예술인 사회적기업 간 다각적 협업 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12월 28일에 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업률이 66.2%인데 반해 예체능계열은 63%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대상자의 월 평균소득도 248.6만원이었으나 예체능계열은 187.1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²⁾ 문화예술분야의 실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예술단체 법인화를 활성화시켜 문화예술분야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102) 에듀진 기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9> (2018.12.28.)

3. 예술인 복지 제도에 관한 예술인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대상 및 표본의 특성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초기 설문 설계 시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13개 분야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를 묶어 7개의 영역으로 하고,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의한 3가지의 예술 활동 유형,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한계로 인하여 예술 활동 분야는 ‘음악·대중음악·국악’,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약 60일간 지면과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131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분석에 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처리는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예술인 복지 제도 인지도 여부에 대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예술인 복지 제도 만족도, 선호도에 대해서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성별에 따른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 131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64명(48.9%), 여자는 67명(51.1%)이 설문에 응하였다. 연령은 30대가 55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43명(32.8%), 40대가 30명(22.9%), 50대가 3명(2.3%)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 유형으로 구분 하였을 경우 실연이 87명(66.4%)로 가장 많았으며, 창작과 기술지원 및 기획은 각각 22명(16.8%)으로 같았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70명(53.4%), 미혼이 61명(46.6%)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대주인 경우는 55명(42.0%),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76명(58.0%)이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83명(63.4%)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26명(19.8%), 1명이 16

명(12.2), 4명 이상은 4명(3.1%), 3명인 경우는 2명(1.5%)으로 나타났다.

<표 4-13> 예술인 설문 응답자 표본의 특성

| 구 분 | 항 목 | 빈도 (명,%) | 구 분 | 항 목 | 빈도 (명,%) |
|----------|------------|--------------|-----------|--------------|--------------|
| 성 별 | 남자 | 64 (48.9) | 주거유형 | 자가 | 63 (48.1) |
| | 여자 | 67 (51.1) | | 전세(월세없음) | 19 (14.5) |
| 연 령 | 20대 | 43 (32.8) | | 보증부 월세 | 9 (6.9) |
| | 30대 | 55 (42.0) | | 월세(사글세 포함) | 26 (19.8) |
| | 40대 | 30 (22.9) | | 무상(관사, 사택 등) | 3 (2.3) |
| | 50대 | 3 (2.3) | | 기타 | 11 (8.4) |
| | 60대 이상 | 0(0)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55 (42.0) |
| 활동분야 | 음악·대중음악·국악 | 131 (100) | | 세대주 아님 | 76 (58.0) |
| 활동 유형 | 창작 | 22 (16.8) | 자녀현황 | 없음 | 83 (63.4) |
| | 실연 | 87 (66.4) | | 1명 | 16 (12.2) |
| | 기술지원 및 기획 | 22 (16.8) | | 2명 | 26 (19.8) |
| 거주지 | 제주특별자치도 | 131 (100) | | 3명 | 2 (1.5) |
| 혼인상태 | 미혼 | 61 (46.6) | | 4명 이상 | 4 (3.1) |
| | 기혼 | 70 (53.4) | - | - | - |

예술인들이 최근 일 년간 느꼈던 걱정거리(불안요인)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20.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의 어려움이 18.6%로 두 번째로 많이 느낀 걱정거리였으며, 15.2%의 비율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들이 프로젝트 방식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이로 인해 지속적이지 못한 예술 활동에 대한 불안, 규칙적이지 못한 소득으로 노후 생활의 불안까지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 건강(10.8%), 부채상환(10.0%), 주거비(9.4%), 자녀보육(양육)(5.8%), 자녀교육(5.3%), 부모부양(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최근 일 년간 느낀 걱정거리(불안요인) 분석 - 복수응답

| 항 목 | 빈 도(N) | 비 율(%) | 항 목 | 빈 도(N) | 비 율(%) |
|------|--------|--------|------------|--------|--------|
| 일자리 | 73 | 20.2 | 부채상환 | 36 | 10.0 |
| 자녀교육 | 19 | 5.3 | 부모부양 | 17 | 4.7 |
| 건강 | 39 | 10.8 | 자녀보육(양육) | 21 | 5.8 |
| 주거비 | 34 | 9.4 | 예술 활동의 어려움 | 67 | 18.6 |
| 노후생활 | 55 | 15.2 | 합계 | 361 | 100 |

2)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석

우리나라는 201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해 창작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는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술인들의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인지하고 있는 예술인은 29명(22.1%)이었으며, 102명(77.9%)은 모르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25명(19.1%)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6명(80.9%)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약 7년이 지났으나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5> 「예술인 복지법」 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지여부

| 구 분 | 항 목 | 빈도(명, %) |
|---|-------|------------|
| 2011년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다 | 29 (22.1) |
| | 모른다 | 102 (77.9) |
|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다 | 25 (19.1) |
| | 모른다 | 106 (80.9)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과 예술인 산재보험의 인지도 및 가입 여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점수가 2.73점으로 43.25%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31명 중 75명(57.3%)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어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예술인인 경우 자발적으로 지역·임의 가입자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인지도 평균점수가 2.54점으로 38.5%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은 41명(31.3%), 산재보험은 43명(32.8%)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예술단 단원이거나 사업장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가입을 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인지도는 평균점수가 1.54점으로 13.5%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보험의 인지도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가입여부의 경우 1명(0.8%)이 가입했다고 응답하여 낮은 인지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4-16> 사회보험 인지도 및 가입여부

| 종류 | 인지도 전체평균 (비율) | 표준화편차 | 분산 | 가입여부 | |
|-------------|---------------------|-------|-------|---------------|-------------------|
| | | | | 가입했다 (명,%) | 가입하지 않았다 (명,%) |
| 국민연금 | 2.73 (43.25%) | 1.038 | 1.078 | 75(57.3) | 56(42.7) |
| 고용보험 | 2.54 (38.5%) | 0.979 | 0.959 | 41(31.3) | 90(68.7) |
| 산재보험 | 2.54 (38.5%) | 0.979 | 0.959 | 43(32.8) | 88(67.2) |
| 예술인 산재보험 | 1.54 (13.5%) | 0.737 | 0.542 | 1(0.8) | 130(99.2)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의 인지도가 성별, 연령, 예술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의 인지도에는 차이가 없다.

<표 4-17> 성별에 따른 사회보험 인지도 차이

| 종류 | 그룹통계 | | | Levene의 등분산 검정 | | T 검정 | |
|-------------|------|------|-----------|-------------------|-------|--------|-------|
| | 성별 | 평균 | 표준화 편차 | F | 유의수준 | t | 유의확률 |
| 국민연금 | 남 | 2.69 | 1.082 | 0.982 | 0.324 | -0.405 | 0.687 |
| | 여 | 2.76 | 1.001 | | | | |
| 고용보험 | 남 | 2.58 | 1.066 | 1.813 | 0.181 | 0.673 | 0.502 |
| | 여 | 2.46 | 0.893 | | | | |
| 산재보험 | 남 | 2.59 | 1.050 | 1.096 | 0.297 | 0.416 | 0.678 |
| | 여 | 2.52 | 0.911 | | | | |
| 예술인 산재보험 | 남 | 1.56 | 0.664 | 0.734 | 0.393 | 0.311 | 0.757 |
| | 여 | 1.52 | 0.804 | | | | |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의 인지도를 분석

한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유의확률이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40대의 평균점수가 3.10점으로 52.5%정도 인지하고 있는 반면 20대의 평균점수는 2.33점으로 33.25%정도 인지하고 있어 20대보다 40대의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0대의 평균점수가 1.67점으로 전체 평균점수보다 낮으나 표본수가 3명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작으므로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는 없다.

<표 4-18>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인지도 차이

| 종류 | 연령 | 평균 | 전체평균 | 표준화편차 | F | 유의확률 |
|-------------|-----|------|------|-------|-------|---------|
| 국민연금 | 20대 | 2.33 | 2.73 | 0.919 | 5.440 | 0.001 * |
| | 30대 | 2.89 | | 1.012 | | |
| | 40대 | 3.10 | | 1.062 | | |
| | 50대 | 1.67 | | 0.577 | | |
| 고용보험 | 20대 | 2.23 | 2.52 | 0.996 | 3.052 | 0.31 |
| | 30대 | 2.67 | | 1.001 | | |
| | 40대 | 2.73 | | 0.828 | | |
| | 50대 | 1.67 | | 0.577 | | |
| 산재보험 | 20대 | 2.33 | 2.56 | 0.993 | 2.558 | 0.058 |
| | 30대 | 2.76 | | 0.962 | | |
| | 40대 | 2.60 | | 0.932 | | |
| | 50대 | 1.67 | | 0.577 | | |
| 예술인 산재보험 | 20대 | 1.37 | 1.54 | 0.536 | 1.507 | 0.216 |
| | 30대 | 1.58 | | 0.809 | | |
| | 40대 | 1.67 | | 0.802 | | |
| | 50대 | 2.00 | | 1.000 | | |

* p<0.05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의 인

지도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의 유의확률이 0.029, 산재보험의 유의확률이 0.01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평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평균점수가 3.00점(50%)으로 창작 2.27점(31.75%), 실연 2.46점(36.5%)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역시 기술지원 및 기획이 3.05점(51.25%)으로 창작 2.23점(30.75%), 실연 2.52점(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지원 및 기획 유형의 예술인들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체에 소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예술인 산재보험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인지도에는 차이가 없다.

<표 4-19>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보험 인지도 차이

| 종류 | 예술 활동 유형 | 평균 | 전체 평균 | 표준화 편차 | F | 유의확률 |
|----------|-----------|------|-------|--------|-------|---------|
| 국민연금 | 창작 | 2.50 | 2.73 | 1.012 | 1.301 | 0.276 |
| | 실연 | 2.71 | | 1.077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3.00 | | 0.873 | | |
| 고용보험 | 창작 | 2.27 | 2.52 | 0.883 | 3.651 | 0.029 * |
| | 실연 | 2.46 | | 0.986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3.00 | | 0.926 | | |
| 산재보험 | 창작 | 2.23 | 2.56 | 1.020 | 4.272 | 0.016 * |
| | 실연 | 2.52 | | 0.975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3.05 | | 0.785 | | |
| 예술인 산재보험 | 창작 | 1.68 | 1.54 | 0.894 | 0.752 | 0.473 |
| | 실연 | 1.54 | | 0.728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1.41 | | 0.590 | | |

※ p<0.0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15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인지 및 참여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5개의 항목의 ‘모른다’ 라고 대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전체 평균비율 82.49%), 예술인 의료비 지원, 자녀돌봄지원, 예술인 신문고, 상담·컨설팅,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지원, 심리상담, 권익보호 교육 등 7개의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은 12명(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인 패스에 7명(5.3%),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에 6명(4.6%)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유자)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각각 4명(3.1%), 표준계약서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3명(2.3%)으로 나타났다. 15개 항목에 대해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는 응답은 전체평균이 15.57%로 나타났다.

<표 4-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인지 및 참여여부

| 종류 | 항목 | 빈도(명,%) |
|----------------|--------------------|-----------|
| 예술활동증명 | 모른다 | 92(70.2)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27(20.6) |
| | 참여하고 있다 | 12(9.2) |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 모른다 | 91(69.5)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34(26.0) |
| | 참여하고 있다 | 6(4.6) |
| 예술인과건지원-예술로 | 모른다 | 110(84.0)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20(15.3) |
| | 참여하고 있다 | 1(0.8)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유자) | 모른다 | 100(76.3)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27(20.6) |
| | 참여하고 있다 | 4(3.1) |
| 예술인 산재보험 | 모른다 | 111(84.7)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19(14.5) |
| | 참여하고 있다 | 1(0.8) |

| | | |
|------------------------------|--------------------|-----------|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 모른다 | 109(83.2)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18(13.7) |
| | 참여하고 있다 | 4(3.1) |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모른다 | 120(91.6)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11(8.4) |
| | 참여하고 있다 | 0(0) |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 모른다 | 119(90.8)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12(9.2) |
| | 참여하고 있다 | 0(0) |
| 예술인 신문고 | 모른다 | 115(87.8)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16(12.2) |
| | 참여하고 있다 | 0(0) |
| 예술인 상담·컨설팅 | 모른다 | 111(84.7)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20(15.3) |
| | 참여하고 있다 | 0(0) |
|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 모른다 | 109(83.2)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22(16.8) |
| | 참여하고 있다 | 0(0) |
| 예술인 심리상담 | 모른다 | 113(86.3)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18(13.7) |
| | 참여하고 있다 | 0(0) |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 모른다 | 110(84.0)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21(16.0) |
| | 참여하고 있다 | 0(0) |
| 표준계약서 | 모른다 | 107(81.7)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21(16.0) |
| | 참여하고 있다 | 3(2.3) |
| 예술인 패스 | 모른다 | 104(79.4) |
|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20(15.3) |
| | 참여하고 있다 | 7(5.3) |

이론연구에서 살펴본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예술인에 적합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가입여부를 조사하였다.

노동조합의 경우 ‘알고 있다’ 고 응답한 예술인은 27명(20.6%)이나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은 8명(6.1%)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을 알고 있는 예술인은 30명(22.9%), 사회적기업을 알고 있는 예술인은 40명(30.5%)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각각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은 3명(2.3%)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지도가 높은 편도 아니며, 알고 있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사회공동체 인지도 및 가입 여부

| | 인지도 | | | | 가입여부 | | | |
|--------|-----------|-----------|-----------|-----------|-----------|-----------|-----------|-----------|
| | 알고 있다 | | 모른다 | | 가입 | | 미가입 | |
| | 빈도 (명) | 비율 (%) | 빈도 (명) | 비율 (%) | 빈도 (명) | 비율 (%) | 빈도 (명) | 비율 (%) |
| 노동조합 | 27 | 20.6 | 104 | 79.4 | 8 | 6.1 | 123 | 93.9 |
| 협동조합 | 30 | 22.9 | 101 | 77.1 | 3 | 2.3 | 128 | 97.7 |
| 사회적 기업 | 40 | 30.5 | 91 | 69.5 | 3 | 2.3 | 128 | 97.7 |

3)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4가지 항목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4가지 항목으로는 전반적인 만족도,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서비스의 적정성,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 필요성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점수가 2.07점으로 26.75%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3.56점으로 64%정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업 신청 및 관련 내용 검색 등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점에 인한 것으로 해

석된다. 사회보장 및 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2.30점으로 32.5%가 적정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4.17점으로 나타나 79.25%정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

| 문항 | 전체평균 (비율) | 표준화편차 | 분산 |
|------------------------|------------------|-------|-------|
| 예술인 복지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 2.07 (26.75%) | 0.776 | 0.603 |
|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 3.56 (64%) | 0.561 | 0.741 |
| 사회보장 및 서비스가 적정하다 | 2.30 (32.5%) | 0.781 | 0.611 |
|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 4.17 (79.25%) | 0.970 | 0.941 |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 연령, 예술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

<표 4-23> 성별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 차이

| 문항 | 그룹통계 | | | Levene의 등분산 검정 | | T 검정 | |
|------------------------|------|------|-----------|-------------------|-------|-------|-------|
| | 성별 | 평균 | 표준화 편차 | F | 유의수준 | t | 유의확률 |
| 예술인 복지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 남 | 2.16 | 0.781 | 0.368 | 0.545 | 1.264 | 0.208 |
| | 여 | 1.99 | 0.769 | | |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 남 | 3.58 | 0.887 | 0.148 | 0.701 | 0.270 | 0.787 |
| | 여 | 3.54 | 0.841 | | | | |

| | | | | | | |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가 적정하다 | 남 | 2.33 | 0.691 | 4.700 | 0.032 | 0.434 | 0.665 |
| | 여 | 2.27 | 0.863 | | | | |
|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 남 | 4.25 | 0.959 | 0.015 | 0.903 | 0.946 | 0.346 |
| | 여 | 4.09 | 0.981 | | | | |

연령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를 분석하면 사회보장 및 서비스의 적정성의 유의확률이 0.0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20대의 평균점수가 2.58점으로 39.5%가 적정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30대는 2.16점(29%), 40대는 2.17점(29.25%), 50대는 2.00점(25%)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보장 및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여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의 20대 평균점수는 3.42점(60.5%), 30대의 평균점수는 3.51점(62.75%)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40대의 평균점수는 3.90점(72.5%)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홍보 및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의 접근과 사용이 용이한 20대가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4> 연령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 차이

| 문항 | 연령 | 평균 | 전체평균 | 표준화편차 | F | 유의확률 |
|--------------------|-----|------|------|-------|-------|-------|
| 예술인 복지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 20대 | 2.26 | 2.07 | 0.759 | 1.403 | 0.245 |
| | 30대 | 2.02 | | 0.757 | | |
| | 40대 | 1.90 | | 0.803 | | |
| | 50대 | 2.00 | | 1.000 | | |

| | | | | | |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 20대 | 3.42 | 3.56 | 0.731 | 2.519 | 0.061 |
| | 30대 | 3.51 | | 0.940 | | |
| | 40대 | 3.90 | | 0.845 | | |
| | 50대 | 3.00 | | 0.000 |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가 걱정하다 | 20대 | 2.58 | 2.30 | 0.763 | 2.986 | 0.034 * |
| | 30대 | 2.16 | | 0.739 | | |
| | 40대 | 2.17 | | 0.791 | | |
| | 50대 | 2.00 | | 1.000 | | |
|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 20대 | 4.05 | 4.17 | 0.975 | 0.786 | 0.504 |
| | 30대 | 4.15 | | 1.026 | | |
| | 40대 | 4.33 | | 0.884 | | |
| | 50대 | 4.67 | | 0.577 | | |

※ p<0.05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4가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

<표 4-25>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예술인 복지 수준의 만족도 차이

| 문항 | 활동 유형 | 평균 | 전체 평균 | 표준화 편차 | F | 유의확률 |
|------------------------|-----------|------|-------|--------|-------|-------|
| 예술인 복지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 창작 | 2.14 | 2.07 | 0.710 | 0.937 | 0.395 |
| | 실연 | 2.10 | | 0.822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1.86 | | 0.640 |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 창작 | 3.68 | 3.56 | 0.839 | 0.293 | 0.747 |
| | 실연 | 3.54 | | 0.818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3.50 | | 1.058 | | |

| | | | | | |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가 적절하다 | 창작 | 2.41 | 2.30 | 0.666 | 0.317 | 0.729 |
| | 실연 | 2.29 | | 0.820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2.23 | | 0.752 | | |
|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 창작 | 4.23 | 4.17 | 0.869 | 0.941 | 0.393 |
| | 실연 | 4.22 | | 0.958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3.91 | | 1.109 | | |

4)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복지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예술인에게 확대 적용 가능한 제도 중 12개를 선정하여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2개의 항목 모두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의 평균점수가 4.44점(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조사했던 최근 일 년간 느낀 걱정거리의 ‘일자리’와 ‘예술 활동의 어려움’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프로젝트 형태의 작업이 대부분인 예술인들에게는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의 지원이 일자리 창출, 예술 활동의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예술 활동 중단 시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평균점수가 4.41점(85.25%)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급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보장제도’가 4.27점,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가 4.26점, ‘4대 보험료 지원제도’, ‘질병·상해 시 의료비 지원’, ‘질병·상해 시 생활비 보상 지원’, ‘주거 안정 지원제도’가 4.24점, ‘예술인 산재보험’ 4.19점,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4.18점, ‘직업상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제도’가 4.17점으로 나타났다. ‘일반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가 4.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77.75%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치이므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표 4-26>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선호도

| 문항 | 전체평균(비율) | 표준화편차 | 분산 |
|--------------------------------|--------------|-------|-------|
| 4대 보험료 지원제도 | 4.24(81%) | 0.842 | 0.709 |
| 예술인 산재보험 | 4.19(79.75%) | 0.878 | 0.771 |
| 국민기초보장제도 (생계·주거) | 4.27(81.75%) | 0.849 | 0.720 |
| 질병·상해 시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포함) | 4.24(81%) | 0.876 | 0.767 |
| 질병·상해 시 생활비 보상 지원제도 | 4.24(81%) | 0.912 | 0.832 |
|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 4.26(81.5%) | 0.856 | 0.732 |
|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 4.18(79.5%) | 0.935 | 0.874 |
| 주거 안정 지원제도 (주택자금대출, 임대주택 등) | 4.24(81%) | 0.918 | 0.844 |
| 일반 생활자금 대출서비스 | 4.11(77.75%) | 0.979 | 0.958 |
| 직업상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제도 | 4.17(79.25%) | 0.986 | 0.972 |
| 예술 활동 중단 시 실업급여 지원제도 | 4.41(85.25%) | 0.902 | 0.813 |
|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 | 4.44(86%) | 0.842 | 0.709 |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성별, 연령, 예술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 분석 결과를 보면 ‘예술인 산재보험’, ‘국민기초보장제도’,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주거 안정 지원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여 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유의미하게 나타난 4개 항목 남성의 평균점수가 더 높아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선호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다.

<표 4-27> 성별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 차이

| 종류 | 그룹통계 | | | Levene의 등분산 검정 | | T 검정 | |
|-------------------------------|------|------|-----------|-------------------|-------|-------|---------|
| | 성별 | 평균 | 표준화 편차 | F | 유의수준 | t | 유의확률 |
| 4대 보험료 지원제도 | 남 | 4.39 | 0.726 | 1.715 | 0.193 | 1.965 | 0.052 |
| | 여 | 4.10 | 0.923 | | | | |
| 예술인 산재보험 | 남 | 4.36 | 0.764 | 0.248 | 0.619 | 2.178 | 0.031 * |
| | 여 | 4.03 | 0.953 | | | | |
| 국민기초보장 제도 (생계·주거) | 남 | 4.44 | 0.753 | 0.000 | 0.997 | 2.281 | 0.024 * |
| | 여 | 4.10 | 0.907 | | | | |
| 질병·상해 시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포함) | 남 | 4.28 | 0.845 | 0.000 | 0.988 | 0.568 | 0.571 |
| | 여 | 4.19 | 0.909 | | | | |
| 질병·상해 시 생활비 보상 지원제도 | 남 | 4.38 | 0.864 | 0.018 | 0.893 | 1.613 | 0.109 |
| | 여 | 4.12 | 0.946 | | | | |
|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 남 | 4.38 | 0.807 | 0.237 | 0.627 | 1.517 | 0.132 |
| | 여 | 4.15 | 0.892 | | | | |
|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 남 | 4.38 | 0.807 | 0.125 | 0.724 | 2.334 | 0.021 * |
| | 여 | 4.00 | 1.015 | | | | |
| 주거 안정 지원제도 | 남 | 4.41 | 0.791 | 0.018 | 0.893 | 2.092 | 0.038 * |
| | 여 | 4.07 | 1.005 | | | | |
| 일반 생활자금 대출서비스 | 남 | 4.22 | 0.983 | 0.714 | 0.400 | 1.282 | 0.202 |
| | 여 | 4.00 | 0.969 | | | | |
| 직업상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제도 | 남 | 4.28 | 0.967 | 0.271 | 0.604 | 1.289 | 0.200 |
| | 여 | 4.06 | 0.998 | | | | |

| | | | | | | | |
|----------------|---|------|-------|-------|-------|--------|-------|
| 실업급여 지원제도 | 남 | 4.39 | 0.847 | 0.026 | 0.872 | -0.267 | 0.790 |
| | 여 | 4.43 | 0.957 | | | | |
|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 | 남 | 4.48 | 0.776 | 0.042 | 0.838 | 0.653 | 0.515 |
| | 여 | 4.39 | 0.904 | | | | |

※ p<0.05

연령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면 12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연령별 평균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40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0대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며, 복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28> 연령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 차이

| 종류 | 연령 | 평균 | 전체평균 | 표준화편차 | F | 유의확률 |
|---------------------|-----|------|------|-------|-------|-------|
| 4대 보험료 지원제도 | 20대 | 4.07 | 4.24 | 0.910 | 2.288 | 0.082 |
| | 30대 | 4.40 | | 0.735 | | |
| | 40대 | 4.13 | | 0.900 | | |
| | 50대 | 5.00 | | 0.000 | | |
| 예술인 산재보험 | 20대 | 4.07 | 4.19 | 0.961 | 0.729 | 0.537 |
| | 30대 | 4.27 | | 0.849 | | |
| | 40대 | 4.17 | | 0.834 | | |
| | 50대 | 4.67 | | 0.577 | | |
| 국민기초보장제도 (생계·주거) | 20대 | 4.19 | 4.27 | 0.852 | 0.890 | 0.448 |
| | 30대 | 4.27 | | 0.870 | | |
| | 40대 | 4.30 | | 0.837 | | |
| | 50대 | 5.00 | | 0.000 | | |

| | | | | | | |
|-------------------------------|-----|------|------|-------|-------|-------|
| 질병·상해 시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포함) | 20대 | 4.21 | 4.24 | 0.861 | 0.345 | 0.793 |
| | 30대 | 4.27 | | 0.932 | | |
| | 40대 | 4.17 | | 0.834 | | |
| | 50대 | 4.67 | | 0.577 | | |
| 질병·상해 시 생활비 보상 지원제도 | 20대 | 4.12 | 4.24 | 0.931 | 0.604 | 0.613 |
| | 30대 | 4.27 | | 0.952 | | |
| | 40대 | 4.33 | | 0.844 | | |
| | 50대 | 4.67 | | 0.577 | | |
|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 20대 | 4.12 | 4.26 | 0.905 | 1.042 | 0.376 |
| | 30대 | 4.25 | | 0.821 | | |
| | 40대 | 4.43 | | 0.858 | | |
| | 50대 | 4.67 | | 0.577 | | |
|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 20대 | 4.02 | 4.18 | 0.988 | 1.699 | 0.171 |
| | 30대 | 4.13 | | 0.944 | | |
| | 40대 | 4.47 | | 0.819 | | |
| | 50대 | 4.67 | | 0.577 | | |
| 주거 안정 지원제도 | 20대 | 4.02 | 4.24 | 1.012 | 1.652 | 0.181 |
| | 30대 | 4.25 | | 0.907 | | |
| | 40대 | 4.47 | | 0.776 | | |
| | 50대 | 4.67 | | 0.577 | | |
| 일반 생활자금 대출서비스 | 20대 | 4.00 | 4.11 | 0.926 | 1.970 | 0.122 |
| | 30대 | 4.00 | | 1.072 | | |
| | 40대 | 4.37 | | 0.850 | | |
| | 50대 | 5.00 | | 0.000 | | |
| 직업상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제도 | 20대 | 4.09 | 4.17 | 0.947 | 1.615 | 0.189 |
| | 30대 | 4.05 | | 1.061 | | |
| | 40대 | 4.40 | | 0.894 | | |
| | 50대 | 5.00 | | 0.000 | | |
| 실업급여 지원제도 | 20대 | 4.37 | 4.41 | 0.952 | 0.907 | 0.440 |
| | 30대 | 4.33 | | 0.982 | | |
| | 40대 | 4.57 | | 0.679 | | |
| | 50대 | 5.00 | | 0.000 | | |

| | | | | | | |
|----------------|-----|------|------|-------|-------|-------|
|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 | 20대 | 4.53 | 4.44 | 0.882 | 1.255 | 0.293 |
| | 30대 | 4.29 | | 0.875 | | |
| | 40대 | 4.50 | | 0.731 | | |
| | 50대 | 5.00 | | 0.000 | | |

※ p<0.05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를 예술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12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과 마찬가지로 예술 활동 유형도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술 활동 유형 중에서 창작 유형의 예술인들의 평균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연을 하는 예술인이나 기술지원 및 기획을 하는 예술인보다 사업장이나 단체에 소속될 가능성이 낮으며 결과물(저작물)에 의해 소득이 결정됨으로 복지 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9>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선호도 차이

| 종류 | 예술 활동 유형 | 평균 | 전체 평균 | 표준화 편차 | F | 유의확률 |
|-------------------------|-----------|------|-------|--------|-------|-------|
| 4대 보험료 지원제도 | 창작 | 4.23 | 4.24 | 0.869 | 0.479 | 0.620 |
| | 실연 | 4.29 | | 0.820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09 | | 0.921 | | |
| 예술인 산재보험 | 창작 | 4.14 | 4.19 | 0.889 | 0.776 | 0.462 |
| | 실연 | 4.25 | | 0.879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00 | | 0.873 | | |
| 국민기초보 장제도 (생계·주거) | 창작 | 4.41 | 4.27 | 0.666 | 1.084 | 0.341 |
| | 실연 | 4.29 | | 0.861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05 | | 0.950 | | |

| | | | | | | |
|----------------------------|-----------|------|------|-------|-------|-------|
| 질병·상해 시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포함) | 창작 | 4.41 | 4.24 | 0.666 | 1.250 | 0.290 |
| | 실연 | 4.25 | | 0.852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00 | | 1.113 | | |
| 질병·상해 시 생활비 보상 지원제도 | 창작 | 4.41 | 4.24 | 0.590 | 0.442 | 0.644 |
| | 실연 | 4.22 | | 0.908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18 | | 1.181 | | |
|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 창작 | 4.32 | 4.26 | 0.716 | 0.073 | 0.930 |
| | 실연 | 4.24 | | 0.876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27 | | 0.935 | | |
|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 창작 | 4.27 | 4.18 | 0.827 | 0.124 | 0.884 |
| | 실연 | 4.16 | | 0.963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18 | | 0.958 | | |
| 주거 안정 지원제도 | 창작 | 4.36 | 4.24 | 0.658 | 0.264 | 0.769 |
| | 실연 | 4.22 | | 0.970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18 | | 0.958 | | |
| 일반 생활자금 대출서비스 | 창작 | 4.27 | 4.11 | 0.767 | 1.324 | 0.270 |
| | 실연 | 4.14 | | 0.967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3.82 | | 1.181 | | |
| 직업상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제도 | 창작 | 4.32 | 4.17 | 0.780 | 0.424 | 0.655 |
| | 실연 | 4.16 | | 0.999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05 | | 1.133 | | |
| 실업급여 지원제도 | 창작 | 4.55 | 4.41 | 0.671 | 0.499 | 0.608 |
| | 실연 | 4.41 | | 0.909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27 | | 1.077 | | |

| | | | | | | |
|----------------|-----------|------|------|-------|-------|-------|
|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 | 창작 | 4.50 | 4.44 | 0.913 | 0.143 | 0.867 |
| | 실연 | 4.44 | | 0.803 | | |
| | 기술지원 및 기획 | 4.36 | | 0.953 | | |

5) 함의 및 소결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일 년간 가장 많은 불안요인은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요인은 예술 활동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프로젝트 형태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불안정하고 단속적인 고용과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인한 것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다음으로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법을 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예술인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복지법은 22.1%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단은 19.1%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예술인들도 국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리터러시를 갖고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체제 수단인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예술인 산재보험의 인지도와 가입여부를 조사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어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어 43.25%정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75명이 가입하고 있었다. 20대보다 40대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8.5%정도 인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은 41명이 산재보험은 43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예술단 단원이거나 사업장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가입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 활동 유형에 따라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 실연을 하는 예술인보다 기술지원 및 기획을 하는 예술

인들의 인지도가 높았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13.5%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보험의 인지도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82.49% 비율로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지도가 낮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공동체 인지도의 경우, 노동조합을 알고 있는 비율은 20.6%, 협동조합은 22.9%, 사회적기업은 30.5%로 나타났다. 인지도에 비해 가입비율은 노동조합이 6.1% 협동조합이 2.3%, 사회적기업이 2.3%로 나타나 인지는 하고 있으나 가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6.75%였으며, 사회보장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64%정도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서비스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32.5%가 적정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79.25%가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항목 중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에 대한 항목의 연령별 평균점수 보면 20대보다 40대가 더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울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홍보 및 사업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2개의 복지 제도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2개 항목 모두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특히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예술 활동 중단 시 실업급여 지원제도’가 85.2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에 대한 예술가들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 활동이 많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는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의 지원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소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프로젝트가 끝나면 실업과 연결되므로 ‘예술 활동 중단 시 실업급여 지원제도’가 두 번째 선호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예술인의 요구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 연령, 예술 활동 유형에 따른 선호도에는 차

이가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40대와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평균점수가 높아 이들이 복지 제도에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전문가 설문 AHP 분석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1977년 T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AHP 분석법은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다.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에 적용되어 여러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 시키고, 가중치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상위 계층의 요소와 하위 계층의 요소들로 나누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 comparison)를 통해 선호도, 중요도 또는 가능성이 우선순위로 제시되는 전형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표본의 특성 및 지표체계

본 연구는 이론연구,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 현황,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을 AHP 분석법을 이용하여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평소 문화예술행정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11일까지(약 41일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는 설문 의뢰 후 확인과 재촉을 하였으나 응답이 지연되는 전문가 분들의 설문은 유보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AHP 설문조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설문지 내의 항목 설명 및 표시 방법의 예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설문조사는 대면조사 및 인터넷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26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한 25명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상용하였다.

분석에 상용된 전문가 25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구분 하였을 경우 남자가 14명(56%), 여자가 11명(44%), 거주지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이 2명(8%), 제주특별자치도 23명(92%)이다. 연령의 경우 40대가 10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7명(28%), 30대가 6명(24%), 60대 이상이 2명(8%)이었다. 학력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17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7명(28%), 고등학교 졸업 1명(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예술인이 11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8명(32%), 교수 4명(16%), 연구원 2명(8%)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응답자의 평균 근무연수는 약 15.5년으로 나타났다.

<표 4-30> 전문가 설문응답자 표본의 특성

| 구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성 별 | 남자 | 14 | 56 |
| | 여자 | 11 | 44 |
| 연 령 | 20대 이상 ~ 30대 미만 | 0 | 0 |
| | 30대 이상 ~ 40대 미만 | 6 | 24 |
| | 40대 이상 ~ 50대 미만 | 10 | 40 |
| | 50대 이상 ~ 60대 미만 | 7 | 28 |
| | 60대 이상 | 2 | 8 |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 1 | 4 |
| | 전문대 졸업 | 0 | 0 |
| | 대학교 졸업 | 7 | 28 |
| | 대학원 졸업 | 17 | 68 |
| 직 업 | 공무원 | 8 | 32 |
| | 교수 | 4 | 16 |
| | 연구원 | 2 | 8 |
| | 예술인 | 11 | 44 |

| | | | |
|-----|----------------|----|----|
| 거주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 2 | 8 |
| | 제주특별자치도 | 23 | 92 |

본 연구의 이론연구에서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원·육성·보호·조성·규제’ 다섯 가지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책수단 내에 네 가지의 정책을 구성하였다. 1단계 조사로 다섯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수단 간의 중요도를, 2단계로 각 정책수단 내의 네 가지 정책 간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정책수단 내의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단 ‘지원’의 정책 내용은 창작지원금 지원, 예술인 우대 조세감면, 실업급여 지원, 생계·자립·교육 등을 위한 대출, 융자 지원이다.

둘째, 정책수단 ‘육성’에는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술 경영인력 육성,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직업훈련 및 권익 보호 교육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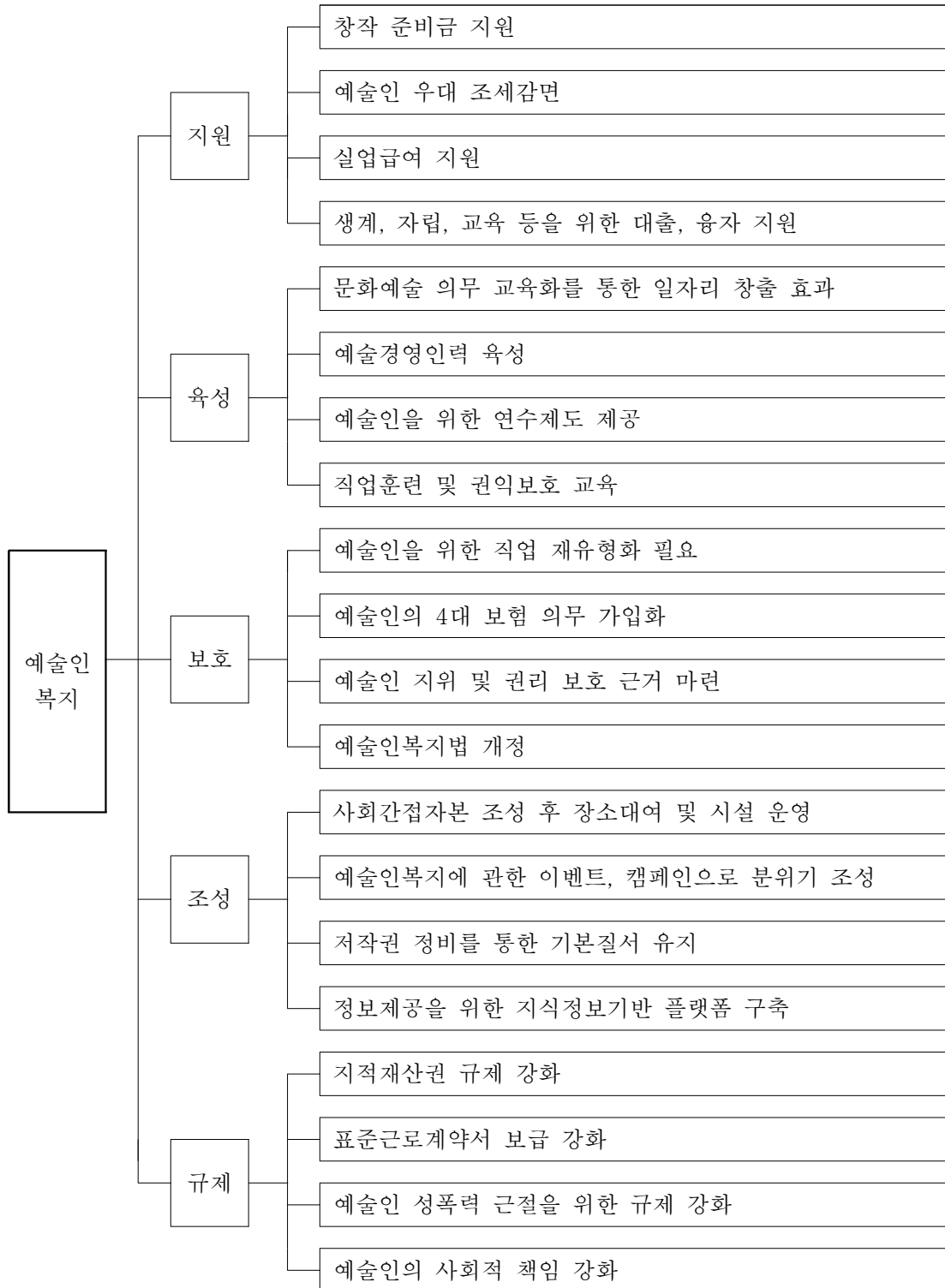
셋째, 정책수단 ‘보호’의 정책 내용으로는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예술인의 4대 보험 의무 가입화,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이다.

넷째, 정책수단 ‘조성’에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 대여 및 시설 운영,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 질서 유지,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의 정책 내용이 포함된다.

다섯째, 정책수단 ‘규제’에는 지적재산권 규제의 강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포함된다.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지표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1>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예술인 복지’ 전체 지표체계



2)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간 중요도 분석(1단계 분석)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간 중요도 분석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각 정책수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원’은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함으로써 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둘째, ‘육성’은 정부가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교육·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 셋째 ‘보호’는 예술인의 지위 및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며, 넷째, ‘조성’은 정부가 제공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규제’는 문화예술의 원활한 흐름과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표 4-3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단 지표 및 세부 설명

| 정책 수단 | 세부 설명 | |
|--------|-------|--|
| 예술인 복지 | 지원 | 지원은 민간에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개인 또는 단체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예술가, 문화예술 단체 등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에 조세감면 혜택 |
| | 육성 |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을 펼치는 생산자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교육·보호하는 정책 |
| | 보호 | 예술인이 무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유와 독립에 바탕을 두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지위 수준에 걸맞게 보호해주는 것 |
| | 조성 | 정부가 제공자로서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구축, 분위기 조성,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관련 사항 정비 등을 포함 |
| | 규제 | 규제는 문화예술의 원활한 흐름과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

예술인 복지에 대한 1단계 상위지표 5개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지원(0.2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순위로는 보호

(0.235)로 나타났으나 그 중요도가 1순위인 지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순위로 육성(0.229), 4순위는 조성(0.214)으로 나타났으나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차이가 크지 않다. 5개의 정책 수단 중 규제(0.073)가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1단계 상위지표 5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구분 | 순위 | 중요도 | 도식화 |
|----|----|-------|-----|
| 지원 | 1 | 0.250 | |
| 육성 | 3 | 0.229 | |
| 보호 | 2 | 0.235 | |
| 조성 | 4 | 0.214 | |
| 규제 | 5 | 0.073 | |

일관성 지수(C.I.)=0.01103)

3)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내 상대적 중요도 분석(2단계 분석)

2단계 분석으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하여 상위지표인 다섯 개의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에 대한 하위지표로서 총 20개를 설정하였으며, 각 정책수단의 하위지표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지원’ 내의 중요도 분석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지원’에 포함되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103) 일관성 지수 C.I.(Consistency Index)는 해당 쌍대비교 행렬이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관성 비율이 10% 이내일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규정한다(조근태 외, 2003; 임은옥 외, 2019, 재인용).

같다. 첫째, ‘창작 준비금 지원’ 은 보조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둘째,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정책은 예술 활동을 통해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 조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낮은 수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셋째, 불안정한 고용, 불규칙적이며 낮은 수입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업급여의 지원’ 이다. 넷째, 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계, 자립, 교육 등을 위한 대출, 융자 지원’ 정책이다.

<표 4-34>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지원’ 의 지표 및 설명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지 원 | 창작 준비금 지원 |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원 |
| |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 직업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
| | 실업급여 지원 | 직업의 불안정성, 불규칙한 급여 등의 해소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지원 |
| | 생계·자립·교육 등을 위한 대출, 융자 지원 |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 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융자 지원 |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지원’ 을 구성하는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창작 준비금 지원(0.445)’ 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중에서도 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순위로 중요한 지표는 ‘생계·자립·교육 등을 위한 대출 융자 지원(0.231)’ 으로 나타났다. 단속적인 고용과 불규칙적인 경제 소득으로 인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0.209)'은 중요도가 3순위로 나타났으나 2순위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 또한 예술인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간접지원인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0.116)'의 경우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지원인 직접지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5> '지원'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정책 수단 '지원' (0.250) | | | |
|--------------------------|----|-------|-----|
| 구분 | 순위 | 중요도 | 도식화 |
| 창작 준비금 지원 | 1 | 0.445 | |
|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 4 | 0.116 | |
| 실업급여 지원 | 3 | 0.209 | |
| 생계·자립·교육 등을 위한 대출, 용자 지원 | 2 | 0.231 | |
| 일관성 지수(C.I.)=0.00 | | | |

(2)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육성' 내의 중요도 분석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육성'에 포함되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공교육의 문화예술 의무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문화예술 인력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화예술단체와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계 강화를 통하여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한 예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둘째, 문화시설, 문화사업과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예술경영인력 육성' 정책이다. 셋

제, 새로운 분야 또는 미래 문화사회를 담당할 창조 인재 육성을 위해 연수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연수제도’ 이다. 넷째, 문화예술의 기술적 전문성, 창의적 전문성 접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술인을 둘러싼 환경과 법,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표 4-36>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육성’ 의 지표 및 설명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육 성 |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공교육의 문화예술 의무 교육, 문화단체나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계 강화를 통한 문화 전문화 인력 양성 및 이를 통한 예술인 일자리 창출 효과 |
| | 예술경영인력 육성 | 문화시설의 기획·행정·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 측면을 담당할 인력 육성, 문화사업과 문화단체 운영에 대한 문화경영 인재 육성 및 문화예술경영 교육 |
| |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 무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 또는 미래의 문화사회를 담당할 창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해외 연수와 교류 기회 제공 |
| |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 문화예술 관련 기술적 전문성, 창의적 접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예술인을 둘러싼 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한 권익보호 교육 제공 |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육성’ 을 구성하는 4개의 하위지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0.457)’ 이 1순위로 나타났다.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시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축소로 인한 파생효과를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순위로는 ‘예술경영인력 육성(0.304)’ 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의 부족이 문화예술시장의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문화예술분야에 소분류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의 영역이 포함되었듯이 예술경영인력에 대한 공급 및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육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0.123)’이 3순위로,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0.116)’이 4순위로 분석되었다.

<표 4-37> ‘육성’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정책 수단 ‘육성’ (0.229) | | | |
|------------------------|----|-------|-----|
| 구분 | 순위 | 중요도 | 도식화 |
|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1 | 0.457 | |
| 예술경영인력 육성 | 2 | 0.304 | |
|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 4 | 0.116 | |
|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 3 | 0.123 | |

일관성 지수(C.I.)=0.04

(3)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보호’ 내의 중요도 분석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보호’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인에 대한 ‘직업의 재유형화’를 통해 특별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둘째, ‘예술인의 4대 보험의 의무 가입’을 통하여 불안정한 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보장제도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셋째, ‘예술인의 특성 맞는 보호 근거의 마련’ 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로의 구축을 위한 정책이다. 넷째,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 으로 운용상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표 4-38>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보호’ 의 지표 및 설명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보 호 |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필요 | 독자적인 직업유형의 관점에서 ‘예술인’ 이라는 직업 재유형화. 이를 통하여 ‘예술인’ 을 위한 특별한 노동 및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 |
| | 예술인의 4대 보험 의무 가입화 | 예술인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직업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회보장 |
| |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 로 예술인의 권리, 노동, 생활조건, 적정수입 및 물리적 원조, 정신적 지지, 의무와 책임, 재능의 활용 등 예술인의 특성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근거 마련 |
| | 예술인 복지법 개정 | 법제도 형식은 잘 갖춰져 있으나 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 |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보호’ 의 하위개념을 분석하면,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0.324)’ 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술인’ 의 정의가 ‘근로자’ 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전문가들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의 직업적 재유형화를 통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0.274)’ 이 2순위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었으나 아직 미흡하며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순위로

는 ‘예술인의 4대 보험 의무 가입화(0.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급한 제도의 마련보다 예술인 직업의 재유형화로 인한 노동자로의 인정, 예술인 특성에 맞는 근거 마련이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술인 복지법 개정(0.175)’의 중요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보호’의 하위 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정책 수단 ‘보호’ (0.235) | | | |
|----------------------|----|-------|-----|
| 구분 | 순위 | 중요도 | 도식화 |
|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필요 | 1 | 0.324 | |
| 예술인의 4대 보험 의무 가입화 | 3 | 0.227 | |
|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 2 | 0.274 | |
| 예술인 복지법 개정 | 4 | 0.175 | |
| 일관성 지수(C.I.)=0.01 | | | |

(4)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조성’ 내의 중요도 분석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조성’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예술인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둘째,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 ‘정부 주도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셋째, 예술인들의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기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넷째, 문화소비뿐만 아니라 창작에 도움이 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정보 플랫폼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표 4-40>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조성’ 의 지표 및 설명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조 성 |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건립 및 장소대여에서부터 시설운영에 직접 관여 |
| |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 정부 주도의 이벤트, 캠페인 등의 진행으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
| |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 예술가의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시스템 마련 |
| |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 문화소비에 필수적인 문화정보, 창작에 도움이 되는 원천 정보,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조성’ 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0.405)’ 이 1순위로 나타났다. 예술인의 예술 창작 활동의 공간인 공공문화시설의 건립은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보장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에 예술인들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있으므로 이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순위는 ‘정보 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0.236)’ 으로 나타났다. 예술의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의 불균형’ 의 문제를 전문가들도 문화예술분야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소비에 대한 정보, 창작의 원천 정보, 지식정보 등을 포괄하는 플랫폼 구축이 예술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0.212)' 가 3순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0.147)' 으로 분석되었다.

<표 4-41> '조성' 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정책 수단 '조성' (0.214) | | | |
|------------------------------|----|-------|-----|
| 구분 | 순위 | 중요도 | 도식화 |
|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 1 | 0.405 | |
|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 4 | 0.147 | |
|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 3 | 0.212 | |
|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 2 | 0.236 | |
| 일관성 지수(C.I.)=0.00 | | | |

(5)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규제' 내의 중요도 분석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규제' 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표절, 불법 복제, 불법 유통, 불법 도용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둘째, 예술인 '표준근로계약서의 보급 강화' 를 통하여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셋째,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 하는 정책이며 넷째, 예술가로서의 전문가적 윤리와 가치관, 전문성에 부합되는 사회문화적 소명 의식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표 4-42>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규제’ 의 지표 및 설명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규 제 |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 지적재산권 침해(표절, 불법복제, 불법 유통, 불법 도용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 |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 예술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의 강화로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 |
| |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 |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예술가로서의 전문가적 윤리와 가치관, 전문성에 부합되는 사회문화적 소명의식 강화 |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중 ‘규제’ 의 4개 하위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0.408)’ 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작성의무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추가됨으로서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이 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2순위는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0.245)’ 로 분석되어, 예술인들의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순위는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0.217)’ 이며,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0.129)’ 의 중요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관한 항목이 제일 낮은 중요도로 나타난 것은 문화예술분야의 성관련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며, 성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3> ‘규제’ 의 하위지표 4개의 중요도 분석결과

| 정책 수단 ‘규제’ (0.073) | | | |
|----------------------|----|-------|-----|
| 구분 | 순위 | 중요도 | 도식화 |
|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 2 | 0.245 | |
|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 1 | 0.408 | |
|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4 | 0.129 | |
|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3 | 0.217 | |

일관성 지수(C.I.)=0.01

4) 합의 및 소결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정책제언에 반영하고자 25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분석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원(0.250)’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호, 육성, 조성, 규제’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단계 분석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하위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지원’ 의 하위지표 중에서는 ‘창작 준비금 지원(0.445)’ 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자립·교육 등을 위한 대출, 용자 지원, 실업급여 지원,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 복지 제도 선호도 조사에서 ‘창작 준비금 지원’ 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과 전문가 모두 ‘창작 지원금 지원’ 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 과 ‘생계·자립·교육 등을 위한 대출, 용자 지원’ 의 경우 예술가와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술가들은 ‘실업급여 지원’ 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생계·자립·교육 등을 위한 대출, 용자 지원’ 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제도적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정책수단 중 ‘육성’ 의 하위지표에서는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0.457)’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예술경영인력 육성’,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도 예술인이 과잉공급 되는데 반해 일자리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수단 중 ‘보호’ 의 하위지표 중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필요(0.324)’ 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예술인의 4대 보험 의무 가입화’, ‘예술인 복지법 개정’ 순으로 나타나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이전에 예술인을 노동자로의 인정, 예술인 특성에 맞는 근거 마련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수단 중 ‘조성’ 의 하위지표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0.405)’ 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의 예술 창작 활동의 기반 마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우선 보장해야한다는 이전의 분석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정책수단 중 ‘규제’ 의 하위지표 중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0.408)’ 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이 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어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상위지표와 하위지표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쌍대비교를 통해 추정된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화하여 전반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는 1단계의 중요도 값과 2 단계의 중요도 값을 곱하여 20개 하위항목의 가중치(순위)를 구한다. 종합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창작 준비금 지원(0.111)’ 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0.105)’,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0.087)’,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0.076)’, ‘예술 경영인력 육성(0.0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0.018)’,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0.016)’,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0.009)’ 로 주로 규제와 관련된 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예술인이 예술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소득을 얻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예술인 복지 지원의 바탕이 되는 법의 제정 및 지원 기관의 설립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마련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의 순위를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상위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상위수준이나 하위지표인 이 정책들은 하위수준의 결과가 나와 그 결과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15순위로 나타난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의 경우 간접지원의 성격으로 현재의 예술인 복지 수준에서는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6순위인 ‘직업 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의 경우 예술인들은 특수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이미 일정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작업 환경으로 인해 예술인 본인의 실력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다른 정책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4 통합분석 결과>

| 1단계 | | 2단계 | | 전반적 중요도 | 우선 순위 104) |
|-------------------|-------|------------------------------|-------|------------|------------------|
| 구분 | 중요도 | 구분 | 중요도 | | |
| 지원 | 0.250 | 창작 준비금 지원 | 0.445 | 0.111 | 1 |
| | |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 0.116 | 0.029 | 15 |
| | | 실업급여 지원 | 0.209 | 0.052 | 9 |
| | | 생계·자립·교육 등을 위한 대출, 융자 지원 | 0.231 | 0.058 | 7 |
| 육성 | 0.229 |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0.457 | 0.105 | 2 |
| | | 예술경영인력 육성 | 0.304 | 0.069 | 5 |
| | |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 0.116 | 0.026 | 17 |
| | |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 0.123 | 0.028 | 16 |
| 보호 | 0.235 |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필요 | 0.324 | 0.076 | 4 |
| | | 예술인의 4대보험 의무 가입화 | 0.227 | 0.053 | 8 |
| | |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 0.274 | 0.064 | 6 |
| | | 예술인 복지법 개정 | 0.175 | 0.041 | 12 |
| 구성 | 0.214 |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 0.405 | 0.087 | 3 |
| | |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 0.147 | 0.031 | 13 |
| | |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 0.212 | 0.045 | 11 |
| | |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 0.236 | 0.050 | 10 |
| 규제 | 0.073 |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 0.245 | 0.018 | 18 |
| | |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 0.408 | 0.030 | 14 |
| | |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0.129 | 0.009 | 20 |
| | |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0.217 | 0.016 | 19 |
| 일관성 지수(C.I.)=0.01 | | | | | |

104) 전반적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위항목들의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V.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과 정책 제언

1.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토대로 하여 2012년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제공하며 이를 예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가입하여 스스로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의 사례와, 복지국가의 지향요소, 예술인 활동의 경제적 특성, 설문조사를 통한 예술인 복지의 인지도·만족도·선호도를 반영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국가 부분, 예술인 협업차원, 수혜자로서 예술인의 역할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 국가 부분

복지국가로써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지방분권 및 네트워크 형성, 예술인 복지 재원의 확충과 안정적 운용, 예술인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 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예술인 복지 지방분권 및 네트워크 형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분권에 대한 의제는 계속하여 진전되

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문화예술정책 영역에서는 지역분권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서비스 기관인 재단으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의 예술인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의 신청과 지원 전달체계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온라인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인 경우에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앞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인지도’와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수준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사업을 지방의 문화예술기관, 담당행정기관으로 이전시켜 행정·복지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16조의 2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에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연계 및 지방 문화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및 전달체계를 갖추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 복지 체계의 지방분권으로 소외되어 있던 지방의 예술인들, 온라인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기존 복지 사업의 이전과 함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복지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이며, 동시·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업의 공유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인 경우 타지방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확장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과 안정적 운용

우리나라는 문화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부문의 예산도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다. 예산 점유율은 국가행정에 있어서 각 항목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 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는 주민들의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의 증대, 지방재정자율권의 확대, 지역홍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별 문화관광자원 발굴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정수, 2017, 446-449).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총 6조 4,75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19년도와 비교하면 총 5,525억 원(9.3%)이 증액된 것이다¹⁰⁵⁾. 특히 예술인 복지 부문의 예산 증액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 대상을 늘림과 동시에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대상도 2019년 5,500명에서 2020년에는 12,0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여 관련 예산이 166억 원에서 362억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문화예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질적인 직접지원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예술인과 전문가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창작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화부문 예산의 총액이나 비율의 확충보다는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 지원 기반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정부 주도적 예산과 기금 등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특히 ‘예술인 복지’는 사회보장제도로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문화예산 중

105) 한국일보 기사. “2020년 예산안 편성 문체부 예산안 편성 첫 6조원대... 예술인 복지 강화”,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08291475013970>. (2019.08.29.)

문예진흥, 문화 인프라 구축, 국가문화시설 운영 예산 등을 민간 지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술인 복지’ 관련 예산의 비율을 늘려 많은 예술인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체 수익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2항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예술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자체적인 수익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3)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우리나라는 2013년에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2015년에 조사의 명칭과 조사규모 및 조사방법 등을 전면 개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 두 번째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의 ‘예술인 실태조사’는 일방향 조사로 현황을 파악하며,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예술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으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으로 ‘예술인 복지’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예술인들의 요구를 취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선호하는 복지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 노동조합의 역할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노동조합은 예술인들의 권리 주장 창구를 조직화하여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인 신문고’가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플랫폼의 형태는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형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플랫폼을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하는 방안, 유튜브를 이용한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의 실시간 스트리밍, 행정담당자·전문가·예술인의 화상회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화상회의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예술인 의견수렴 플랫폼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예술인 협업차원

예술인 복지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예술인 간의 협업을 통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 예술인 노동조합, 유사조직인 유니온의 결성 및 가입 활성화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이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국·공립 예술단체이거나 문예회관 소속의 예술단체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예술인들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로젝트 중심의 단속적 예술 활동을 하는 비정규직으로 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투쟁·쟁의의 이미지가 강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예술인 자신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산별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도 예술인들의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노동조합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이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가입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을 중심으로 결성되기에 적합한 형태인 유니온 조직의 활성화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할 필요하다. 최근 준 노동조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니온 조직들이 예술인을 중심으로 생겨나면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등을 제기하며 집단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노동권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니온 조직을 비롯하여 여러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문화예술노동연대’를 결성하여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과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해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조합 활동의 예로서 이러한 움직임과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쟁·쟁의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요구하고 보호하는 대변 조직으로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이 예술인의 이해 대변의 활동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와 미국의 예술인 노동조합이 예술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보험 사업으로 의료보장과 노후보장까지 하고 있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2) 문화예술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 및 전환

문화예술분야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의 수가 한정적이며 예술 활동 특성상 프로젝트 형태의 활동으로 인해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아 고용이 단속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고용의 어려움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이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안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적합하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기에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고,

일반예술단체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립 이후 안정적으로 예술 시장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계층 간 빈부격차의 완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인한 신뢰회복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더불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3) 수혜자로서 예술인의 역할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로서, 공공재인 예술을 생산하는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예술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수준 높은 예술 활동으로 예술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가정책에 순응 및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막상 수혜자인 ‘예술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없으면 그 성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알고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는 예술인들의 수가 많았다. 이는

정책의 실패를 가지고 오며, 추후 예술인 복지 제도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인들은 자신의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를 갖고 예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상담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예술인들만의 창의적이며 논리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예술인 복지’의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2) ‘예술인’의 수준 높은 창작 활동을 통한 지위 향상

일반 시민들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문화적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동적인 문화소비를 넘어 창작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커지고 있어 문화행정의 문화복지에 대한 지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과 일반 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 간에 딜레마가 형성되고 있다.(김정수, 2017)

문화부문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소수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과 다수의 일반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창작 활동을 통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술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수(2017)는 문화행정의 목표를 “최고수준의 최대다양한 문화예술을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최고수준’의 예술이 ‘다양하게’ 생산되어 ‘최대다수’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한 창작 활동 및 그 결과물이 예술인 본인만 만족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수준이 향상된 일반 시민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술인에 대한 예술 창작 지원으로 일반 시민의 문화복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인의 수준 높은 예술 활동으로 일반 시민의 창작 욕구에 부응하며,

예술인 자신의 실력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한 창작 활동을 통하여 전문 예술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예술 창작을 위한 정부 지원금에 무임승차하는 예술인은 없어야 할 것이다.

(3)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예술인 스스로 공공재인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으로 인하여 ‘문화적 공공의 부(cultural common wealth)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목적은 ‘수혜를 받는 예술가들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것(정홍익, 2001, 김정수 2017: 596, 재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들은 이러한 공적지원에 대한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창작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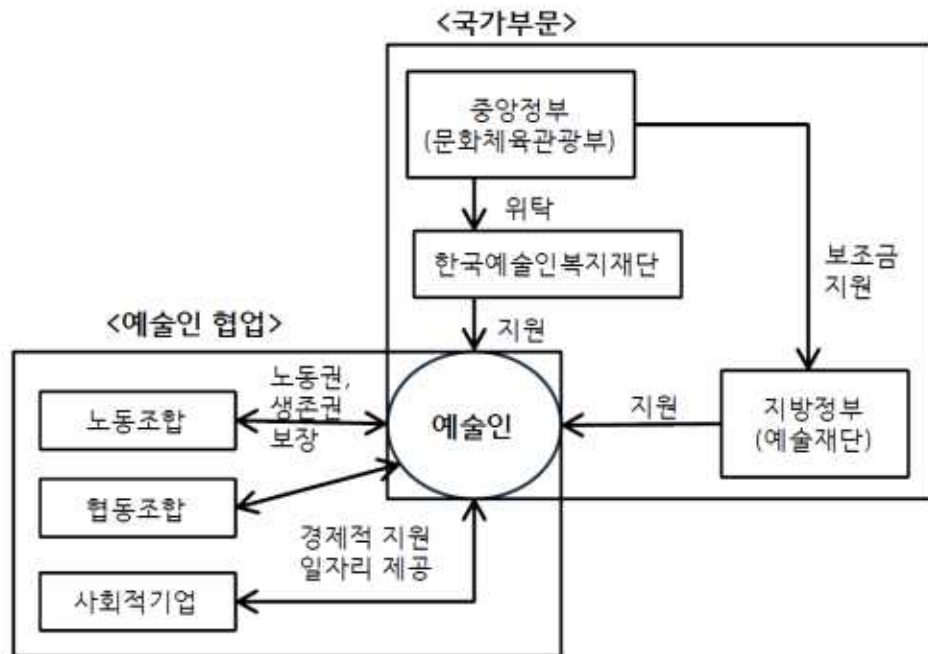
공적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여 예술 창작 활동이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며 일반 시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즉 문화소외계층,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지식의 폭넓은 공유 등을 통하여 예술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는 공적지원을 받는 예술인들이 가져야할 필수요소일 것이다. 공적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의 특성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인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예술인 자긍심 고취를 통한 국가정책에의 순응과 견제

국가는 예술인들의 자긍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술인들의 역할을 알아주고,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예술인도 그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부분은 순응하고,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비판적 수용, 혹은 비판적 의견 제안도 필요하다.

<그림 5-1>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이론연구와 선행연구,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예술인 복지 지원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국가 부문, 예술인 협업차원, 수혜자로서 예술인의 역할로 제시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지 정책 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예술인 복지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 개선 측면’ 과 ‘제도 개선 측면’ 으로 나누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언한 정책이 앞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제시한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제시한다.

1) 인식 개선 측면

(1) 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 인식 전환(조성)

예술은 국가의 정치에 순응을 요하는 분야이기 보다는 국가의 언로를 확장해 주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해주며, 정체성의 교육이나 문화예술을 유지하여 후 세에게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16년 문화예술계의 큰 이슈였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전제주의적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지국가적 맥락에서 문화예술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의 예술에 대한 인식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예술 창작 활동의 자유, 그리고 국가 속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조력해야 한다는 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가의 노력(조성)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단지 연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여야 한다.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연구는 국가와 민간부문 학자들이 담당하며, 그 중 사회적 합의를 얻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 정책형성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3년 프랑스의 앙페르미당 제도의 개정안을 두고 예술인들의 파업으로 인해 아비뇽 축제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파업에 프랑스인의 64%는 프랑스 여름축제들이 모두 희생되더라도 파업이 정당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제도의 현행유지를 옹호하는 응답이 79%가 나왔다.¹⁰⁶⁾ 예술의 발전은 그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며, 더불어 국민들의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술의 중추국을 지키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비추어 보았을 때 자국의 예술과 예술인을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지원과 인식이

106) ‘기획_예술인복지 해외사례_2(프랑스) 프랑스 앙페르미당 제도 : 공연예술비정규직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웹진아르코 예술의 숲 145호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필요하다. 이처럼 국가가 적극적인 이벤트와 캠페인으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

(3)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의 강화(조성)

국가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치적 순응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공관계의 역할인 PR(Public Relation)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국가의 지원이 소수의 접근 가능한 그룹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은 국민의 세금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집행과정과 정책평가나 환류과정 전반에 걸쳐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관계’라 하면 국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알리는 것이 보다 알리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 혹은 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그 후에 다시 보정되었음을 알리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쌍방향적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국가정책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이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술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였으며, 시행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낮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지방의 예술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예술인 복지 제도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의 시행과 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정책, 홍보의 다양성으로 예술인들이 정책을 인지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제도 개선 측면

(1) ‘예술인’ 을 특별 직업군으로 새롭게 규정(보호)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이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여가활동이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며, 생업으로써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업 작가·자유전문직 종사자 등 단속적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예술인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조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뜻하는 점에서 예술 활동 또한 직업 활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술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근로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술인을 특별 직업군으로 하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당장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재정비 할 수 없다면 예술인의 단속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법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단속적이라는 표현 내에 일정기간 이상이면 지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9개월 근무하면 유급과 무급 관계없이 정규직이라고 규정하여 각종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보호)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09년에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0여년만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관련 규정 정비 등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기존의 임금근로자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과 지급수준이 유연하게 되어 있다. 추가로 프랑스의 공연영상예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제도인 ‘앙페르미땅’ 제도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활동 종사지위에 따른 수급조건 및 지급기준의 차별화, 실업급여 중심에서 벗어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미달되거나, 수급기간이 종료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

업부조 제도의 도입으로 2차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제도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예술인들의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적용에 합당한 제도의 구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3) 창작지원금의 다양화(지원)

예술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모두 ‘창작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지원금’은 프로젝트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어 경제적 안정을 주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예술인의 자긍심이 고취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 비예술 경제활동으로 전업하지 않도록 해준다.

우리나라는 한국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각 지방의 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례처럼 창작준비금의 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심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예산의 한계, 지원자격의 까다로움, 서류작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준비금의 지원지격의 완화, 심사의 공정성 확보, 예산의 확보, 창작준비금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회간접자본의 건립 및 운영(조성)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시장을 통하여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을 하고자 하여도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는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문화시설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건립 및 운영은 예술인이 예술 창작 활동으로 인한 창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의 문화향수권까지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인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5)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육성)

예술인 복지의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안정화를 도모하려면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정책 연구, 정책 수립, 정책 집행 등의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예술인 사회공동체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지방정부에 배치해야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예술인 복지 제도의 안정화와 더불어 예술인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예술인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지원)

예술인복지금고는 1980년대부터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어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예술인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예술인들은 저소득과 프로젝트 단위의 단속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지위가 열악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직업특성상 대부분이 일반 금융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어 금융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서민정책금융의 경우도 창업자금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자영업자, 농·어업인 및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 예술인의 이용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여 인정에 바탕을 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예술인복지금고의 운영과 예술인 맞춤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예술인공제사업 추진(보호)

예술인의 복지관련 문제들 중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한 문제를 예술인 공제사업을 통하여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인 소득을 고려하여 자유납입 형식의 공제제도를 설계하여 운영을 한다면 예술인 노후소득보장이 일부 해소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예술인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문화정책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예술인 공제회’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인 공제회’ 조항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내에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공제회의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조성하겠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어 결국 2010년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정하지 못하였다. 이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제10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내용 중 제7호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조항이 포함되어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공제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술인들의 자활과 은퇴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인 대부분이 예술 활동의 불규칙성, 저소득으로 인해 공제 급여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아니라는 것이 공론이었다. 그러나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예술인 복지를 위한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예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기에는 법과 제도, 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

공제사업을 위한 기금을 정부 보조금 이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여러 사업들을 통하여 확보하고, 예술인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로 ‘예

술인공제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더욱 안정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이 줄어들 것이다.

(8)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육성)

예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예술인 사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즉 예술인들의 노동권 보장 및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조합과 문화예술 단체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조합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조합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책지원 및 예술인의 인식이 미흡하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체계적인 금융지원의 미흡, 까다로운 인증기준 및 절차 등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인력의 역량개발, 접근 수월성을 위한 인준 기준과 절차의 간소화,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동체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9) 예술인 우대 조세 정책 시행(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2007)’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예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복지 프로그램과 조세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감면제도, 저작권·공대권·추구권 제도의 도입 및 내실화 등이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은 자신의 예술 작품을 본인의 자산으로 생각하며, 그 제작기간, 투입된 예산 또한 가늠할 수 없기에 예술작품에 부여되는 가치는 주관적이다. 그렇기에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마련을 통해 예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활용한 세금대납 제도, 예술작품의 저작권 및 판권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금 대납으로 활용한 예술작품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공공 구매의 방식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일반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 영역의 경우 정부의 공적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사적지원이 많은 만큼 예술인들의 노동권 및 자율권이 보장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지원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금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민간의 사적지원금이 증가하면 이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용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기회가 확대하고, 추가적인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 복지 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0) 비정규직 예술인과 정규직 예술인의 차별된 지원정책의 마련(지원)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를 살펴보면 프리랜서 예술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예술인을 차별화된 정책대상으로 전제하고 종사 지위형태, 고용형태, 소득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심, 직업·계층별 분립주의가 아닌 국민통합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예술인 그룹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11) 국내·외적 시상에 대한 연금지급 제도 모색(보호)

문화예술인에 대한 국내·외 시상에서의 연금지급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야와 대회를 정하고,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스포츠분야에서 연금지급 하는 제도를 문화예술분야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실적물 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조성)

학술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에 연구논문을 쓰면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에 실린 연구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학위논문 결과물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관리한다. 문화예술작품에 대해서도 결과물, 실적물 등을 등록하면 정리해주며, 국가차원에서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물 관리에 대해 객관적 인정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에서부터 예술인 복지 제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I.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문화예술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 문화예술전통의 계승,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여러 분야에 크게 기여한다. 사회적 영향력과 다양한 사회 형식들과의 접목으로 외부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어 문화예술은 공공재,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예술인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직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 복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았다. 예술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예술인 복지 제도의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 예술인 복지 정책 수단 중요도를 조사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의 개선안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예술인 복지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작성의무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의 마련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에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단속적 비정규 임금 근로자에 속하였던 대부분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에 편입될 수 없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으로 고용보험에 편입될

수 있게 됨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예술인 복지 정책에 공적지원은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조직이 먼저 생겨났지만 이후 직종별,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이해 대변을 위해 결성되고 있다. 즉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산별노동조합과 유니온 조직의 형태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예술인들은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형태들은 특정 장르 몇몇의 산별노동조합만이 결성되어 있으며, 유니온 조직의 결성 역사가 짧아 아직도 많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투쟁·쟁의의 이미지로 인한 거부감으로 인해 가입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며, 투쟁·쟁의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고자 노력하여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대변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 자율·자족적이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조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예술인의 고용안정과 경제적 소득의 안정을 확보해 준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직으로 예술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공동체의 재결성,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예술과 예술인의 이미지가 향상되어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2019년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공공·민간·예술인 사회적 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책지원 및 예술인의 인식의 미흡,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체계적인 금융지원의 미흡, 까다로운 인증기준 및 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활동 및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2014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에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있다. 이 조례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가 실시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음악·대중음악·국악 분야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인식도, 만족도, 선호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의 조사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렇듯 두 유형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예술인 복지 제도의 실태와 요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는 국가가 예술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가 부문에서의 지원과 의지, 예술인 사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노력, 그리고 수혜자로서의 예술인의 역할이 수반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즉 국가는 예술인을 위한 현실적이며 예술인의 요구에 맞는 복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복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며, 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운용, 예술인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는 공적지원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예술인들 자체적으로도 자율적이며 자급적인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예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적지원과 민간의 역할로 인한 수혜자인 예술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순응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높은 수준의 예술 창작 활동으로 국가 문화의 발전과 일반시민의 문화향수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체계 개선과 함께 예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을 제안하였다. 예술인 복지 지원에 대한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예술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해주며, 정체성의 교육이나 문화예술을 유지함으로써 후세와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라는 인식을 국가가 가져야 한다. 이로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위해 노력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을 ‘근로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특별 직업군으로 새롭게 규정하며, 창작지원금의 다양화로 인해 예술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 활동의 장인 문화예술 관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양성, 예술인복지금고 설립 및 운용, 예술인공제사업 추진, 예술인 우대 조세 정책 시행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에 이어 최근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예술과 예술인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지원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추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자의 지역적, 예술 활동 분야의 한계로 인해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술 활동 분야를 음악·대중음악·국악으로 한정지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실태와 주요 국가의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 것이므로,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셋째,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므로 예술이나 예술가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넷째, 문제의 제기나 연구의 동기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으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결과는 산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한 추후 과제로 첫째, 문화예술인 사회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조직인 것으로 연구 되었으므로 이는 더욱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예술인 복지 제도의 지방정부 이관에 대한 제도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의 국가 부문으로 지방분권과 네트워크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행정과 복지의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 이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keyword> 복지국가, 예술인 복지, 예술인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노동조합, 예술인 협동조합, 예술인 사회적 기업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고용노동부 (2018). 「2017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서울: 열림기획(주).
- 김경옥 (2011). 「문화정책과 재원조성」, 서울: 논형.
- 김영모 (2006). 「한국사회보험개혁론」, 서울: 한복연 출판부.
- 김정수 (2017).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서울: 집문당.
-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관측」, 서울: 학고재.
- 김명철 (역)(2018).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와이즈베리. 원저: Michael J. Sandel ,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New York: International Creative Management, 2009).
- 박석돈 (2010).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 박세연 (역)(2009). 「예술가는 왜 가난해야 할까: 예술경제의 패러독스」, 경기: 21세기북스. 원저: Hans Abbing, *Why Are Artists Poor?* (Amsterdam University Press: Amo Agency Korea, 2009)
- 박혜자 (2018). 「문화정책 문화행정」, 서울: 흔들의자.
- 시릴 모리나, 에릭 우댕 지음, 한의정 옮김 (2013). 「예술철학-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고양: 미술문화.
- 신정완 (2014). 「복지국가의 철학」, 서울: 인간과 복지.
- 원석조 (2017). 「사회보장론」, 파주: 양서원.
- 윤선길·정기현 (역)(2009). 「스티그마」,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원저: Goffman E..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Y: Siman & Schuster, 1963).
- 이원보 (2005).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종수 (2013). 「한국행정의 이해」, 경기: 대영문화사.
- 이학식·임지훈 (2015). 「SPSS 22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흥재 (2005). 「문화예술정책론」, 서울: 박영사.
- 정갑영 외 (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철현 (2004). 「문화정책론」, 서울: 서울경제경영.
- 정철현 (2015). 「문화정책」, 서울: 서울경제경영출판사
- 정홍익 (2008). 「문화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조효래 (2010). 「노동조합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주).
- 통계청(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가의 복지제도-미국편」, 경기: 나남.
- 홍기빈 (2014).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서울: 책세상.

2. 국내 학술지 논문

- 강익희 (2011).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KOCCA포커스」, 6: 1-23.
- 고재욱 (2011). 예술인을 위한 소수자 복지 관점에서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검토 및 정책 제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3): 261-284.
- 권혜원·권순원 (2016).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적 이해대변 가능성 탐색: 작업장 노동조합주의를 넘어서, 「한국사회」, 17(2): 77-116.
- 김경한 (2014).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예술인, 복지, 노동3권을 중심으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5(2): 55-93.
- 김노창·배형남 (2014). 문화예술분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연구」, 14(2): 167-190.
- 김동욱·김민철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유치선택방안: AHP 분석 결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57-76.
- 김상배 (2014). 프랑스의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를 위한 특별 실업보험체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국제노동브리프」, 12(5): 65-78.
- 김세훈·서순복 (2012).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체, 내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55-76.

- 김윤경·김선형 (2018).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정책적 효과성: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4(2): 333-363.
- 김응천·김재범 (2014). 예술 공론장 개념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29: 5-28.
- 김정수 (2009).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 「문화예술경영학 연구」, 2(2): 3-27.
- 김정인 (2014).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분석 기업 메세나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2: 1-23.
- 김종국 (2014).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47-256.
- 김종수 (2010). 문화영역 사회적 기업의 역할,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1(1): 97-120.
- 김주희 (2011).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산업관계연구」, 21(3): 85-121.
- 김진엽 (2016). 예술경영(Art Management)과 공공성(Publicness), 「기초조형학연구」, 17(6): 137-154.
- 김학실 (2001). 문화예술부문의 공적지원 정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7(2):319-335.
- 김현숙 (2016). 무용인들의 복지제도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3(4): 1-16.
- 김휘정 (2011).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문화정책논총」, 25(2): 89-114.
- 노문이·현택수·이정서 (2016).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440-448.
- 노시훈 (2015). 프랑스의 문화예술협동조합 연구, 「프랑스학연구」, 72: 349-369.
- 노진철 (2013).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에서 본 공공성, 「한국사회」, 14(2): 113-138.
- 민주식 (2013). 예술의 뿌리로서의 공공성: 존 듀이 예술론의 새로운 해석, 「인문연구」, 68: 175-206.
- 박소현 (2017). 문화정책의 인구정치학적 전환과 예술가의 정책적 위상, 「민족문화사연구」, 63: 830-417.

- 박시영 (2018),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대한 제언-’예술인‘의 정의 및 해외 (독일,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10(1): 50-65.
- 박준오 (2015), 예술인 협동조합 사례 연구 신당창작아카데미드 예술인협동조합‘크라트’를 중심으로, 「조형논총」, 12: 79-86.
- 박지우·오세곤 (2018). 예술인 계약환경 실태 분석: 무대예술(연극) 실연자(배우)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197-215.
- 박태정 (2019).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21」, 10(6): 629-638.
- 배채윤 (2012),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개념에 의한 문화예술공동체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5(2): 39-62.
- 서보람·장하림·현택수 (2011). 문화복지정책 발달사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9: 95-124.
- 서우석·이경원 (2019).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정책적 이해: 예술인 복지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3(1): 213-241.
- 안병한 (2019).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3): 195-232.
- 오경미 (2018). 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철학적 개념 논쟁을 넘어 현장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8: 29-51.
- 유가원 (2013). 국내·외 예술인복지제도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무용가 복지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67-89.
- 이하준 (2016). 예술의 사물화 비판과 예술의 공공성: 아도르노와 듀이의 가상적 대화, 「동서철학연구」, 80: 221-245.
- 임상오 (2007). 문화경제학이 재정학 커뮤니티에 던지는 메시지, 「재정정책론집」 9(1): 123-145.
- 임은옥·강제상·배광빈·김주경 (2019).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103-122.
- 장구보·동다예술·이해준 (2017),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사례연구-문용, 연극, 국악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문용

- 학회지」, 17(2): 1-14.
- 장효안 (2017). 사회적 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시 사회적 기업 삶과환경 가례를 중심으로, 「IDI도시연구」, 11: 107-141.
- 정지영·정호진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의 적용과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409-418.
- 조용현·장지호(2013), 무엇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형성과정, 「현대사회와 행정」, 23(1): 99-126.
- 차유리·나은영 (2012). TV드라마 메시지의 낙인 효과: 극 중 만성질환 신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관련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9(1): 178-219.
- 최미세 (2012). 유토피아-예술의 미학적 가치와 경제적 윤리의 융합, 「독어독문학」, 53(1): 397-417.
- 최인이 (2019). 문화예술산업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전략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 노동연대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7(1): 137-174.
- 한승준 (2011).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23: 157-180.
- 한혜선 (2015). 예술지원에 입각한 공공성에 대한 고찰, 「연극교육연구」, 26: 261-285.

3. 국외 학술지 논문

- Adler, Moshe (1985), "Stardom and Tal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1): 208-212.
- Eikhof, D. R. and Haunschild, A. (2007), "For art's sale! Artistic and economic logics in creative production" *Jpurnal of Organization*

- Behavior, 28: 523-538.
- Heckscher, C. and F. Carré (2006), “Strength in Networks: Employment Rights Organizations and the Problem of Co-Ordination.”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4(4): 605-628.
- Menger, P. M. (2001), “Artists as worker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Poetics*, 28: 241-254.
- Rosen, Sherwin (1981), “The Economics of Supersta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5): 845-858.
- Throsby, D. (1994),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Arts: A View of Cultur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1): 1-29.

4. 학위논문

- 강기호 (2019). 「연극예술인 복지사업의 활동특성별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육진 (2016). 「음악인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 (2017). 「공연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15). 「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 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 김혜리 (2011). 「공연예술인 복지개선을 위한 방안」,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윤아 (2018).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연구: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 (2012).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배 (20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사업 참여자들의 참여동기가 이미지, 참여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연 (2016).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완태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인재 (2013),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이 문화예술 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수 (2010). 「한국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진흥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우 (2017),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자립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서 (2019).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 (2012). 「문화예술 정책이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문화예술 지원제도에 따른 인식도 제고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연경 (2006). 「한국 문화예술노동조합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만주 (2015). 「법과 제도에 나타난 예술인 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연구보고서

- 고용노동부 (2019). 「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강희원 외 (2013).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 및 복지 개선방안 연구」, 함께

- 일하는재단, 기획재정부.
- 김용하 (2008).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 김은정·한정미·김현희·장원규·이춘원 (2017).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고용노동부.
- 김태완 외 (2009),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김태완 외 (2016).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 (2020).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노성준 (2020).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류정아 (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 (2016).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팔길이 원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성만 외 (2019). 「2019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박영정 (2006).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영정·공혜영 (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영정·박상현 (2010).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은정·박귀천·장우찬·신수정 (2019). 「예술인 산재보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박조원·이귀옥·정은정·박이슬·홍선영 (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 재단.
- 서우석 외 (2016). 「예술인 종사실태를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안주엽·황준욱(201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양건열·김희경 (2009). 「예술분야 고용시장 분석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차민경·박경신·윤지연·이정희·배성희 (201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연수현 (2018),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규석·이승엽·박영정·오혜경·임정기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 이상렬·정종은 (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훈 외 (2015).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병태·오양열 (2005).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철·서우석·강윤주·김상철·문희라 (2017),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노동연구원 (201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4). 「국제노동단체 및 주요국 노총 현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상헌·임재현 (2015),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허은영 외 (2012).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슬기 외 (2016),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6. 기타

경남일보 김홍길 교수의 경제이야기 국내 1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노리단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09>

(2015.07.26.)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2017 협동조합 사례집」

박영정 (2012. 07).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월간 노동리뷰」, pp.13.

에듀진 기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9>

(2018.12.28.)

이남표 (2007.08). 「커뮤니케이션 기술발달에 따른 방송 공공성 진화연구 - 공
공성의 철학」,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10).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4). 세계노사정소식: 프랑스 : 실업보험 개혁 노사협상, 시
작부터 난항, 「국제노동브리프」, 12(3): 93-9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프랑스 예술인 복지기관 탐방 2편:문화활동 및 공연
예술전국노조연합(FNSAC CGT Spetacle), 「예술인」.(vol.29. 2019.2)

한국일보 기사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08291475013970>

(2019.08.29.)

2018년 단체협약 개정 비교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예술의 전당,

<http://www.alio.go.kr/popReport.do?seq=2016122301337485&disclosureNo=2016122301337485>

7.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드림위드앙상블 <http://www.dreamwith.or.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뮤지션 유니온 블로그 <https://blog.naver.com/musicianunion>
미국음악예술인조합 <https://www.musicalartists.org/>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http://www.gsymphony.org/>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http://arteplay.net/xe/>
예술인 소셜유니온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tist_union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https://www.kptu.net/>
(주)에이컴퍼니 <https://www.acompany.asia/>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http://planbcoop.com/>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http://www.kbau.c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협동조합 판 [http://panculture.net/?page_id=51,](http://panculture.net/?page_id=51)
협동조합 판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panculture>

Abstract

There is a public misunderstanding that ‘Art comes from poverty’ in relation to artistic activities. This the fixed idea justifies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artists, meaning that poverty is sublimated into art and artworks. In 2011,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a young artist died alone after suffering from extreme hardships. In addition, the "2018 Artists Status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8 shows that artists earned an average of 12.81 million won per year from their artistic activities, a lower figure than the annual minimum wage income of 18.88 million won in the same year. As such, artists are struggling economically.

Artists earn economic income through artistic activities, so they should view artistic activity as labor to be accompanied by appropriate economic cost and guarantee of statu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efine artists as “workers”. Because they are workers, artists should not be poor. They are also protected as a nation and have the right to enjoy economic stability and satisfaction of life. Thus it is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artist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objectives. We analyze the welfare status of artists in Korea and consult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in order to get sugges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ystem of welfare policies for artists and to suggest a policy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artists by collecting opinions through a survey of artists and experts.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ar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n those of other goods. That is,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technological advances do not improve productivity, and workers face information

imbalance, high transaction costs, monopolies, and public property characteristics. Despite the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of the arts labor market, artists value internal values, and the production method of the project type causes artists to oversupply the market. This leads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artists.

In Korea, “Artist” is defined in the 「Art & Culture Promotion Act」, 「Copyright Act」, and 「Artist Welfare Act」. Artists with a large number of professional intermittent and irregular jobs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result, they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and are therefore placed in a blind spot for welfare.

In the case of welfare support for artists in which public support is essential, securing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support for artists is an essential factor. The publicity of art is recognized at the existential and normative level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art is a public good and a public interest by combining art's social influence with various social forms, and it has external effects and economic value. It can further be said that it possesses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welfare of artists.

For the proposal to improve the policy system for 'Artist Welfare', five policy measures were derived for the welfare of artists, 'Support, Cultivation, Protection, Composition, and Regulation.' Based on these criteria, further research was conducted.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system of the overall welfare of artists, different from the specific and narrow scope of the study since 2011. Based on this, the artist welfare policy system was proposed not only for the unilateral support of the state, but also for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and the role of the beneficiary artists. Thi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artist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welfare of the artists.

It is meaningful to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artists in Korea by finding out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the systems and detailed policies implemented for the welfare of artists in major countries. To this end, analysis and comparison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France,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Not all four countries existed in the 'Welfare Act for Artists', which gives artists a special status. Only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enacted such special laws, laying a basis for the social security of artists.

France operates a separat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rtists, and it supports artists who receive copyright fees and those who are hired. In addition, it is the only country that operates “Intermittent du spectacle,” a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non-regular performing arts class. The artist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s designed to be flexible and generous, but it is not applied to unemployment insurance as a self-employed person in the case of a service contract.

Also providing a high level of social security services, Germany offers artists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benefits. They are guaranteed both by the general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rtists. In addition, the pension system is operated separately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economic security benefits as part of the life cycle policy.

The Netherlands, characterized by a well-established minimum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form of public assistance, guarantees the basic life of artists in the form of “Wet Werk en Inkomen Kunstenaars, WWIK.”

In addition to public support, France is also active in the activities of trade unions and co-operatives, which are artist social communities. French artist unions appear to be actively involved in policy-making

processes, as well as in member arguments for interests. In the United States, industrial unions of artists play a large role in artists' arguments for interests and in the role of artists' social security through the operation of insurance and credit cooperatives. Korea's trade unions deserve to refer to the U.S. case.

Korea's "Social Insurance System" is a national integrated system without distinction by job type, and it is designed around regular wage workers, making it difficult for artists to join the system. As in the case of Germany and Franc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mplement a separat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class of artists or to retype artists as workers. In additi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rtists should focus on preparing the social status of artists and providing an economic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of artistic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s.

Artists often write contracts because art has a higher percentage of freelancers than do other professions. However, artists are often damaged in the event of a dispute because they have not completed a written contract or missed vital parts within it.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Artist Welfare Act」, regulations on the obligation to create and manage a written contract for cultural and artistic services were prepared, regulations for the creation of a fair culture and arts ecosystem were prepared, and professional rights were systematized.

The epidemic of the new Coronavirus(Covid-19), which began at the end of 2019, has emerged as a problem. This has led to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As a first result, "The Artist Employment Insurance System," originally pending until May 2020,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about to take effect. For stable settlement of the system, follow-up measures such as active public relations, revitalization of standard contracts, and revision of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followed.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has prepared projects to improve the welfare treatment of artists and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s.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publicity for these projects is insufficient and they are set to close early when the respective budgets are exhausted. It also follows the principle of “applicationism” and “certification of artistic activities” is essential. Moreover, There are limitations for artist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the Internet because the application for business is online. It is worth noting that in France, social insurance can be obtained solely by contract, without proof of artistic activity.

The role of artist community, as well as of state support is an important factor for “artist welfare.” A 'trade union' can be used as an interest representation organization to improve artist welfare, relieve living anxiety, and improv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artists join in the form of industrial unions and union organizations, which can be called ‘quasi-unions,’ have been formed and operated mainly by artists characterized by freelance and intermittent labor.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based on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can be said to be suitable forms of economic activity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other words, positive effects such as job creation, community revitalization, community culture form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can solve employment-related problems in the culture and art, as well as the problems that derive from them. In addition, opportunities can be realized for promotion of social values such as culture and art and the fulfillment of the role of art as a public goo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31 artists liv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find out the recognition, satisfaction,

and preference for an artist welfare system. Its results show that the most unstable factor in recent years has been jobs, followed by difficulties in artistic activities.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being caused by unstable, intermittent employment and irregular income due to the project-type working environment.

Moreover, the overall recognition of the artist welfare system was very low. The recognition of welfare law, related organizations, and implementation projects is also all very low,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promote it.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with the artist welfare system is not high, and the majority of artists feel uncomfortable using it. This may point to the fact that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i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 geographical accessibility is poor, and only online promotions and applications are processed.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preferences of 12 welfare system items, 'Preparation for the creation of artistic activities'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upport for unemployment benefits when artistic activities were suspended.'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high demand for government support in performing artistic activities. They may also indicate that job creation,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artistic activities and economic income, can be obtained through art activities.

To discover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artist's welfare policy measures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study, a survey of 25 experts was conducted utilizing AHP analysis. The first-phase analysis examined the importance of the artist welfare policy measures and found that "Support" ranked the highest, followed by "Protection, Cultivation, Composition and Regulation." Like the demands of artists, these can be interpret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artistic activities with government support.

The overall importance of the 20 sub-indices was calculated by aggregating the estimated relative weights through the double contrast bridg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indicators of the artist welfare policy measures. "Support for creation reserve" showed the highest importance, followed by 'Creating jobs through compulsory education of culture and arts,' 'Locating places and operating facilities after establishing social overhead capital,' 'Reforming jobs for artists,' and 'Creating art management personnel.' It can thus be interpre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n environment for artists to actively engage in artistic activities and ensure that artists can actively engag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and prior study, an artist welfare policy system was proposed.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services by transferring the welfare system for artists, currently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provincial areas. Second, it should expand funds for the welfare support of artists and implement measures for stable operation. Third, it should collect the actual needs of artists by preparing a platform to communicate with them. As a dimension of artist collaboration,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formation and membership of artist trade unions and other similar union organizations. Next, the establishment and conversion of cultural and art organizations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would solve the unstable employment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artists, as well as secure the publicity of the arts by solving problems in the community. As beneficiaries, artists should take an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e in government policies in order to raise the status of artists with high-quality creative activities. In addition,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artistic creative activities by keeping in mind that culture and ar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haracter.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ed that policy be divided into the aspects of improving awareness and system improvement in order to better artist welfare. Improvements in awareness include a shift in the recognition of the nation's role in art, the nation's efforts for social consensus on artist welfare, and the strengthening of publicity for artist welfare-related policies. System improvement should include 'artists' as a newly defined special occupational group, efforts for stable settlement of employment insurance for artists, and diversification of creative support funds. Also suggested ar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e fostering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tist welfare credit cooperatives, the promotion of artist deduction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fostering communities suitable for culture and art characteristics, and the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tax policies for artists.

It can be concluded that Korea's welfare level for artists has improv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rtist Welfare Act」,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d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Artists. Therefore, social consensus and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are needed. Indeed, it can be said that now is the time to support and recognize the nation and the people who want to protect the arts and artists in Korea.

A-1. 최근 일 년간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일자리 ② 자녀교육 ③ 건강 ④ 주거비 ⑤ 노후생활
 ⑥ 부채상환 ⑦ 부모부양 ⑧ 자녀보육(양육) ⑨ 예술 활동의 어려움

B.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지도 조사

| B-1. 우리나라는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통하여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 |
|--|--------------------------|---------|--------------------|-------------------|
| B-2. 「예술인 복지법」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 |
| B-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 | | | |
| 사업의 종류 | | 모른다 |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참여하고 있다 (지원받고 있다) |
| 1 | 예술활동증명 | ① | ② | ③ |
| 2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 ① | ② | ③ |
| 3 | 예술인파견지원-예술路(로) | ① | ② | ③ |
| 4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 ① | ② | ③ |
| 5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 ① | ② | ③ |
| 6 | 예술인 산재보험 | ① | ② | ③ |
| 7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① | ② | ③ |
| 8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 ① | ② | ③ |
| 9 | 예술인 신문고 | ① | ② | ③ |
| 10 | 예술인 상담·컨설팅 | ① | ② | ③ |
| 11 |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 ① | ② | ③ |
| 12 | 예술인 심리상담 | ① | ② | ③ |
| 13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 ① | ② | ③ |
| 14 | 표준계약서 보급 | ① | ② | ③ |
| 15 | 예술인 패스 | ① | ② | ③ |

C.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인지도 및 가입 여부 조사

| 사회보장 및 서비스 가입 | | | | | | |
|--|---|-----------|------------|----------|-----------|------------|
| ※ 사회복지제도 가입 및 급여수급 경험과 현재 수급여부를 항목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C-1 | 귀하는 현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 |
| C-2. 인지도 조사 | | | | | | |
| | 사회보장 및 서비스 항목 | 전혀 모른다 | 모르는 편이다 | 보통 이다 | 아는 편이다 | 매우 잘 안다 |
| 1 |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고용보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산재보험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예술인 산재보험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의료비 지원(의료급여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긴급복지지원(생계·주거·의료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장애관련 수당(연금, 수당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예술인) 창작준비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임대주택(영구, 공공, 임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에너지 감면 및 보조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근로장려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사회보험료 지원(예술인복지재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예술인상담(정서포함)지원(예술인복지재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예술인파견지원(예술인복지재단) | ① | ② | ③ | ④ | ⑤ |

C-3. 사회보장 및 서비스 가입여부 및 급여수급 여부

※ 사회복지제도 가입 및 급여수급 경험과 현재 수급여부를 항목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입여부 | | 현재 수급여부 | |
|----|--------------------------------|------|-----|---------|---------|
| | | 가입 | 미가입 | 받고있다 | 받고있지 않다 |
| 1 |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 ① | ② | ① | ② |
| 2 | 고용보험 | ① | ② | ① | ② |
| 3 | 산재보험 | ① | ② | ① | ② |
| 4 | 예술인 산재보험 | ① | ② | ① | ② |
| 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 | ① | ② | ① | ② |
| 6 | 의료비 지원(의료급여포함) | ① | ② | ① | ② |
| 7 | 긴급복지지원(생계·주거·의료 등) | ① | ② | ① | ② |
| 8 | 장애관련 수당(연금, 수당 등) | ① | ② | ① | ② |
| 9 | (예술인) 창작준비금 | ① | ② | ① | ② |
| 10 | 임대주택(영구, 공공, 임대 등) | ① | ② | ① | ② |
| 11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 ① | ② | ① | ② |
| 12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 ① | ② | ① | ② |
| 13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 ① | ② | ① | ② |
| 14 | 에너지 감면 및 보조 | ① | ② | ① | ② |
| 15 | 근로장려세제 | ① | ② | ① | ② |
| 16 |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① | ② | ① | ② |
| 17 | 사회보험료 지원(예술인복지재단) | ① | ② | ① | ② |
| 18 | 예술인상담(정서포함)지원(예술인복지재단) | ① | ② | ① | ② |
| 19 | 예술인파견지원(예술인복지재단) | ① | ② | ① | ② |

D.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 질문사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D-1. 귀하는 현재 예술인복지수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D-2. 귀하는 사회보장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D-3. 귀하는 현재 사회보장 및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D-4. 귀하는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D-5.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위해 다음 제도들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필요성의 정도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항 목 | 매우 불필요 | 다소 불필요 | 보통 | 다소 필요 | 매우 필요 |
| 1.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지원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예술인 산재보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국민기초보장제도(생계·주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질병·상해시 의료비 지원(의료급여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질병·상해시 생활비 보상 지원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주거 안정 지원제도(주택자금대출, 임대주택, 주거관련 서비스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일반 생활자금 대출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직업상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예술 활동 중단시 실업급여 지원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E. 조합 인지도 및 가입 여부 조사

| | | 인지도 조사 | | 가입여부 | |
|-----|-------------------------------|--------|-----|------|-----|
| | | 알고 있다 | 모른다 | 가입 | 미가입 |
| 1 | 노동조합 (가입되어있는 경우 ⇒ 1-1 문항으로) | ① | ② | ① | ② |
| 1-1 | 노동조합 이름은 무엇입니까? | | | | |
| 2 | 협동조합 (가입되어있는 경우 ⇒ 1-1 문항으로) | ① | ② | ① | ② |
| 2-1 | 협동조합 이름은 무엇입니까? | | | | |
| 3 | 사회적 기업 (가입되어있는 경우 ⇒ 1-1 문항으로) | ① | ② | ① | ② |
| 3-1 | 사회적 기업 이름은 무엇입니까? | | | | |

F. 예술인 연간 수입·지출 현황

| | | |
|--|--|----|
| <p>귀하의 연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0"으로 적어 주시고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p> | | |
| 수입현황 | 귀하의 연간 수입 총액은 얼마입니까? | 만원 |
| | 귀하의 연간 수입 총액 중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얼마입니까? | 만원 |
| | 귀하의 연간 수입 총액 중 비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얼마입니까? | 만원 |
| | 귀하의 수입을 포함한 가구 전체의 연간 수입 총액은 얼마입니까? | 만원 |
| 지출현황 | 귀하의 연간 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 만원 |
| | 귀하의 연간 지출 총액 중 예술 창작 활동에 얼마나 지출하셧습니까? | 만원 |
| | 귀하의 연간 지출 총액 중 예술분야 학습 및 훈련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셧습니까? | 만원 |
| | 귀하의 지출을 포함한 가구 전체의 연간 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 만원 |
| |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
| | ① 식비 ② 교육비 ③ 주거비(월세 등) ④ 보건의료비 ⑤ 가구집기비 ⑥ 피복비 ⑦ 교양오락비 ⑧ 통신비 ⑨ 교통비(차량구입비 제외) ⑩ 경조사비 ⑪ 부채상환 ⑫ 없음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
|----|--|--|--|
| ID | | | |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 모형 연구를 위한 AHP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고희영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 모형 연구'를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바쁜 시간 중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주 관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희영 문 의 : 010-4789-4666
 지도교수 황 경 수 문 의 : 010-3697-5912

| | | | |
|--------------|-------------------|-------------------|------------------------|
| 성 별 | ① 남 | ② 여 | |
| 연 령 | ① 20대 이상 ~ 30대 미만 | ② 30대 이상 ~ 40대 미만 | ③ 40대 이상 ~ 50대 미만 |
| | ④ 50대 이상 ~ 60대 미만 | ⑤ 60대 이상 | |
| 학 력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전문대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
| 직 업 | ① 공무원 | ② 교수 | ③ 연구원 ④ 예술인 |
| 근무 연수 | ()년 | | |
| 거 주 지 | ①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 | ② 충청도(충청북도·충청남도) |
| | ③ 강원도 | | ④ 경상도(경상북도·경상남도) |
| | ⑤ 전라도(전라북도·전라남도) | | ⑥ 세종시 |
| | ⑦ 제주특별자치도 | | |

■ 다음은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지의 작성요령입니다. 설명을 숙지하신 후 응답바랍니다.

<작성요령>

☞ 각 질문에 대한 응답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 중요도 | 정의 | 설명 |
|-----|--------|--------------------------------------|
| 1 | 비슷함 | 어떤 기준에 대하여 두 지표가 비슷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판단됨 |
| 3 | 약간 중요함 |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약간 선호됨 |
| 5 | 중요함 |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강하게 선호됨 |
| 7 | 매우 중요함 |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
| 9 | 극히 중요함 |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극히 강하게 선호됨 |

☞ 상대적 중요도 응답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지원, 육성, 보호, 조성, 규제 항목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에 ✓ 표시 하여 주십시오

예를들어 ‘지원’과 ‘육성’을 비교하여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1번에, ‘지원’이 ‘육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좌측에 ✓ 표시를 하시고, ‘육성’이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측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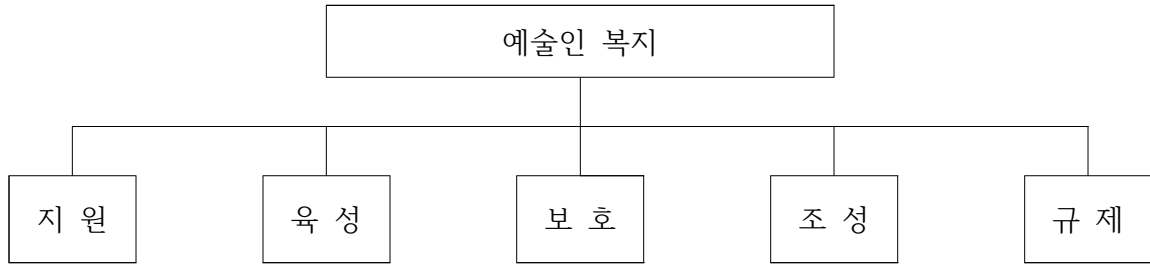
즉,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1~9 중 한 곳에 ✓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 상대적 중요도 설문지의 예시

| A | <---A가 상당히 중요<--- 동등 ---> B가 상당히 중요---> | | | | | | | | | | | | | | | | | | B |
|-----|---|---|-------|---|----|---|-------|---|----|---|-------|---|----|---|-------|---|-------|--|-----|
| | 극히 중요 | | 매우 중요 | | 중요 | | 약간 중요 | | 동등 | | 약간 중요 | | 중요 | | 매우 중요 | | 극히 중요 | | |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지 원 | | | | | | | | | ✓ | | | | | | | | | | 육 성 |
| 지 원 | | | | | ✓ | | | | | | | | | | | | | | 육 성 |
| 지 원 | | | | | | | | | | | | | | | | ✓ | | | 육 성 |

☞ 굵은 실선 안에는 빠짐없이 ✓ 표 해주십시오.

< 1단계 > 5대 정책 수단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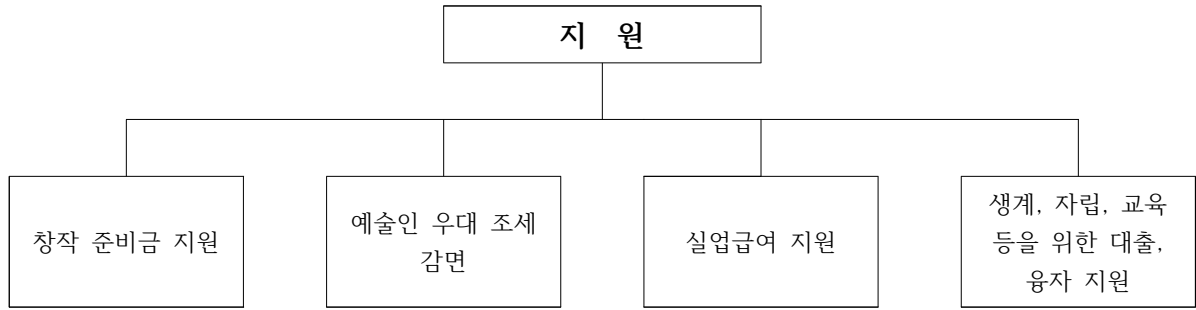
■ 다음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바랍니다.

| 정책 수단 | 세부 설명 |
|-------|--|
| 지 원 | 지원은 민간에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개인 또는 단체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예술가, 문화예술 단체 등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에 조세감면 혜택 |
| 육 성 |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을 펼치는 생산자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교육·보호하는 정책 |
| 보 호 | 예술인이 무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유와 독립에 바탕을 두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지위 수준에 걸맞게 보호해주는 것 |
| 조 성 | 정부가 제공자로서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구축, 분위기 조성,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관련 사항 정비 등을 포함 |
| 규 제 | 규제는 문화예술의 원활한 흐름과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

A.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예술인 복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표 | 중요 <-----> 중요 | | | | | | | | | | | | | | | | 지표 | |
|-----|---------------|---|---|---|---|---|---|---|---|---|---|---|---|---|---|---|----|-----|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 9 |
| 지 원 | | | | | | | | | | | | | | | | | | 육 성 |
| 지 원 | | | | | | | | | | | | | | | | | | 보 호 |
| 지 원 | | | | | | | | | | | | | | | | | | 조 성 |
| 지 원 | | | | | | | | | | | | | | | | | | 규 제 |
| 육 성 | | | | | | | | | | | | | | | | | | 보 호 |
| 육 성 | | | | | | | | | | | | | | | | | | 조 성 |
| 육 성 | | | | | | | | | | | | | | | | | | 규 제 |
| 보 호 | | | | | | | | | | | | | | | | | | 조 성 |
| 보 호 | | | | | | | | | | | | | | | | | | 규 제 |
| 조 성 | | | | | | | | | | | | | | | | | | 규 제 |

< 2단계 > 각 정책 수단 내 상대적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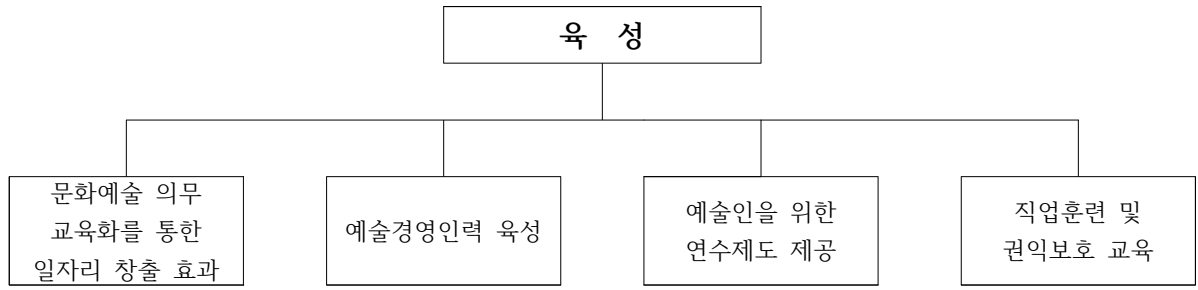


■ 다음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바랍니다.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지 원 | 창작 준비금 지원 |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원 |
| |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 직업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
| | 실업급여 지원 | 직업의 불안정성, 불규칙적 급여 등의 해소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지원 |
| | 생계, 자립, 교육 등을 위한 대출, 용자 지원 |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 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자 지원 |

B.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 중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표 | 중요 <-----> 중요 | | | | | | | | | | | | | | | | | 지표 |
|--------------|---------------|---|---|---|---|---|---|---|---|---|---|---|---|---|---|---|---|----------------------------|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창작 준비금 지원 | | | | | | | | | | | | | | | | | |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
| 창작 준비금 지원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 지원 |
| 창작 준비금 지원 | | | | | | | | | | | | | | | | | | 생계, 자립, 교육 등을 위한 대출, 용자 지원 |
|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 지원 |
| 예술인 우대 조세 감면 | | | | | | | | | | | | | | | | | | 생계, 자립, 교육 등을 위한 대출, 용자 지원 |
| 실업급여 지원 | | | | | | | | | | | | | | | | | | 생계, 자립, 교육 등을 위한 대출, 용자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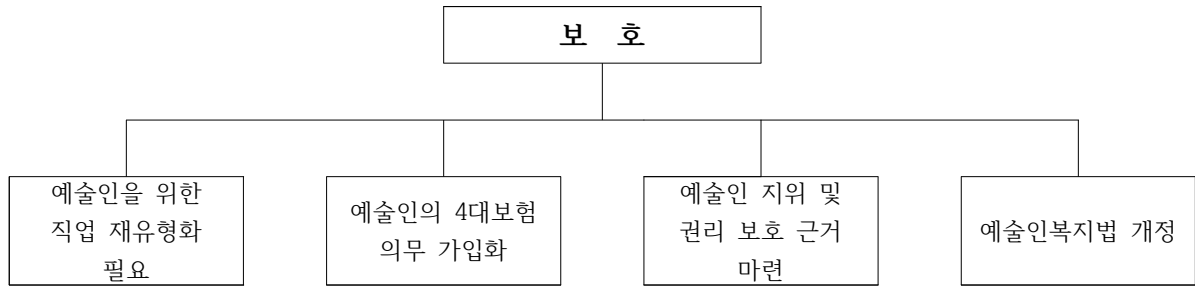


■ 다음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육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바랍니다.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육 성 |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공교육의 문화예술 의무 교육, 문화단체나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계 강화를 통한 문화 전문화 인력 양성 및 이를 통한 예술인 일자리 창출 효과 |
| | 예술경영인력 육성 | 문화시설의 기획·행정·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 측면을 담당할 인력 육성, 문화사업과 문화단체 운영에 대한 문화경영 인재 육성 및 문화예술경영 교육 |
| |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 무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 또는 미래의 문화사회를 담당할 창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해외 연수와 교류 기회 제공 |
| |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 문화예술 관련 기술적 전문성, 창의적 전문성 접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한 권익보호 교육 제공 |

C.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육성'에 대한 주요 내용 중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육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표 | 중요 <-----> 중요 | | | | | | | | | | | | | | | | | 지표 |
|------------------------------------|---------------|---|---|---|---|---|---|---|---|---|---|---|---|---|---|---|---|--------------------|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 | | | | | | | | | | | | | | | | 예술경영인력 육성 |
|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 | | | | | | | | | | | | | | | |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
| 문화예술 의무 교육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 | | | | | | | | | | | | | | | |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
| 예술경영인력 육성 | | | | | | | | | | | | | | | | | |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
| 예술경영인력 육성 | | | | | | | | | | | | | | | | | |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
| 예술인을 위한 연수제도 제공 | | | | | | | | | | | | | | | | | | 직업훈련 및 권익보호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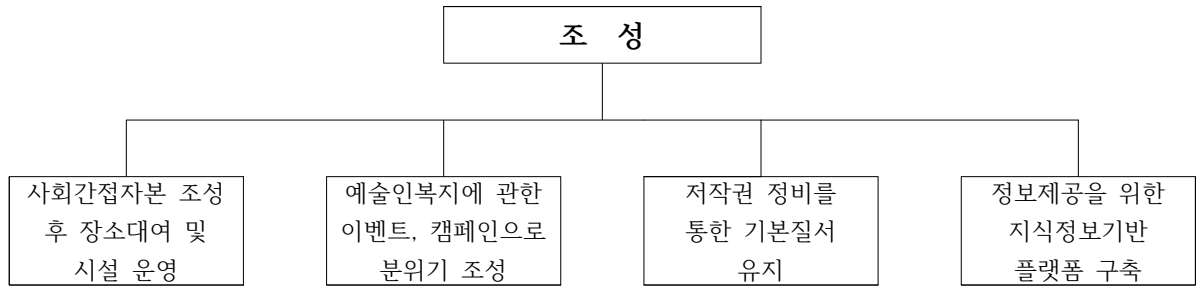


■ 다음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보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바랍니다.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보 호 |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필요 | 독자적인 직업유형의 관점에서 ‘예술인’이라는 직업 재유형화. 이를 통하여 ‘예술인’을 위한 특별한 노동 및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 |
| | 예술인의 4대보험 의무 가입화 | 예술인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직업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회보장 |
| |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로 예술인의 권리, 노동, 생활조건, 적정수입 및 물리적 원조, 정신적 지지, 의무와 책임, 재능의 활용 등 예술인의 특성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근거 마련 |
| | 예술인복지법 개정 | 법제도 형식은 잘 갖춰져 있으나 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 |

D.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 중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표 | 중요 <-----> 중요 | | | | | | | | | | | | | | | | 지표 | |
|----------------------|---------------|---|---|---|---|---|---|---|---|---|---|---|---|---|---|---|----|----------------------|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 9 |
|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의 4대보험 의무 가입화 |
|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
| 예술인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복지법 개정 |
| 예술인의 4대보험 의무 가입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
| 예술인의 4대보험 의무 가입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복지법 개정 |
|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 근거 마련 | | | | | | | | | | | | | | | | | | 예술인복지법 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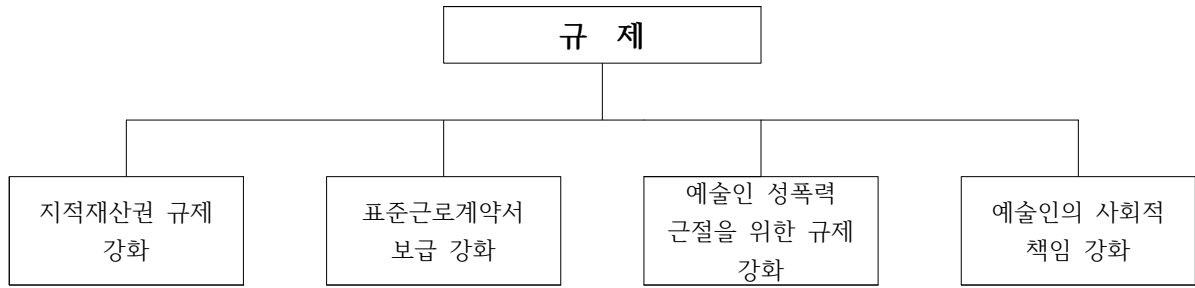


■ 다음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바랍니다.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조 성 |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건립 및 장소대여에서부터 시설운영에 직접 관여 |
| | 예술인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 정부 주도의 이벤트, 캠페인 등의 진행으로 예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
| |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 예술가의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시스템 마련 |
| |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 문화소비에 필수적인 문화정보, 창작에 도움이 되는 원천 정보,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E.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조성'에 대한 주요 내용 중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조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표 | 중요 <-----> 중요 | | | | | | | | | | | | | | | | 지표 | |
|-----------------------------|---------------|---|---|---|---|---|---|---|---|---|---|---|---|---|---|---|----|-------------------------------------|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 9 |
|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예술인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
|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
|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
| 예술인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 | | | | | | | | | | | | | | | | |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
| 예술인복지에 관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분위기 조성 | | | | | | | | | | | | | | | | | |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
| 저작권 정비를 통한 기본질서 유지 | | | | | | | | | | | | | | | | | | 정보제공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플랫폼 구축 예술인복지법 개정 |



■ 다음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바랍니다.

| 정책 수단 | 주요 내용 | 세부 설명 |
|-------|----------------------|--|
| 규 제 |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 지적재산권 침해(표절, 불법복제, 불법 유통, 불법 도용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 |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 예술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의 강화로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 |
| |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 |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예술가로서의 전문가적 윤리와 가치관, 전문성에 부합되는 사회문화적 소명 의식 강화 |

F.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규제’에 대한 주요 내용 중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단 중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표 | 중요 <-----> 중요 | | | | | | | | | | | | | | | | 지표 | |
|----------------------|---------------|---|---|---|---|---|---|---|---|---|---|---|---|---|---|---|----|----------------------|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 9 |
|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 | | | | | | | | | | | | | | | | |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
|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강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예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 | | | | | | | | | | | | | | | |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G. ‘예술인 복지’와 관련하여 하고 제언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